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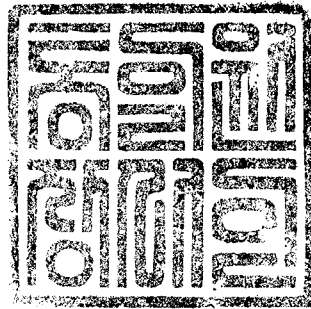
2131
2131
00

第6回 美洲地域
統一問題學術會議

國統調 90-10-62

한민족공동체 形成의 摸索

1990



961

國土統一院

이 論文集은 國土統一院 主催, 在美韓人政治
學會主管下에 「한민족공동체 形成의 摸索」이라는
주제로 1990. 5. 11~5. 12 美國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第6回 美洲地域統一問題學術會議에서
발표된 論文들을 整理한 것입니다.

이 冊子가 韓半島統一問題를 理解하고 研究하
는데 一助가 될 것으로 期待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國內外 學者들의 主張이 當院
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0. 10.

調 查 研 究 室

目 次

開會式辭	i
開會辭	金鴻洛..... iii
基調發表文	閔丙天..... v
第 1 分科 한민족공동체 形成과 統一理念	1
1. 民族共同體의 理論 構造	金宗林..... 3
2. 民族共同體 憲章과 統一國家의 理念	李容弼..... 31
3. 歐羅巴共同體와 한민족공동체	吉榮煥..... 53
4.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과 高麗聯邦制方案	高秉喆..... 75
第 2 分科 한민족공동체 形成의 實踐的 課題	95
5. 한민족공동체 的 實現方案	申正鉉..... 97
6. 한민족공동체 形成의 基盤造成	朴漢植..... 125
7. 南北韓의 經濟協力方案	李喜相..... 153
8. 南北韓의 軍事的 信賴構築方案	文正仁..... 175
第 3 分科 한민족공동체와 國際關係	209
9. 韓國의 UN 加入	吳公丹..... 211
10. 韓美安保關係와 美國國會의 調整	羅鍾五..... 229
11. 蘇聯의 變化와 韓半島	金應澤..... 249
12. 東歐의 變化와 韓半島	任鏞淳..... 261

開 會 式 辭

開 會 辭

金鴻洛(웨스트버지니아大 教授, 在美側準備委員長)

尊敬하는 國內外貴賓여러분. 그리고 이 會議을 위하여 멀리 韓國에서 오신 國會外務統一分科委員會委員長 金顯煜 議員을 비롯해서 韓國과 美國各地에서 오신 先輩同僚學者들과 國土統一院의 鄭錫弘 調查研究室長을 비롯한 實務關係官 諸位와 駐美韓國大使館을 代表하여 나와주신 李承坤公使에게 準備委員會를 代表하여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이 學術會議는 우리民族의 오랜 宿望인 南北統一의 大課題을 達成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國土統一院의 支援을 받고 組織된 會議입니다.

今年 第6次 會議의 主題는 「한민족공동체 形成의 摸索」입니다. 周知하시다시피 지난 1988年 7월에 歷史的인 “7.7宣言”이 發表된 後 韓國側은 南北韓이 敵對關係를 止揚하고 같은 民族共同體의 一員으로서 祖國의 發展과 民族의 繁榮을 위해 協力하는 同伴者가 되어 함께 民族共同體를 形成할 것을 提案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9年 9월에는 보다 具體的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盧大統領이 提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韓國側 統一政策의 目的이 實現되기까지는 많은 難關을 克服하여야 하며 따라서 반드시 順坦할 것이라고 樂觀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最近의 國際情勢는 우리 祖國의 統一에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습니

다. 특히 東歐圈을 휩쓸은 改革과 民主化의 물결은 東西冷戰의 象徵인 “伯林的 장벽”을 무너뜨렸으며 이 地域의 共產黨一黨支配體制에 終止符를 찍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改革의 餘波로 韓國과 이들 東歐圈國家들 間에 國交가 樹立되었으며 蘇聯과도 貿易·領事등 實務關係를 맺게 되었고 正式國交樹立도 이제 時間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急激한 國際環境의 變化속에서 第2次大戰後 分斷되었던 東西獨이 모든 難關을 克服하고 이제 가까운 將來에 統一이라는 奇蹟을 達成하게된 이 歷史的 轉換點에 서서,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의 祖國統一에 對한 確固한 信念과 決心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2日間の 會議를 通해서 기탄없는 討論과 意見交換을 가짐으로써 우리 民族史的 課題인 祖國統一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어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學術會議를 위해서 物心兩面으로 至大한 後援을 해주신 國土統一院 李洪九前長官과 洪性澈現長官을 비롯해서 關係官 諸位에게 感謝를 드리면서 人事의 말씀에 代하고자 합니다.

基 調 發 表 文

閔丙天(東國大 教授)

I

지난해(1989년)에 韓國政府는 종래까지의 統一方案을 綜合하면서도 새로운 發想에 바탕을 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방안은 우연히 나왔다고 보다는 그것을 낳게 한 內外環境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韓國統一方案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方案은 환경과 유관한 산물일 수도 있지만 종속변수로서만 아니고 독립변수로서의 의미도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환경과도 연관지어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1980년대를 마무리하고 1990년대를 열어 가는 시점에 나타난 統一環境은 아주 엄청난 면을 포함한다.

國際環境面에서만 보더라도 東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급격한 변화, 美·蘇간의 부분적 협력과 광범위한 화해, 太平洋時代를 개막하는 여

지에 있으면서 내적으로도 남한과의 화해와 南韓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北韓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멀지 않아 指導體制의 변화를 맞게 된다. 指導體制의 변화가능성은 그에 때 맞춘 南韓의 대북정책을 낳게 할 것이며 북한측도 그에 대응할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 경우 북한의 선택이 반드시 南北關係改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으나 變化後에는 분명히 대남정책에 새로운 방향이 도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北韓이 남북군비 경쟁으로 받는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등 겪고 있는 상황이 南과北 쌍방에게 모두 南北關係改善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III

이렇게 韓國의 새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內外環境을 바탕으로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일고 있었던 여러 統一論을 통합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었고 종래의 통일방안(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지니고 있는 미비점(완전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중간과정의 부재)를 보완하고 북한의 聯邦案에 상응(북한측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 제시)한 것을 내놓아야 할 필요도 있어서 새 통일방안이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3당통합 전까지 平民黨은 共和國 聯邦案, 民正黨은 1민족 2국가 聯合案, 共和黨은 점진통일안, 진보세력들은 聯邦 또는 聯合案을 내놓고 있었는데 바 그것들의 부분적인 수용이 聯合統一案으로 나타났다고 보아도 될 것이

다.

韓國政府의 統一方案은 몇가지 특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民族이 크게 부각되는 민족우선의 통일안이다.

統一의 개념은 지리적 측면의 國土統一과 정치적 측면의 政權統一 그리고 사회 내지는 전반적 측면의 民族統합으로 규정될 수 있다. 민족화합 통일방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統一을 분단된 국토와 분리된 정부의 통일이라는 차원에 더 치중되었다. 그러던 것이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 나오면서부터 분열된 민족의 통합을 더 중요시하기에 이르렀고 이번의 통일방안도 民族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民族을 통일문제의 中心概念으로 하여 단순한 분단극복의 테두리를 넘어 민족의 통합을 통한 民族生存과 民族繁榮의 역사를 전개시킨다는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1970년부터 제시되어 온 統一의 三大原則(平和, 民主, 自主)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戰爭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전쟁(무력)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統一方式을 배제하고 전민족이 평화적으로 참여하는 統一原則이 평화통일의 원칙이다.

그리고 특정의 개인이나 集團과 계층이 제외되지 않고 전민족이 모두 참여하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統一을 이루려는 것이 民主統一이다.

또한 비록 우리의 분단이 他律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통일만은 우리민족의 자주적 역량과 자주적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룬다는 것이 民主統一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바로 이러한 세가지 원칙에 따라 統一을 이룩하겠

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셋째, 統一國家의 이념(未來像)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즉 自由民主主義, 自主的 民族主義, 행복한 福祉主義, 國際的 平和主義를 지향하는 統一國家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統一된 나라가 民主主義를 지향하되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여야 함으로 뚜렷이 하고 있다. 창의성과 인권과 경쟁성과 다원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에 꽃피우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한 自由民主主義 國家는 이 民族의 自由와 自尊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民族主義) 繁榮과 풍요속에서 公正分配가 실현되는 복지국가를 이룩(복지주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統一國家는 대내적으로 폭력, 계급투쟁, 공포, 독재를 배격하고 대외적으로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나라(平和主義)를 건설한다는 이념이다.

넷째, 과도적인 정치적 統一體로서의 「南北聯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南北關係를 「平和」의 축과 「統一」의 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진전되는 단계를 크게 셋으로 나눈다면 鬭爭(平和)分立(統一)에서 共存(平和)交流(統一)의 단계를 거쳐 和解(平和)統合(統一)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和解統合은 다시금 부분적인 느슨한 통합의 단계로서의 聯合의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합의 단계인 統一(單一化)로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共存交流의 단계도 거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공존교류를 하면서 우선 聯合으로라도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中間形態

의 통일을 이루어 사회, 문화, 경제등에서 共同生活圈을 형성해 가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南北關係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생각하는 서독의 발상과도 상통한다고 본다.

IV

앞에서 보았듯이 남쪽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변화하고 있는 內外環境에 수반하여 종래의 정부의 統一方案과 각계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것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제시된 방안은 完成品이 될 수 없으며 방안의 提示가 곧 끝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보완해 갈 것인가를 더욱 연구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方案으로 발전시키고 보다 진전된 統一狀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갖는 이 會議은 國內外的 각기 다른 研究와 生活空間에서 통일문제를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統一方案과 統一問題를 재조명해 봄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第1分科 한민족공동체 形成과 統一理念

1. 民族共同體의 理論構造

金 宗 林(아이오아大)

目 次

I. 序 文	5
II. 共同體의 構造論理	9
III. 民族共同體 形成의 沮害要因	15
IV. 民族共同體의 建築 構造	20
V. 統一成就와 民族共同體	26

I. 序 文

統一을 성취하는 여러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가 民族共同體를 형성하는 것으로 요즈음 空間에서 자주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提示하고자 하는 論旨은 이러한 共同體形成을 統一의 선행조건으로 보는 경우 民族共同體의 建築構造는 필연적으로 超共同體的(super community) 性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理論的 根據를 설파하려는 것이다.

共同體라는 말은 정확한 정의 없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가 널리 理解되고 있는 原初語(primitive term)라고 생각되어 概念의 分명한 正義가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共同體의 의미는 매우 多樣하다. 學問的 概念으로도 학자에 따라 서로 相異한 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共同體 概念의 分명한 정의를 하고 分析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서로 相異한 共同體概念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의 共通核(the core meaning)을 추출할 수 있다. 이것을 집약하면 『共同體는 人間集團의 한가지 特殊形態로서 다른 集團에 비해 세가지 구조적면에서 엄격히 구별된다. 즉 同質的價値觀의 共有, 直接的이고 多면적 人間관계, 그리고 구성원간의 접촉이 重要關係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同質的價値觀이 共同體의 特性이라는 점에 별로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價値觀, 信念體系, 思考方式, 行爲律을 共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同質的文化없이는 共同體가 형성될 수 없다. 同質的文化를 共有하고 있을 때 構成員들간의 의사소통이 容易하게 된다. 두가지 이

유 때문이다. 하나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主要 先行條件 즉 「對話의 테두리」가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正確한 情報蒐集이 용이하게 되어 情報費用(information cost)이 절감하기 때문이다. 同質的 文化를 공유한다는 것은 모두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共同目標의 설정이 쉬워진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目標成就過程에 대한 合意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內包하고 있다. 비유컨대 축구경기를 하는 경우 경기자들이 경기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競技進行規則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통되게 이해하고 있어야 게임이 進行될 수 있다. 만일 이 게임에서 몇몇 선수가 농구경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경기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경기목표와 進行規則에 관한 同質的인理解를 가진다는 것은 축구경기에 한정하고 볼 때 선수들(構成員들)이 同質的인文化를 共有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同質體의 두번째 特性은 構成員들 相互間의 關係가 농도질은 關係라는 점이다. 이들간의 접촉이 직접적(face-to-face)이고 人格과 人格의 全面的인 접촉이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농도질은 접촉이 어느한 社會領域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全生活領域에 걸쳐 形成되는 多面的(many-sided)인性格을 가진다.

이렇게 농도질은 人間關係라는 점에서 共同體라는 다른 形態의 集團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直接的·多面的인 인간관계로 얽혀있는 生活集團의 전형적인 예는 産業化前時代에 存在하였던 村落共同體들이다. 農業을 주생산체제로 삼았던 社會에서는 村落이 經濟單位가 되었고 그 안에서 生活하는 構成員들은

社會經濟的面에서도 거의 自給自足하는 독립된 集團을 이루었다. 따라서 村落 構成員들간의 접촉은 직접적이고 농도질은 연계관계위에 구축되었다. 村落밖의 世界, 즉 市場과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構成員 相互間的 접촉밀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형편이었다. 産業化가 점진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村落 共同體는 와해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經濟生活單位로써 村落의 역할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産業社會에서는 村落經濟가 國家경제로 흡수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市場, 大衆媒體, 交通網등의 發展으로 말미암아 村落 構成員들의 「바깥世界」와의 접촉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역비례하여 村落 構成員들간의 접촉과 유대는 감소한다. 産業化 以後의 村落들은 産業化 以前의 村落 共同體에 비해 상당히 그 모습이 변화하였다.

共同體의 세번째 構造的 特性은 互惠關係(reciprocity)이다. 同質的文化를 공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폭넓은 「공감대와 농도질은 相互接觸이 형성시키는 밀도높은 相互依存度라는 두개의 주춧돌위에 互惠關係가 成立된다. 互惠關係는 일종의 交換關係(exchange system)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널리 이해되고 있는 市場交換(market exchange)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첫째, 市場交換은 卽時性(instantaneous exchange)을 가지는데 반해 互惠關係는 보다 長期的次元에서 행하여지는 交換關係이다. 둘째, 市場交換에서는 交換되는 財貨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분명히 명시되는데 互惠關係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명시되지 않는다. 「내가 이번에 너를 도와주는데 언젠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가정이 깔려 있다. 내가 주는 도움의 價値가 얼마이니 다음에 네가 나를 도와줄 때 꼭 그만큼 도우라는 명시적 약속이 없다. 이점에서 互惠關係는 契

約(contract)과 그 性格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셋째, 市場에서 맺은 契約關係는 당사자가 履行하지 않는 경우 公權力이 개입하여 이행토록 강제한다(enforcement of property rights by the state). 互惠關係가 내포하는 交換約束은 國家公權力이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共同體구성원들 각각이 적절한 행위를 취함으로써 준수하게 만든다. 바꾸어 말하면 共同體의 道德律, 慣習, 社會的壓力들이 약속을 이행토록 유도한다. 이상적인 共同體가 형성되는 경우 公權力의 상징인 國家 또는 國家秩序를 明文化시킨 法體系의 存在理由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公權力의 개입이 없이도 互惠關係로 엮힌 집단안에서는 秩序가 維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컨대 共同體는 위에 열거한 세가지 構造的 特性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人間集團의 한 형태이다. 즉 同質的文化的 共有, 농도질은 인간관계, 그리고 互惠關係로 엮히는 相互接觸이 共同體의 속성이라 볼 수 있다.

Ⅱ. 共同體의 構造論理

共同體가 가지는 構造的論理를 정확히 파악할 때 共同體形成을 통한 統一方案의 可能性과 制限性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共同體의 構造論理로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概念定義에서 밝힌 것이지만, 共同體는 程度의 問題라는 점이다. 어느 형태의 인간집단이든 약간의 共同體性格을 가지게 마련이다. 集團間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각각이 가지는 共同體의 性格의 程度가 다르다는 것이다. 共有하는 文化의 同質性의 程度가 서로 다를 수 있고, 構成員들간의 접촉 밀도 정도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互惠關係의 강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共同體를 形成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새로운 共同體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共同體를 보다 높은 次元의 共同體로 變形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民族集團의 共同體의 性格을 제고시키는 것이 民族共同體形成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問題를 흔히 看過하면서 우리는 共同體問題를 논의하고 있다. 마치 黑白論理의 카테고리 같이 어느 集團은 共同體이고, 다른 集團은 共同體가 아닌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共同體는 어디까지나 程度의 문제이다.

둘째, 共同體는 集團規模에 따라 그 정도가 크게 제약을 받는다. 이것이 「規模制約法則」(the size limit)이다. 강도가 높은 共同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 集團의 規模가 반드시 작아야 한다. 규모가 큰 大集團으로 共同體를 형성하려 시도하는 것은 原則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무모한 노력으로

전략하기 쉽다. 規模制約法則은 民族共同體를 형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示唆하는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問題를 분명히 잡고 넘어가야 한다.

「規模制約法則」의 論理的根據는 무엇인가? 共同體가 가지는 構造的特性에서 연유한다. 同質的文化的 共有는 集團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명제는 거의 자명한 사실이다. 즉 集團의 規模가 커지면 커질수록 同質的文化的 공유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따라서 同質性이 강한 文化的 形成은 대부분의 경우 構成員數가 작은 소집단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이유는 共同體가 요구하는 構成員들 相互間의 直接的(face to face relations) 그리고 多面化된 접촉이다. 집단이 커지면 構成員들간에 이러한 形態의 接觸이 희석될 수 밖에 없다. 즉 人間關係의 농도가 감소되는 반면 構成員들간의 接觸은 一回性(one shot interaction)과 無人格性(impersonal)를 띠기 쉽다. 7천만 한민족集團은 거대한 人間集團이다. 이렇게 거대한 集團으로 共同體를 확산시키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7천만 構成員들이 모두 直接的·多面的 접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文化的遺產을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함께 농도질은 人間關係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구성원들은 자기주변 가까운 사람들에 한정된 範圍내에서만 농도질은 關係를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共同體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直接的·多面的 人間關係는 集團의 規模에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互惠關係는 共同體의 要諦이다. 공동체가 가지는 중요한 長點은 社會協同(cooperation)이 어느 形態의 集團에 비해서 보아도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협동이 가능한 理由는 바로 互惠關係가 정립되어 있기 때

문이다. 우리가 共同體形成을 회구하고 그리고 共同體를 人間集團의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強壓的인 힘의 발동이 없이 各構成員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平和的으로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로지 共同體 안에서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互惠關係가 제대로 유지될려면 먼저 각구성원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에 관한 충분한 情報(information)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情報가 存在할 때 비로소 누가 어느 때 約束을 이행하는지 또는 履行치 않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모니터링(monitoring)의 問題이다. 충분한 情報만을 가지고 互惠關係를 유지할 수 없다. 다른 한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즉 효율적 實行 메커니즘(enforcement)이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어느 構成員이 約束을 이행치 않고 互惠關係속에 포함된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社會的裝置가 반드시 필요하다. 國家社會(state)내에서는 公權力이 이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共同體내에서는 構成員各各이 제재의 주체가 된다(Michael Taylor, 1982). 互惠關係를 파괴하는 구성원이 나타나는 경우 다른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것이다. 즉 그 사람과의 關係를 다시는 맺지 않는다면 또는 그를 모두가 白眼視해 버릴 수 있다. 結果는 所屬集團안에서 고립하게 되고, 긴밀한 여러가지 協同을 통하여 산출될 수 있는 이익으로부터 제외당하게 된다.

集團의 規模가 커지면 이상에서 언급한 두가지 조건 즉 情報의 問題와 제재 장치의 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情報의 蒐集이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제재장치 또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규모가

큰 집단안에서는 互惠關係가 成立하기 어렵게 된다.

共同體形成過程에 있어 集團規模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集團의 規模와 그 집단이 성취할 수 있는 共同體의 性格 정도는 반비례한다. 바꾸어 말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小集團안에서만 共同體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규모제약법칙」이 도출되는 것이다.

셋째번 構造論理는 共同善(public good) 算出을 위한 協同行爲 可能性問題와 연관된다. 共同體가 가지는 特殊한 性格중에 한가지로 각구성원들의 自發的協同行爲가 可能하고, 그리고 이러한 協同行爲를 통하여 모두에게 이로우를 줄 수 있는 共同善이 용이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이다. 統一成就의 시각에서 共同善理論을 이미 논의한 바 있다(金宗林, 1989).

理論의 要旨를 간략히 되풀이 하면 :

- (1) 統一의 成就是 共同善 成就의 問題이다.
- (2) 各構成員들의 자발적협동에 호소하여 共同善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共同善이 지닌 特殊屬性 때문에 각구성원의 협동행위를 조장해주는 誘發要因(incentives)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共同善成就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問題이다.
- (3) 共同善의 一種인 南北統一문제도 共同善成就딜레마 問題와 동일선상에 存在하는 問題이다. 따라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統一의 成就도 不可能해진다.
- (4) 共同善成就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 國家가 專有한 公權力의 使用(state solution)

- 市場메카니즘 즉 協商過程(bargaining)등을 사용하는 方法(Market solution)
- 共同體形成을 통한 共同善의 取得(community solution)

(5) 이들 세가지 方法中 가장 現實性이 있고 費用(cost)이 최소화한 方法이 共同體形成이라고 역설했다.

統一과 같은 民族全體에게 이로움을 가져오는 共同善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당사자들의 協調(cooperation)를 전제로 한다. 협조없이 共同善의 성취는 原則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統一의 問題도 결국 相互協調問題로 낙찰되는 것이다.

당사자들간의 協調를 가져오려면 위에 지적한 세가지 方法밖에 없다. 南北韓 統一의 시각에서 보면, 國家公權力의 使用方法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는 현재 분단되어 남과 북에 두개의 國家, 두개의 公權力 主體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이를 두개 國家 上位에 군림하는 公權力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아래서 公權力(state solution)을 使用한다는 것은 무력을 사용하여 統一을 成就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方法은 非人道的, 非民族的인 해결방법일 뿐만 아니라, 거기 소모되는 費用의 면에서도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方法이다.

둘째번 方法은 市場메카니즘(Market solution)을 利用하여 協調行爲를 誘導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전개된 南北韓協商過程이 좋은 예의 한가지다. 協商(bargaining)이 성공하려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協商當事者들간에 共同利益領域(joint interest possibility)이 존재해야만 한다. (2) 이러

한 共同利益領域內的의 어느점에 均衡狀態(예, Nash equilibrium)가 위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南北協商이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理論적으로 말한다면, 南北韓間에 共同利益領域이(JIP) 전혀 存在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共同利益領域을 存在하였는데 그 안에서 각 당사자들의 이익이 最大化될 수 있는 均衡點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金宗林, 金兌基, 1989). 市場 메커니즘을 통한 共同善의 성취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協商이 성공되기라는 保障이 없기 때문이다. 南北韓 協商歷史가 이 점을 翁변해 주고 있다.

共同善成就에 필요한 協同行爲를 誘導해주는 셋째方法은 이 論文의 주제가 되는 共同體形成방법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共同體안에서는 構成員간의 자발적협동이 순조롭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統一을 포함한 모든 形態의 共同善이 순리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集團이 바로 共同體인 것이다. 이것을 圖式的으로 간결히 다시 정리하면,

共同體形成 → 當事者들간의 自發的協同 → 共同善成就라는 논리가 나오게 된다. 南北韓이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이룬다는 경우 똑같은 논리로,

民族共同體形成 → 南北間의 平和的協調 → 統一成就라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Ⅲ. 民族共同體 形成의 沮害要因

民族共同體 形成 努力을 沮해하는 두가지 주요 變數가 있다. 한가지는 共同體理論이 제시하는 「規模制約法則」(the size limit)이다. 다른 한가지는 韓國社會에 內在하는 組織文化 - 즉 모든 組織들 밑바닥에 깔려있는 韓國的 組織原形 - 에 연유하는 問題이다. 먼저 規模制約法則을 民族共同體 形成 過程에 연결시키어 생각해 보자.

共同體는 그 構造的論理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규모가 작은 集團안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規模制約法則 때문이다. 集團規模가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의 共同體的 性格이 감소되는 反比例關係를 가진다. 거대집단안에서는 몇가지 불가피한 현상이 발생한다. 구성원들간에서 집단이 추구해야 할 目標와 實行節次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뿐만아니라 구성원들간의 밀도있는 接觸 즉 直接的·多面的인 人間關係가 集團全體를 통하여 확산되기 힘들다. 보다 더 중요한 점은 共同體의 生命이라 할 수 있는 互惠關係(reciprocity)가 形成되기 어려워진다.

「規模制約法則」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서 巨大集團인 한민족공동체를 구축하려는 것은 마치 引力法則을 감안하지 않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대한 建築物을 設計하는 것과 비슷한 작업이다. 民族共同體를 設計하는데 있어 規模制約法則은 반드시 감안되어야 하고, 設計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法則을 일단 인지하고 그 制約性을 우회 또는 극복하는 方案을 심도있게 탐색하는 것이다. 뒤에 부분에서 제시하려는 超共同體(supra com-

munity)가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다.

文化的 側面에서 보아도 한민족공동체形成을 심각하게 沮害하는 要因이 있다. 한민족文化 深層에 용해되어 있는 組織原型(proto-organization)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다른 論文에서 분석한 바 있지만(金宗林, 1988 ; C. L. Kim, N. Y. Lee, J.S. Youn, 1990) 요점만을 여기서 피력하겠다. 첫째, 韓國文化속에 내재하는 組織原型은 다양한 外樣에도 불구하고 그 原型은 하나이다. 즉 「擬似家族(Quasi Familism)」構造이다. 크고 작은 모든 形態의 組織들의 근간을 파헤쳐보면 外樣으로 보아서는 合理的이고 現代的인 組織形態를 가지고 있는듯이 보이나 組織內的 근본흐름은 항상 「의사가족」原型으로 回歸한다는 것이다. 血緣, 學緣, 地緣이 중추가 되지 않는 組織形態가 존재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 南北韓을 망라하여 最高權力者의 權力組織形態를 보면 어느정도까지 血緣, 學緣, 地緣이 주축이 되는지를 곧 알 수 있다. 막강한 경제단위인 재벌들의 組織原型을 살펴보아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裋成東, 金宗林, 1979). 議會政治過程에서도 政治行爲의 實際主體는 의원개인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政黨이나 常任委員會도 아니다. 모든 政治行爲의 진원은 政黨領袖를 중심으로 조직된 측근 小集團들이거나 또는 계보조직들이다. 이들 小集團들을 깊이있게 內面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擬似家族 組織」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金宗林, 1988). 의사가족 조직은 그 속성상 반드시 규모가 작은 小集團의 性格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의사가족」은 韓國的 組織原型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항상 意識적으로 그러한 組織을 設計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組織原型은 建築物의 設計圖

또는 청사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청사진은 意識의 世界를 넘어서 無意識의 세계에 깊이 침전되어 있는 것이다. 비유컨대 컴퓨터의 作業을 지시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이다. 주어진 프로그램은 일정한 作業을 수행하게 한다. 프로그램속에서 내포되어 있지 않은 作業은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組織原型은 여기서 프로그램의 역할을 한다. 組織原型에서 동떨어진 組織形態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韓國社會안에서는 모든形態의 조직들이 중국에는 「의사가족」 組織으로 낙착하게 된다.

「의사가족」을 原型으로 삼고 있는 사회에서는 巨大共同體를 형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의사가족」이 根本적으로 小集團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데 있다. 原型이 小集團이기 때문에 거기서 構成員들간에 유대가 강인한 巨大集團을 구축할 수 없다.

「의사가족」原型的의 속성을 그 집단규모가 작다는 점 이외에도, 小集團과 小集團 相互간의 關係가 無道德(amoral familism)하다는 것이다. 이점은 韓國社會構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問題이다. 韓國人들의 社會關係는 두개의 차원에서 관찰할 때 분명히 부각된다. 첫째는 각자가 귀속하는 一次集團 즉 家族, 同窓, 地緣組織 안에서 형성되는 人間關係이다. 여기서는 거의 모두가 자기희생적이고, 共同體指向的이고, 강인한 유대의식을 포출한다. 다시말하면 一次集團속에서는 人間關係가 強度높은 道德性으로 이어져있다. 그러나 이들 小集團들 相互關係, 예를 들면 어느 한 소집단 구성원이 자신의 集團構成員이 아닌 사람과 접촉을 할 때 어떠한 行爲定向을 취하는가 생각해 보자. 이러한 關係에서는 無道德性이 亂舞하는 몰인정하고 남을 생각해주지 않는 사회이다.

토마스·홉즈가 말한 「自然狀態」(the state of nature) 그것이다.

小集團의 렌즈(lens)를 통하여 韓國社會를 고찰하는 경우 社會構造는 동질적이고, 유대감이 강인하고, 공동체 指向的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見解를 주장하는 學者들이 많이 있다. 반대로 一次集團 外部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韓國社會構造를 조명하는 경우 無道德的 個人主義(amoral individualism)가 팽배한 社會라고 結論이 나올 수 있다. 韓國社會를 끈질긴 個人主義化의 요람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다.

韓國社會가 共同體指向的이면서 同時에 강인한 個人主義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個人主義가 팽배하면 共同體的 유대의식이 희석될 수 밖에 없는 논리가 개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韓國社會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두가지 견해는 部分的으로만 옳은 것이다(half truth). 보다 客觀的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西歐的 個人主義가 지배하는 社會도 아니고, 그렇다고 社會全體에 걸쳐 확산된 共同體意識이 성숙해 있는 社會도 아니다. 韓國社會構造의 實像은 內部的으로 道德性이 강한 小集團들이 상호간에 치열하고 無道德한 生存競爭을 벌이는 사회이다.(이에 대한 더 자세한 分析은 Kim, Lee, and Youn, 1990 참조).

民族共同體形式의 문제로 돌아와서 「의사가족」 原型이 示唆하는 함축은 무엇인가? 小集團속성을 가진 「의사가족」 組織이 原型인 韓國文化속에서는 다른 形態의 組織을 구축할 수 있는 潛在力이 存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組織 形態에 관한한 韓國文化의 레퍼토리(cultural repertoire)가 小集團的인 「의사가족」 原型에 국한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여하한 크고 작은 組織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여도 原型의 흡인력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結局에 가서는 「의사가족」單位로 되돌아 간다. 이것은 「의사가족」組織 設計圖 이외에 다른 設計方式을 韓國文化 프로그램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된다.

韓國文化가 용납하는 조직형태는 소규모의 「의사가족」組織이다. 유대감이 강한 共同體를 형성하려면 이러한 소규모 「의사가족」組織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7천만 한민족全體를 포함하는 巨大集團으로 이러한 共同體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소규모 「의사가족」組織 성향에 정면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小集團的 「의사가족」組織에 집착하는 문화속에서는 巨大民族共同體의 구축이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IV. 民族共同體의 建築構造 : 超共同體

巨大集團인 民族共同體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共同體의 「規模制約法則」과 「의사가족」組織 原型的의 강력한 흡인력 때문에 共同體의 모델을 全體民族次元으로 확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民族共同體의 형성은 불가능한 작업인가? 그렇지 않다. 두가지 阻害要因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현실적으로 감안하고 民族共同體를 設計하면 가능해진다. 즉 民族共同體의 建築構造를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民族共同體의 建築構造로 超共同體(supra community)를 여기서 제시한다. 超共同體의 핵심은 小集團共同體를 개개집단으로 확산시키는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방식이다. 小集團共同體의 구성단위는 구성원개인들이다. 이에 반해 超共同體는 구성단위가 小集團共同體들이다. 따라서 超共同體의 建築資材 (building blocks)가 小集團共同體들간의 연계라고 한다면 共同體의 基礎는 개인들간의 유대하고 할 수 있다.

超共同體의 장점은 「規模制約法則」의 한계와 「의사가족」組織 原型的의 흡인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데 있다. 오히려 「의사가족」성향을 역이용하여 民族共同體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의사가족」성향이 깊이 용해해 있는 韓國文化속에서는 小集團共同體를 형성하기 용이하다. 왜냐하면 각 개인들이 意識 또는 無意識적으로 小集團으로 집착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 성향을 小集團共同體로 연결시킨때 형성되는 공동체는 그 構成員들간의 유대감, 공감대의 밀도, 상호접촉의 호혜정도는 어느 다른사회에 비해서도

보다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文化的側面에서 보아 小集團共同體形成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실천성 있고 順理的(self-reinforcing)인 일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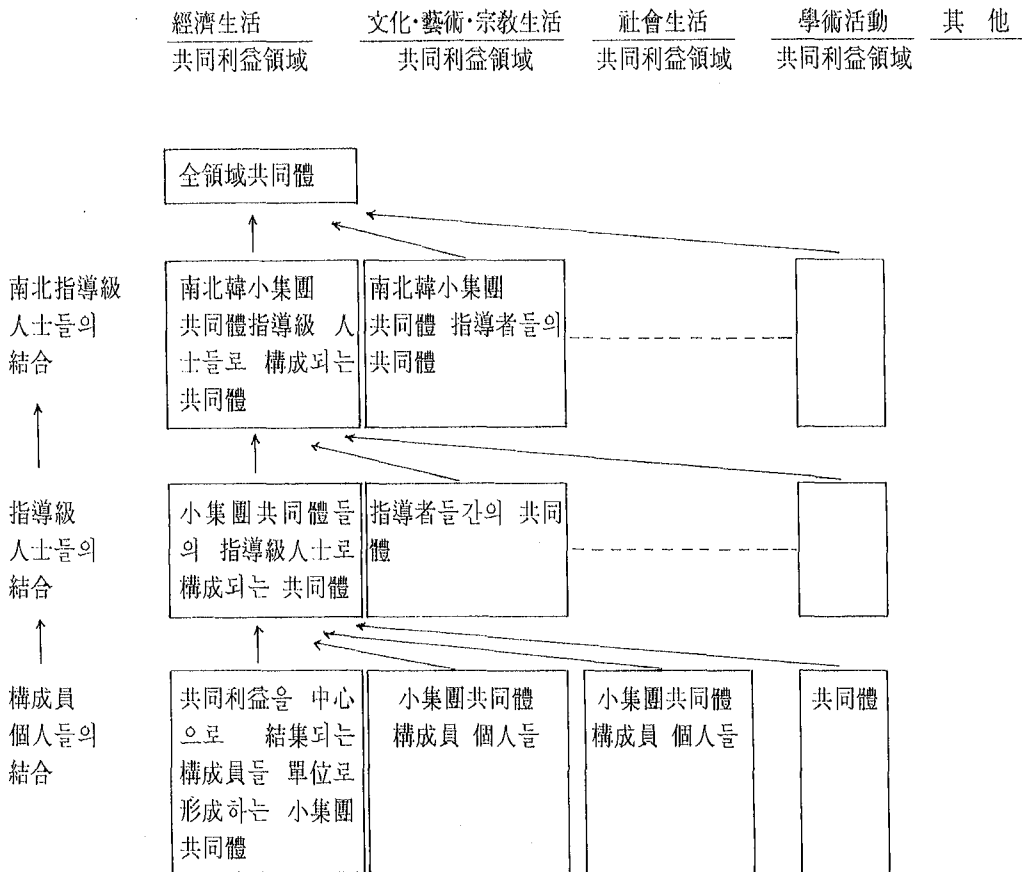
小集團共同體를 단위로하여 구성되는 超共同體를 형성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社會, 文化, 經濟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각각의 領域안에 存在하는 「共同利益領域」(JIP)을 중심으로 小集團共同體를 형성한다. 이들 小集團共同體는 文化的惰性인 「의사가족」組織의 形態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각 共同體 構成員들간의 유대는 강도가 높을 것이다.
- 「共同利益領域」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小集團共同體를 형성시키고, 그리고 이들 共同體들의 수를 최대한 증가시킨다. 統一의 시각에서 볼 때 특히 分斷線을 초월하는 小集團共同體들을 모든 생활영역에 확산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南北韓 住民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小集團共同體形成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제적 共同利益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체들의 形成, 學問的 共同關心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체들의 形成, 宗教的 共同信仰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요점은 「共同利益領域」이 존재하는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남북한 住民들의 자유스러운 참여를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
- 超共同體의 建築構造는 이들 小集團共同體의 지도급사람들을 결집시켜서 그들간에서 또 다른차원의 共同體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도급인사들이 상호간에 존재하는 「共同利益領域」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

밀한 접촉과 협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대표하는 小集團 共同體들의 이익들이 보다 차원이 높은 指導級人士들로 구성된 상위의 共同體속으로 수렴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7천만 民族全體를 하나의 超共同體 즉 民族共同體안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圖式으로 建築構造를 표현하면 多層的 小集團共同體의 結合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超共同體의 建築構造



— 超共同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國家公權力의 역할은 간접적인 補助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 公權力이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고 직접적으로 앞어나선다면 이것은 共同善인 統一의 성취를 國家公權力(the state solution)으로 몰고 가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경우 民族共同體를 통한 統一成就方法을 否定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내 公權力의 발동으로 統一을 성취하는 길은 그 費用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라 지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 바 있다. 共同體形成을 수단으로하여 統一을 성취하려하는 경우 南北韓 두개 公權力은 뒤에서 支援 또는 補助役割의 임무만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公權力의 역할은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그리고 자발적동인에 의해서 相互間의 「共同利益領域」을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小集團共同體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 조성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公權力이 一線에 직접나서서 小集團共同體形成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the state solution에 해당하는 것이다. 公權力의 간접 支援과 補助役割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南北協商을 통하여 小集團共同體가 형성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시킨다. 南北韓住民들이 「共同利益領域」을 相互間에 개발할 수 있는 最大限의 기회를 창출해 주는 작업이다. 그것은 南北韓 住民들이 상호자유롭게 그리고 개방적인 접촉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過程에 阻害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는 作業이 된다. 南北韓 公權力主體들은 協商 즉 市場메커니즘(the market solution)을 사용하여 이러한

분위기조성에서 主役을 담당할 수 있다.

- 小集團共同體형성을 위한 여건조성이 두개 公權力의 임무이다. 이외에도 「共同利益領域」을 넓게 연구탐색하여 그러한 共同利益이 어느 생활영역에 존재하는지를 國民들에게 알려주는 役割이다. 이것은 市場調査를 하여 그 정보를 企業들에게 무료제공하여 國家經濟의 成長을 꾀하는 政策과 비슷한 것이다. 戰後日本政府가 이러한 情報蒐集活動을 하여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여기서는 경제분야에 국한된 「共同利益」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생활영역에 걸쳐 存在할 수 있는 「共同利益領域」들을 탐색하여 그 정보를 관심있는 國民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이럴 때 小集團共同體를 형성하는데 드는 費用 즉 transaction cost가 적게되어 共同體形成이 쉽게 될 수 있다.
- 人道的 發想에서 나오는 南北交接 제스츄어는 실효가 없는 것이다. 흔히 한쪽에서 다른쪽을 돕기 위해 人道的인 援助를 하면 피차간의 共同體意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는 듯 하다. 이러한 제스츄어는 理論적으로 보면 先後가 전복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人道的의 行爲는 먼저 共同體가 형성된 후 그 구성원들이 共有하는 「共同利益」의 共通認識속에서 자연발생하는 結果이다. 結果를 先行시키어 共同體形成過程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共同體들이 형성되면 公權力이 人道的의 援助를 시도하지 않더라도, 共同體構成員들이 스스로 서로를 돕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된다. 왜냐하면 互惠關係(reciprocity)

로 얽힌 共同體構成員들간의 關係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相扶相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公權力이 주도하는 人間主義的 援助는 共同體形成을 阻害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순수한 共同體支援政策으로 간주되어지지 않고, 반대로 정책의 政治的意圖를 의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V. 結論：統一成就와 民族共同體

지금까지 分析된 結果들을 간략히 整理한다.

- (1) 統一의 成就是 共同善(public good)의 一種이다.
- (2) 共同善의 취득은 共同善이 지니는 특수속성 때문에 構成員들의 自發的 協調를 통해서는 산출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性向을 가지고 있다. 이 것이 共同善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의 問題이다.
- (3) 이러한 共同善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方法은 세가지가 있을 뿐이다.
 - 公權力 使用에 依存하는 方法
 - 市場메커니즘(즉 bargaining)을 사용하는 方法
 - 共同體形成을 사용하는 方法
- (4) 이들 세가지 方法중 共同體形成方法이 가장 실현성있고 그 所要費用(cost)이 가장 낮은 方法이다.
- (5) 共同體는 그 構造的 속성으로 말미암아 7천만 韓民族과 같은 巨大集團으로 확산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점은 共同體가 지니는 小集團性 즉 「規模制約法則」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 (6) 文化的側面에서도 「의사가족」 原型에 집착하는 韓國人들의 행위 性向 때문에 巨大共同體를 형성하기 어렵다.
- (7) 「規模制約法則」과 「의사가족」 組織性向을 감안하고, 巨大民族共同體를 形成할 수 있는 方法의 하나가 超共同體構造이다. 超共同體는 小集團共同體들이 단위가 되어 형성하는 「共同體들의 共同體」이다.

(8) 超共同體를 형성하는 과정속에서 南北韓 두개 公權力 주체들은 간접적이고 補助的 역할을 해야한다. 公權力들이 앞에 나서서 共同體 形成努力을 주도하는 경우 이것은 政治的 해결방식 즉 the state solution이 되기 때문에 共同體形成을 통한 統一方案이라 볼 수 없다. 南北韓 주민들로 구성되는 小集團共同體 形成過程에서 公權力의 역할은 분위기조성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9) 超共同體가 형성이 된다면 바람직한 모든 형태의 共同善이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의 협조를 통하여 취득될 수 있다. 平和的이고 國民들의 자발적협조에 기초한 統一의 成就도 여기 포함된다.

超共同體形成은 一朝一夕에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남북한 각각의 사회안에 小集團共同體가 많이 조직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들 小集團共同體들이 南北韓 分斷線을 넘어서 서로 접촉하여 南北韓 住民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단선을 초월한 共同體들이 많이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超共同體形成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 過程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급한 「냄비 끓기식」 統一論議는 유용한 것이 못된다. 統一에 대한 국민들의 熱望이 뜨겁게 표출된다고 해서 순식간에 統一이 된다고 기대할 수 없다. 지나가야 하는 여러段階의 過程을 거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時間이 걸리더라도 過程을 하나하나 거치는 지혜와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共同利益領域」을 하나하나 탐색하고, 그 안에서 小集團共同體를 하나씩 조직해 나가는 것이 統一로 나아가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 Basic Books, 1984.
- Hardin, Garrett,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1968.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971.
- Taylor, Michael,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2.
- Taylor, Michael,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7.
- Williamson, Oliver E., *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 Free Press, 1975.
- C. L. Kim, N. Y. Lee & J. S. Youn, "The Belief system and political behavior in Korea." paper delivered at the annual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eeting, April 5-7, 1990, Chicago.
- National Unification Board, ROK, *To Build a 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Korean commonwealth*, Seoul : Korea.
- Park, Han Shik, "Foundations for national community,"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reunification, Anaheim, CA, July 6-9, 1989.
- C. L. KIM, "Rebuilding community in divided Korea : an analysis of reunification issue based on collective action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reunification, Anaheim, CA, July 6-9.

金宗林, 金兌基, 「南北韓 協商條件의 理論的 研究」, 양성철 엮음, 南北統一 理論의 새로운 전개,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9.

金宗林, 「韓國의 權力組織原型에 관한 小考」, 議政研究 第27輯, 韓國議會發展 研究會, 1988.

金宗林, 朴贊郁, 「不文行爲律과 議會過程: 11代 國會研究」, 朴東緒編 議會와 立法過程, 서울: 法文社, 1985.

2. 民族共同體 憲章과 統一國家의 理念

李 容 弼(서울大)

目 次

머 리 트 말	33
I. 民族共同體 憲章의 基本前提	35
II. 平和와 統一의 基本方向	37
III. 機能的 複合體로서의 民族共同體	40
IV. 民族共同體 再統合過程	43
V. 統一國家의 理念	50
맺 는 말	51

머 리 말

우리의 民族史를 돌이켜 본다면 그 内部의 흐름에는 강인한 民族의 生命力和 意志 그리고 슬기로운 文化的 遺産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강인한 民族의 生命力和 發展에의 끈질긴 意志가 없었던들 우리는 그 숭한 外侵의 試鍊 속에 파묻혀 이미 오래 전에 民族과 그 文化的 遺産을 말살당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의 祖上들이 거둬지는 外侵의 受難 속에서도 民族의 自己保存과 發展에의 끈질긴 意志가 꺾여져 본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民族은 民族史의 展開過程에서 單一民族으로서의 文化傳統을 繼承 發展시켜 왔으며 수많은 外侵과 國難 속에서도 單一民族으로서의 團結力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단합된 민족의 底力을 連綿히 이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第二次 世界大戰의 종결과 더불어 東西 兩大陣營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民族은 우리의 意思에 反한 國土分斷의 悲劇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國土分斷은 6·25動亂을 겪으면서 休戰線으로 바뀌었고 중국에는 民族을 둘로 갈라놓는 民族分斷線이 되었다. 祖國의 分斷은 自身の 過誤에 의한 應報도 아니고, 自身の 自由意思도 아닌 他意에 의한 民族分斷의 悲劇이었다. 하나의 民族, 하나의 國家의 他意에 의하여 分斷이 強化된 채 統一을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苦痛과 悲哀는 우리와 같은 分斷國의 國民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실감 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民族分斷의 40余年間 南과 北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의 여러 分野에서 異質化되었고 이와 같은 異質化를 더 以上 放置하게 된다면 民族共同體는 瓦

解되어 回復될 수 없는 狀況으로 發展될 수도 있다. 우리 民族의 運命과 將來를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民族의 統一이 人道的 見地에서 뿐만 아니라 民族의 異質化와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放置할 수 없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은 民族生存과 繁榮을 期約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統一을 志向하는 過渡的 政策代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의 基本前提 위에서 우리는 民族共同體 憲章과 統一國家의 理念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民族共同體 憲章은 統一이 實現될 때까지의 南北關係를 규정하는 基本章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 憲章은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本方向 뿐만 아니라 이에 의거해서 統一에 이르는 具體的인 中間過程에 대해서 규정하게 된다.

I. 民族共同體 憲章의 基本前提

統一된 祖國은 民族構成員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自由와 人權과 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國家라고 하겠다. 이러한 民族共同體는 현재 南北으로 갈라진 民族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바탕이 되며 우리 民族의 統合을 이루고자 하는 當爲이자 이를 보장하는 根本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를 가진 南과 北이 分斷 40余年間 누적된 깊은 不信과 오랜 對決, 敵對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 아침에 統一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國土의 分斷과 民族의 分裂이 外勢의 一方的 決定에 의해서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民族이 겪었던 슬한 試鍊과 苦痛을 이제는 종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分斷과 戰亂의 상처가 너무도 깊었기에 平和와 統一에 대한 우리의 희망도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特히 東西間의 新데탕트의 霧圍氣가 조성되고 東歐社會主義圈에서의 改革과 開放이 高潮되고 있는 오늘의 狀況에서 우리 民族 만이 分裂과 反目 속에서 民族의 力量을 非生産的으로 消耗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南과 北 間의 敵對的 狀況이 지속되면 지속 될수록 民族은 異質化될 뿐만 아니라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地球上의 모든 民族이 國際政治의 각박한 現實과 치열한 競爭 속에서 生存의 길을 探索하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民族은 언제까지나 南北間의 葛藤關係를 지속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自問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東西獨 關係의 劇的 變化와 獨逸民族의 統一에 대한 意志와 그 努力의 結實을 우리의 分斷克

服을 위한 視角에서 思慮깊이 吟味하고 또한 敎訓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底邊에는 이와 같은 意味에서의 民族共同體의 存續과 分斷克服의 摸索을 위한 意志와 具體的 現實方法 간의 連繫를 찾아 볼 수 있다. 政府當局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統一問題를 民族概念을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도 統一方案에서 민족적 문제가 도외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분단된 국토와 국가의 再統一이라는 空間的 次元에서 통일문제가 다루어졌으며, 단순히 分裂과 對決의 피해로부터 民族을 구출해야겠다는 사명감에만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는 민족을 통일문제의 중추적 개념으로 놓고 단순히 분단극복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민족번영의 民族史의 展開라는 次元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¹⁾

그러나 단순한 分斷克服 보다 더 절실한 것은 分斷狀態를 放置함으로써 惹起되는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防止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國家는 有限하지만 民族은 永遠하다라는 命題의 涵蓄을 오늘의 分斷狀況에 비추어서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40余年間 持續해온 韓半島에서의 두개의 異質的 理念과 體制가 더 이상 지속된다면 南北으로 分裂된 民族共同體는 끝내 그 瓦解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民族은 스스로 分斷을 克服하고 統一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力量을 갖게 되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民族의 성숙된 力量에서

1) 國土統一院, 한민족공동체統一方案의 理論的 基礎와 政策方向, 1990, p.15.

비롯된 自信感을 바탕으로 해서 北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民族의 共同繁榮을 추구함으로써, 統一問題를 어느 누가 아닌 남북한 당사자 간에 자주적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民族共同體 憲章은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防止하고 나아가서는 民族共同繁榮과 統一國家를 실현할 수 있는 基本方向과 具體的 方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Ⅱ. 平和와 統一의 基本方向

民族共同體의 瓦解를 방지하고 그 存續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本方向의 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民族의 統一이 가장 절실한 課題이긴 하지만 統一의 目標와 함께 그 手段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平和的 方法에 의한 民族共同體의 回復과 存續 그리고 이에 의거한 統一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共同體 憲章은 반드시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本方向을 具體的으로 提示하여야 한다. 平和와 統一에 대한 基本立場은 이미 平和統一 三大原則에서 明白히 闡明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原則에 의거해서 보다 具體的 方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平和定着을 위한 緊張緩和

南과 北은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에 대해서 合意하기 위해 먼저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을 위해 相互 努力해야 한다. 武力에 의한 統一이 얼마나 非人

道的이며 反民族的이며 또한 非現實的이라는 것은 이미 6·25 戰爭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南과 北은 相互 誤解와 不信을 해소하고 緊張의 高潮를 완화시키는데 共同努力을 경주해야 한다. 이미 7·4共同聲明에서는 明白히 제시된 바와 같은 南과 北은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武裝挑發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故를 防止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措置를 취한다. 南과 北은 雙方間에 紛爭問題 解決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武力 및 暴力의 使用 또는 威脅을 완전히 止揚하고 모든 問題를 相互 對話와 妥協을 통해 平和的 方法으로 해결한다. 韓半島에서의 戰爭危險性을 根本적으로 解消하기 위하여 南과 北은 相互不可侵協定을 締結해야 한다. 雙方은 緊張緩和와 戰爭防止를 위하여 休戰體制를 유지하면서 軍備競爭의 止揚과 軍事的대치 狀態의 해소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軍備競爭을 止揚하고 武力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軍事的 信賴구축과 軍備統制를 실현해야 한다.

(2) 平和定着을 위한 南北의 對外關係

南과 北은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南과 北이 같이 國際機構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南과 北은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思想, 理念, 制度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雙務的 및 多者間 國際條約과 協定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協議한다.

南北間의 소모적인 競爭, 對決外交를 종결하고 北이 國際社會에 발전적 기

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南北代表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韓半島의 平和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北이 美國, 日本 등 우리의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추구한다.

(3) 平和定着을 위한 相互開放

南과 北이 40年間 分斷된 以來 民族間的 異質化가 深刻한 問題로 나타났다. 民族共同體의 存續이나 國際情勢 추이에서 볼 때 南과 北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相互 또는 모든 國家에게 開放해야 한다.

南과 北은 分斷으로 인한 民族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여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相互交流과 協力을 통하여 社會的 開放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南과 北은 이산가족의 人道的 再會問題를 포함해서 南北間의 자유로운 人的 往來와 다각적인 交流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 交通, 우편, 통신, 체육, 학술, 教育, 文化, 보도, 보건, 기술, 환경보존 등 各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위해서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같은 相互開放과 多角的인 交流는 共同繁榮의 經濟圈을 형성하며 南北 모두의 發展을 이루고 民族構成員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Ⅲ. 機能的 複合體로서의 民族共同體

(1) 民族共同體의 回復과 正常的 作動

民族共同體란 民族이 集團의으로 生活을 營爲하는 共同體를 말한다. 여기서 民族이란 共通의인 結束力에 의해서 함께 結束된 人間의 集團이다. 이러한 結束力은 言語, 地域, 經濟生活 및 文化의 共通性에 나타나는 心理狀態의 共通性을 기초로 해서 形成된다. 따라서 民族이란 歷史的으로 共通성과 結束力에 의해서 구성된 集團의 健全한 共同體라고 한다. 그런데 民族이 共同體로서 存續하려면 共通性만으로는 充分한 條件이 될 수 없다. 民族構成員들 간의 지속적인 意思疏通(communication)에 의해서 民族의 實體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民族은 타고난 特徵이라고 하기 보다는 社會的 學習과 習性形成過程의 結果라고 하겠다.”²⁾

民族의 生存空間으로서의 共同體는 領土的으로 境界지워진 社會體系 또는 서로 맞물려 있는 또는 統合된 機能的 下位體系들 (social system or set of interlocking or integrated functional sub-systems)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共同體는 經濟的, 政治的, 宗教的, 倫理的, 教育的, 法的, 社會化, 再生産 등의 下位體系들이 작동하고 있는 社會體系라고 할 수 있다.³⁾ 여기서 의미하는 共同體의 개념은 調和, 사랑, 우리 意識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는 것

2) Dankwart A. Rostow, "Natio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II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 12.

3) Jessie Bernard, "Community Disorganization," David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ol. III.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 163.

이 아니라 最小限의 合意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로 맞물려 있는 또는 통합된 機能的 下位體系들의 複合體로서의 民族共同體는 正常的으로 作動할 수 있으나 民族共同體 自體가 分裂된 狀況 아래서는 正常的으로 作動할 수 없게 된다. 더우기 이러한 非正常的 分裂狀況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民族共同體의 分斷된 部分들은 相互 異質化를 深化시키게 되며 급기야는 民族共同體의 瓦解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共同體의 회복과 그 正常的 作動을 위해서 過渡的 體制로서의 南北聯合의 制度化가 요구된다.

(2) 過渡的 體制로서의 南北聯合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를 가진 南과 北이 分斷 40余年間 누적된 깊은 不信과 오랜 對決, 敵對의 關係를 그대로 두고 하루 아침에 統一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南北의 分斷과 이로 말미암은 民族의 異質化는 南北의 社會構造에도 그대로 反映되어 있어서 民族의 共同性 회복을 위한 中間段階를 거치지 않고서 完全한 統一에의 段階에 이를 수 없다. 統一로 가는 中間단계로서 南과 北은 서로 다른 두 體制가 존재하고 있다는 現實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共存 共榮하면서 民族社會의 同質化와 統合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統一에 접근할 수 있는 中間過程을 制度化하기 위해서 南과 北은 過渡的 聯合體制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聯合體制에 의해서 南과 北은 民族共同體의 발전을 보다 加速化시킬 수 있다). 南과 北은 民族共同體의 틀 안에서 聯合의 형태로 연계됨으로써 잠정적으로 國家間的 關係가 아닌 民族 內部的 特殊關係를 가지게 되며, 안으로는 相互間的 關係를 協議, 調節하고 밖으로는 소모적 競爭을 지양하고 민족이익을 추구해 갈 수 있다. 따라서 南北聯合은 國家聯合이나 聯合國家의

概念이 아니며 機能的 側面에서 볼 때 여러 國家가 하나의 生活空間形成을 지향해 가고 있는 유럽 공동체나 노르딕 연합체와 性格이 類似하다고 하겠다.

南北聯合 안에서 南과 北은 각자의 外交, 軍事權 등을 보유한 主權國家로 남게 되지만, 수천년 동안 單一國家를 유지해온 民族의 전통으로 보아 南北聯合은 1民族 2國家를 의미하는 國家聯合이 될 수 없으며, 分斷狀況 下에서 완전한 統一實現 時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關係라는 점에서 특수한 結合形態라고 하겠다.⁴⁾

그러므로 民族共同體 憲章에서의 “南北聯合은 南北韓間의 民族共同體意識의 回復, 共同生活圈의 形成, 統一國家形成을 위한 組織과 機能을 가지는 過渡的인 하나의 協議體制의 性格을 갖는다. 이러한 構想은 韓半島에 南韓과 北韓이라는 두 體制의 存在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두 體制의 關係를 平和的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民族共同體를 회복, 발전시킴으로써 統一을 성취하려는 것이다.”⁵⁾ 雙方이 합의한 民族共同體憲章에 따라서, 過渡的 體制로서의 南北聯合안에 『南北頂上會議』, 쌍방 政府로 代表되는 『南北閣僚會議』와 南北國會議員으로 구성되는 『南北評議會』 그리고 共同事務處를 설치한다.

4) 국토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기본해설자료), 1989. 9. 25.

5) 張明奉, “한민족공동체統一方案”: 그 法的 體系化 研究(國土統一院, 1989), p.36.

IV. 民族共同體의 再統合 過程

(1) 複合的 過程으로서의 統一

民族共同體憲章에 의해서 南北聯合이 形成되고 또한 必要한 制度的 裝置가 作動된다 하더라도 民族共同體가 自動적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또한 統一國家도 自動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40餘年間に 걸쳐서 分斷된 民族이 그리고, 理念的으로 相反된 體制들이 統一을 성취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過程임에 틀림없다. 지난 2年餘間 統一論議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國民的 合意事項은 첫째 統一이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으며, 둘째 統一을 위해서 南北이 諸般分野에서의 交流, 協力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軍事的 緊張狀態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셋째 統一을 추진하는데 있어 南北은 서로의 存在를 인정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넷째 민족구성 의 구체적 삶의 내용을 담은 統一國家의 未來像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섯째 統一은 自主, 平和, 民主的 原則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⁶⁾ 이와 같은 國民的 合意에 反映된 基本前提는 民族共同體의 회복 또는 形成이 機能的 統合의 段階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含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機能統合論者들에 의하면 統一(unification)이란 “以前에는 政治的 紐帶가 없거나 또는 극히 적은 政治的 紐帶만이 있는 單位들로부터 政治的 共同體를 형성하는 過程”이라고 하겠다. 既存國家들의 統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統合理論

6) 李洪九,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政策基調와 實踐方向”,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理論的 基礎와 政策方向, p.17.

家들은 民族共同體와 같은 다른 政治的 共同體들에도 政治적 統一을 연구하기 위한 패러다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치오니에 의하면 “共同體는 自己充足的인 統合메카니즘(self-sufficient integrative mechanisms)을 가진 경우에만 완전히 확립된다.”⁷⁾ 그 메카니즘은 그 自體의 過程에 의해서 제공되며 外的 關係들 또는 構成單位들에 依支하지 않으면서 지속된다. 政治的 共同體는 3가지 종류의 統合 즉, 1) 暴力手段의 正當한 行使의 獨占, 2) 共同體의 資源과 報酬의 割當에 영향을 미치는 政策決定의 中心, 3) 政治적으로 意識이 높은 市民들의 大多數에 대한 政治的 同一化의 두드러진 焦點을 가지고 있다. 政治的 共同體와 다른 國際政治體系들을 구별시키는 主要한 特徵은 統合의 정도에 있다고 하겠다. 어떤 體系의 部分들이 相互關聯되어 있지만 統合의 水準은 높을 수도 있으며 또한 낮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相互依存性은 그 構成單位들에 의해서 스스로 유지될 수 있다.⁸⁾ 그러나 우리가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은 分斷된 實體들간의 統合이 增加되고 있는 過程 즉, 統一過程에 있다. 에치오니는 共同體를 지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體系들이 높은 수준의 統合에 도달되는 경우 때때로 超國家的 共同體로서의 현재의 유럽共同體나 스칸디나비아體系를 언급하는 경우와 혼동하게 되므로 이러한 애매성을 피하기 위해서 潛在的 政治共同體들 즉, 統合을 증진시키는 과정에 있는 체제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聯合體들(unions)이라는 用語를 사용하며 政治的 共同體들은 高度로 統合된 體系들을 언급하는 경우 사용된다.

7) Amitai Etzioni, “A Paradigm for the Study of Political Unification”, World Politics, Vol. XV, No.1, (1962), p.44.

8) ibid., p.45.

異質的인 南北의 兩體制가 一時에 또는 短期間 內에 統一될 수 있는가? 또는 一時에 統一될 수 없다면 兩體制간의 統合이 增加되는 統一過程은 어떻게 착수될 수 있을 것인가? 에치오니의 統一패러다임에 의해서, 南北간의 統一過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質問을 던질 수 있다. 즉, 첫째 統一過程은 어떤 條件 아래서 시발되는가? 그리고 어떤 努力들이 統一過程의 進展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要因들이 統一을 造成하고 또 어떤 要因들이 統一을 방해하는가?

에치오니 機能統合論의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 한민족共同體를 통한 南北 統一에의 漸進的 可能性이 意味있게 摸索될 수 있다. 에치오니의 繼起的 選擇 모델(a sequential-option model)에 의하면 어떤 社會의 再統合(reintegration)에는 3段階 즉, 첫째로 融合된 社會(a fused society), 둘째로 分化된 社會(a differentiated society), 셋째로 再統合된 社會가 있다.⁹⁾ 한민족共同體의 回復을 통한 南北統一의 過程은 이 세번째 段階에 照明함으로써 現實的 可能性을 吟味해 볼 수 있다. 南北이 각각 오랜 기간에 걸쳐서 分化된 異質的 社會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再統合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임에 틀림없다. 再統合의 경우 分化된 構造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다양한 單位內部的 메카니즘은 分化된 單位들은 複合的이면서도 統合的 全體로 연계시키게 된다. 再統合의 단계는 單位들 간의 統制 뿐만 아니라 合意形成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計劃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 경우, 그 以前의 단계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리고, 쉬운 轉換的인 社會가 된다.¹⁰⁾ 再統合된 社會는 分化된 社會의 能力과 融合된 社會의 全體性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

9)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pp.572-573.

10) ibid., p.573.

에로의 轉換은 융합된 要素들의 分化와 각 社會的 單位내의 再統合 뿐만 아니라 社會적 單位들간의 關係의 轉換을 수반하게 된다. 각 社會的 單位의 環境的 體系 즉, 相互關聯된 다른 社會的 單位들은 변화의 추세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각 단계들간이 轉換은 더 포괄적인 것이 된다. 첫번째 단계로부터 두번째 단계에로의 轉移는 예외적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民族國家의 地位를 수반한다. 즉 統合과 統制의 보다 포괄적인 社會적 單位가 형성되지만 相互依存性이 생기지 않는다. 統合과 統制의 유사한 확장은 두번째 단계로부터 세번째 단계에로의 轉移가 완결되기 전에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번째 단계에로의 운동은 分化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社會는 요소들의 再統合 뿐만 아니라 여러 社會들에서의 要素들의 연결을 수반한다.¹¹⁾

이러한 再統合過程과 관련된 命題들은 南北關係의 發展에도 適用될 수 있다. 南北이 社會의 再統合 段階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平和와 統一의 基本方向 즉, 平和定着을 위한 緊張緩和, 南北의 對外關係, 그리고 相互開放에 대한 合意를 거쳐야 한다. 南北이 이러한 일련의 問題들에 대해서 合意를 導出하는데 성공한다면, 統一에의 過程이 아무리 複雜한 것이라 하더라도 南北의 機能的 下位單位들 間의 統合可能性은 비교적 容易하게 또한 漸進的으로 증가될 것이다.

(2) 民族共同體의 最適統合：跳躍에서 統一으로

南과 北으로 分斷된 民族共同體에 있어서의 異質化를 방지하고 나아가서 同質性을 점차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民族共同體의 構造的 및 機能的 下位單

11) *ibid.*, pp.574-575.

位들의 繼起的 統合過程을 進展시켜야 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異質化된 南北의 두 社會가 一時에 그리고 全面的으로 統合하기란 物理的으로나 意識的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南北間의 統一은 複合的 過程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統一에 이르는 過渡的 또는 中間的 段階로서 南北聯合을 설정함으로써 民族共同體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民族共同體가 構造的 및 機能的 下位單位들로 구성된 複合體이므로 이러한 複合體를 회복시키려는 것은 繼起的 過程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능하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文化的, 社會的, 經濟的 및 政治的 異質化의 累積은 어떤 構造的 및 機能的 下位單位들간의 統合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解消될 수 있다. 에치오니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背景的 特徵들이 統合에 대해서 同一한 適實性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異質性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統合을 阻害한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強化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¹²⁾ 人種的 起源, 文化的 傳統, 言語 및 宗教에 있어서 背景의 同質性이 安定的 政治單位에 있어서 必須不可缺의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事實上 많은 경우에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文化的 同質性이 聯合體가 형성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統一에 있어서 必須 先行的 條件도 아니며 充分條件도 아니다.¹³⁾ 統一에 先行된 모든 條件 중에서 政治的 定向과 構造的 同質性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文化的, 社會的, 經濟的 및 政治的 異質化를 점차적으로 해소시키면서 統合을 지향하려면 무엇보다도 南北間의 疏通과 接觸이 要求된다. 그래서 도이취가 지적한

12) A.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p.19.

13) ibid., p.23.

바와 같이 “어떤 單位의 意思疏通能力이 統一過程의 하나의 결정적 要素”라고 하겠다.

南北의 異質的 單位들간의 統一의 跳躍過程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變化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境界를 넘어서는 人的, 物的 및 疏通의 흐름이 增加된다. 어떤 變化는 單位간의 意思決定量的 增加를 요구하게 되며 그러한 增加된 共有活動은 單位間 흐름의 增加 以上으로 共通의 意思決定의 必要性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 다른 하나는 어떤 한 部門에서의 統一이 다른 部門들에서의 통일을 자극시키게 되는 2次的 起爆劑 作用이라고 하겠다. 政治的 統一過程의 初期段階에서 下位單位들간의 “聯合體들은 軍事的, 經濟的, 政治的 및 教育的 部門들을 포함한 많은 社會的 部門들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部門들의 統一이 分裂된 民族共同體의 統一에 있어서 最近의 基礎를 제공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¹⁴⁾

南과 北間의 統一에 이르기 위한 過程에서 가장 쉽게 수용할 수 있는 互惠的인 部門은 文化的 및 經濟的 交流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經濟的 統一이 가장 큰 波及的 價値를 발휘할 수 있으며 그것이 最上의 跳躍基礎가 될 것이다.”¹⁵⁾ 文化的 部門과 經濟的 部門이 最適의 跳躍基礎를 제공하도록 南과 北이 다같이 노력한다면 統一過程은 比較的 용이하게 促進될 수 있다. 最適의 跳躍基礎를 제공해 줄 수 있는 機能的 下位單位들의 相互關聯性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波及效果는 더 增加된다.

14) *ibid.*, p.55.

15) *ibid.*

南과 北이 民族共同體의 回復을 위해서 南北聯合을 형성하고 同時에 機能的 統合의 첫 段階에 진입한 후에 그 南北聯合이 最適의 跳躍基礎를 마련하게 된다면 그것은 實質的 政治共同體 또는 民族共同體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에치오니의 觀察에 의하면 統一은 水準의 統合과 充分한 範圍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聯合體는 상당한 기간 存續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욱이 높은 水準과 充分한 範圍의 統合은 덜 統合된 그리고 덜 포괄적 統一의 형태보다 도달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 反證은 “고도로 統合되고 또한 넓은 範圍에 걸친 聯合體들이 일단 확립된다면 그것들은 잘 統合되지 않았거나 또는 포괄적인 아닌 聯合體들 보다 더 安定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反證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준의 統合은 中間水準의 統合과 낮은 水準 또는 中間水準의 範圍의 聯合體들에서 찾을 수 있다.”¹⁶⁾

이러한 統合에 관한 命題들의 脈絡에 비추어 보아, 南과 北은 短時日 內에 그리고 全面的으로 再統合을 서두르기 보다는, 互惠的 原則에 입각해서 民族共同體의 回復을 위해서 南北聯合을 형성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下位單位들과 北이 統一을 지향하면서 民族共同體를 回復하기 위해서는 中間水準의 統合과 낮은 水準 또는 中間水準의 範圍의 聯合體, 즉 南北聯合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複合的 繼起的 過程을 거쳐서 終局的인 統一國家를 現實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6) *ibid.*, p.56.

V. 統一國家의 理念

民族共同體憲章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할 統一國家는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自由와 人權과 幸福이 보장되는 民族國家여야만 한다.”¹⁷⁾ 이러한 民族國家는 어느 特定 集團이나 階級の 專橫이 없는 體制이어야 한다. 물론 統一國家의 政治理念, 國號, 國家形態, 對內外 政策의 基本方向, 統一政策과 國會의 構成을 위한 節次와 方法등은 궁극적으로 民族構成員 전체의 自由意思가 반영된 統一憲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의 統一國家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統一의 過程을 民族的 觀點에서 南北이 共存共榮의 土臺 위에서 연합하여 單一民族社會를 지향함으로써 單一民族國家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統一國家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過程에서 첫째 民族이 主體가 되는 自主的 統一, 둘째 民族自由意思가 고루 反映되는 民主的 統一, 셋째 對話와 協商을 통한 平和的 統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統一祖國의 位相과 統一祖國이 추구해야 할 理念的 地標로서의 民族主義, 民主主義, 國際主義를 상징하지 않을 수 없다.¹⁸⁾ 統一國家가 이러한 普遍的 原則들을 추구할 때 비로소 民族의 영원한 自尊과 繁榮 그리고 自由가 保障될 수 있으며 동시에 統一祖國의 未來像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統一環境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염원하는 民族統一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17) 國土統一院, 한민족공동체統一方案 〈基本 解說 資料〉, 1989. 9, p.30.

18) 國土統一院, 問答式 統一問題 解說, 1989, p.32.

맺 는 말

民族共同體憲章은 強力한 民族統一에의 意志와 統一에 이르는 現實的 接近 方法을 結合시키는데 力點을 두어야 한다. 특히 民族共同體의 瓦解防止(또는 民族共同體의 存續), 平和와 統一의 基本方向, 그리고 統一에 이르는 過渡的 體制로서의 南北聯合 그리고 統一民主國家의 現實 등은 일련의 複合的 및 繼起的 過程을 통해서 可視化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機能統合論者들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葛藤이 감소되면서 相互依存度가 증가된다면 機能的 統合의 可能性이 상대적으로 증가된다. 南北間에도 이러한 假說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南北間에 相互依存성과 機能的 統合의 可能性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에치오니의 ‘統合連續性’에서 억압적 수준이 낮아지면서 功利的 및 규범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南北間的 갈등수준이 낮아지면서 機能的 統合에의 可能性이 漸進的으로 높아지게 된다.

南北間的 관계가 機能的 統合의 可能性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된다면 계기적 선택모델에 의해서 제시된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分化된 社會가 재 통합되는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에치오니가 再統合의 과정에 대해서 提示한 명제들이 南北韓 間的 漸進的 統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漸進的 統合에의 可能性은 무엇보다도 南北間的 關係가 相互依存的이며 또한 機能的 統合의 점진적 可能性이 열려지게 된다면 적어도 凝集과 調和를 통한 문화적 통합, 규범적, 기능적 및 의사소통적 차원에서 사회적 통합,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經濟的 統合 그리고 끝으로 복합적

사이버네틱 메카니즘에 의한 政治的 統合에의 길이 점차적으로 모색될 수 있다. 그러므로 南北間에는 葛藤構造의 변화가 요구되며, 동시에 漸進的 接近에 의한 機能的 統合에의 길이 착실히 추구될 수 있다.¹⁹⁾ 이러한 의미에서 南北間의 關係에서 機能統合의 이론들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현존의 葛藤構造의 변화와 漸進的 接近의 방식에 대한 남북의 基本的 合意가 前提되어야 한다.

우리는 民族共同體 憲章이 南北의 合意에 의해 이러한 機能統合論的 모델을 最大限으로 그리고 適實性 있게 수용하면서 제정된다면, 民族共同體의 存續과 統一國家의 實現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合理的 方案이 될 것이라고 본다.

19) 李容弼, “機能統合의 諸理論과 適用問題”, 민병천 편, 전환기의 통일문제(서울:대왕사, 1990), p.33.

3. 歐羅巴共同體와 한민족공동체

吉 榮 煥(아이오아州立大)

目 次

I. 歐羅巴共同體와 한민족공동체	56
II. 國際機構로서의 歐羅巴共同體	58
III. 歐羅巴共同體의 制度	60
IV. 歐羅巴共同體의 活動	63
V. 歐羅巴共同體의 機能 擴張	65
VI. 歐羅巴共同體의 教訓	68
VII. 歐羅巴共同體와 政治統一	71
VIII. 結 論	73

第六共和國의 盧泰愚大統領이 1989년 9월에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韓國統一의 청사진, 즉 한민족공동체의 건립안은 現實的이면서도 理想的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世界 다른 지역에서 특히 西歐羅巴에서 지양하는 超國家共同體 설립등과 같은 유사한 노력의 經驗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現實主義的인 요소 또는 期待를 찾을 수가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성공적인 事例에 의거해서 긍정적인 敎訓을 最大化하면서 또한 그들의 실패와 잘못으로부터 회피해야 한다는 자세는 現實主義 또는 實用主義의 요소를 반영하는 조처라고 하겠다.

그런데 한민족공동체 提案이 좀 더 이상적이며 또한 어느정도 非現實的인 인상을 주는 이유는 한민족共同體案과 歐羅巴共同體의 두 제안이 超國家的인 차원에서의 제도와 사회건립을 위한 接近方案으로서 共通性을 갖는다는 전제라 하겠다. 그러나 다음에서 論議하듯이 두개의 共同體가 공통하다는 전제는 誇張된 것이며 따라서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I. 歐羅巴共同體(EC)와 한민족공동체(KC)

韓國 統一의 학설과 접근방법은 여러가지 案들이 많은 學者들과 利益團體로부터 提案되었다. 한 예로서 최근에 출간된 論文集에 의할 것 같으면 일곱개의 學術的 接近들이 한국통일에 유효하다 한다. 그래서 Haas씨에 의할 것 같으면 韓國統一에 도달할 수 있는 通路로서는 歷史的接近, 中立接近, 機能接近, 非暴力接近, 仲裁接近, 交渉接近 그리고 政治的 可能性 接近 등이 있다. 그러나 新機能 接近 또는 地域 統合(예로서는 구라파 공동체)을 거쳐서 한국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諸般 方案들을 반드시 實踐化하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歐羅巴共同體(EC)는 정식으로 구라파공동체들(European Communities)이라고 알려지는데 西歐羅巴 住民들의 지역 통합과 단결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론되는 한민족共同體(KC)는 단지 南韓의 盧泰愚 정부에서 제안한 韓國 再統一의 청사진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두개의 共同體 提案은 어구로 봐서 또는 공식명칭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目的이나 機能面으로 봐서는 아주 다른 것이다. 따라서 EC와 KC간에는 類似한 면보다는 相異한 점이 왜 많은가라는 이유로서 세가지 점을 추가할 수 있다.

첫째, EC(歐羅巴共同體)는 다각적인 12個 主權民族國家가 단체 회원을 구성하므로써 이루어진 超國家制度인데 비하여 KC(한민족공동체)는 南北韓이 그 회원으로 구성되는 兩者 國家간 또는 雙務 當事者 機構라 하겠다.

둘째, 歐羅巴共同體는 주로 會員國들의 통상활동이나 정책을 추진시키는 經

濟機構로서, 서구라파일대에 單一 共同市場을 1992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것이 主目的이다. 이에 반해서 한민족공동체는 自己 民族 내부간에 있는 南北韓 두 개의 國家間에 이루어지는 기구로서 그의 主目標은 분단된 한민족이 정치적 단결과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한민족공동체는 서울 政府가 남북한의 궁극적인 統一을 위하여 暫定的인 조치로서 提案한데 비하여 歐羅巴共同體는 현시점에서 制度化가 추진되고 있는 現實的인 과정이 된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는 分斷 韓國이라는 현재의 사실과 再統一 韓國이라는 未來의 가능성을 연결해 주는 中間過程인데 비하여 歐羅巴共同體는 현재라는 시각하에 있어서 社會構成化가 추진되고 있는 산 實務構成體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差異點에도 불구하고 한민족공동체의 앞으로의 진전은 歐羅巴共同體가 서구지역에서의 초국가적인 社會建設이라는 명제에서 성공한 事例의 경험을 배워야 하겠다. 그래서 歐羅巴共同體의 타당성으로서는 第2次大戰以後時代에 있어서 國際社會와 制度構築을 위하여 성공한 실례라는 점이다. 따라서 歐羅巴共同體는 오늘날의 世界 政治와 經濟 특히 1990년대와 그 이후에 있어서 중요한 當事者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救出에 유효한 敎訓을 얻기 위하여 이 論文에서는 우선 歐羅巴共同市場을 國際機構로서, 특히 그 유래와 발전을 위주로해서, 또한 그 구조와 과정 특히 1992년 이후에 있어서의 歐羅巴共同體의 動態的인 측면을 자세히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II. 國際機構로서의 歐羅巴共同體：起源과 發展 過程

歐羅巴共同體는 1967년 로마協定에 의하여 정식 發足되었으며 歐羅巴鐵鋼石炭共同體(ECSC), 歐羅巴共同市場(EC) 그리고 歐羅巴原子機構(Euratom)의 세 國際機構統合으로서 시작했다. 그러나 歐羅巴共同體의 기원은 엄밀히 말해서 세가지 특이한 協定の 체결, 즉 하나는 1951년, 그리고 두개는 1957년에 맺어진 條約에 의거한 것이다.

첫번째, 1951년에 체결된 파리協定은 歐羅巴鐵鋼石炭共同體를 만들면서 6個會員國인 서독, 벨지움, 불란서, 이태리,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델란드의 石炭과 鐵鋼 생산을 공동관리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두번째는 1957년에 締結된 로마協定으로서 같은 6個國會員國들이 歐羅巴共同經濟市場(EC)을 創設함과 동시에 6個國間에 점진적인 經濟統合과 共同政策을 증진시키겠다는 주목적에 의하여 創設되었다. 셋째는 이런 措置와 비등한 상황하에서 1957년에 로마協定을 통하여 歐羅巴原子力機構(Euratom)를 창설하면서 核資源을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歐羅巴共同體는 여러단계를 거쳐서 발전되어 왔다.

前記한 바 세가지 國際條約들은 구라파공동체의 憲法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바 그 이유는 이 條約文들이 구라파공동체의 주요 目的 뿐 아니고 그 機構의 活動分野등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가지 各個機構들은 1967년 하나의 기구로 統合되어서 歐羅巴共同體라고 改稱하게 되었다.

歐羅巴共同體의 회원국 수는 6個 創設國으로부터 1973년에는 9個國으로 증가되었는데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이 1972년에 條約文에 조인하므로써 가입됐다. 1981년에는 그리스,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해서 현재 12個國으로 증가되었다. 1988년도 統計에 의하면 歐羅巴共同體는 도합 3억2,480만명의 人口와 4조 7,110억불의 總生産額 그리고 國家 個人所得의 14,498불의 막대한 經濟機構로 등장하게 되었다.

Ⅲ. 歐羅巴共同體 制度 : 특히 構造와 過程에 있어서

歐羅巴共同體는 네가지의 제도적구조가 있다. 委員會는 공동체의 독립적인 政策의 수립과 진행 책임이 있으며, 理事會는 회원국의 代表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歐羅巴議會 그리고 歐羅巴 法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委員會 : 歐羅巴共同體委員會는 브뤼셀市에 本部가 위치했으며 17명의 委員들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불란서, 서독, 영국,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 등은 각각 2명씩 그리고 나머지 會員國들은 1명씩 임명하게 되어 있다. 委員會員은 각개 國家를 초월해서 공동체 全體利益을 대표해서 행동하도록 기대된다. 또한 委員會의 주요책임은 歐羅巴共同體條約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조처하는데 있다. 委員會는 理事會와 議會를 거쳐서 공동체의 政策이 통과되도록 이를 提案하는데 역할이 있다. 또한 理事會는 공동체의 豫算을 초안하는데 임무가 있다. 1990년도 豫算은 약 540億佛로 추정된다. 共同體 豫算은 주로 각기 會員國들의 국가총생산액에 의거한 追加金에 의한다. 또한 현재 약 1.4%의 稅金에 근거해서 모아진 물물 그리고 서비스업 등으로서 모아진 關稅額에 의거한다.

閣僚理事會 : 理事會는 그 事務局을 브뤼셀市에 두고서 12개 會員國들이 여러 분야에서 和合하는 기구로 성립되었다. 각료 이사회는 분야별 중요결정에 책임을 갖는다. 理事會는 共同體 立法을 승인은 하되 제의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理事會는 委員會가 제안하는 案件에 대해서만 대응하게 된다. 理事會는 또한 歐羅巴共同體의 예산안을 歐羅巴議會의 승인을 받기 위해 理事會는 의결

에 있어서 대체로 “실력비례제”(Weighted Voting)를 따르는데 예외로서는 위생, 환경, 세금 그리고 특정한 사항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特定項目에 관해서는 만장일치 可決을 따르게 된다. 각개 會員國은 6개 月 會長期間을 가나다순으로 번갈아서 봉사한다.

歐羅巴議會：議會는 一般市民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유일한 歐羅巴共同體 機構다. 비록 歐羅巴議會는 최근에 와서 歐羅巴共同體 결정에 있어서 더욱 커다란 役割을 하게되었는데 이것은 農業支出을 제외하는 모든 豫算案을 심사하며 변경, 거부 또는 승인하는 權限을 가짐으로써 연유한다.

1987년부터 議會는 理事會가 승인한 法案에 대하여 변경할 權限을 갖게 되었으며 理事會는 만장일치 否決로서만 議會의 決定을 翻覆할 수 있다. 議會의 직접선거는 1979년부터 시작됐고 5년 기한으로 議員職을 봉사한다. 총 518명이 議會職을 맡고 있으며 政治團體들은 여러가지 각개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다.

歐羅巴大法院：歐羅巴共同體法院은 대략 大法院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비록 구라과공동체 條約文을 집행하는 것 뿐 아니라 共同體 立法案의 해석과 집행이 合法的인가 그리고 공동체법안과 각개 회원국법안의 衝突이 있는가 등을 고찰해서 해결한다. 法定의 判事들은 歐羅巴共同體에 있어서 물물교환 또는 인적왕래의 자유화에 障害物 除去에 큰 역할과 공헌을 했는데 共同體 내에 있어서 여러개 사업체들이 會員國內에서 활동할 수 있는 法的 權限을 보장했다.

法廷은 대략 條約에 規定된 權限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共同體制度의 강화

그리고 共同體政策의 종합화 등을 推進했다. 법정의 결정은 주로 多數決原則을 따르는데 일단 決定된 사항은 그대로 시행되며 再審議가 허용되지 않는다. 法定 判事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룩셈부르크市에서 6년 期限으로 봉사한다.

IV. 歐羅巴共同體의 活動

歐羅巴共同體는 國際機構로서 몇가지 특이한 活動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二重的執行原則이라 할 수 있다. 歐羅巴委員會가 共同體政策을 起案하는데 반하여 歐羅巴閣僚理事會는 궁극적으로 구라파공동체의 重要 決定機關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歐羅巴議會는 구라파 인민들로부터 직접 선거받은 유일한 다국적인 歐羅巴機構라 할 수 있다. 歐羅巴法定은 司法機關으로서 歐羅巴共同體의 最高裁判所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歐羅巴委員會와 閣僚理事會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經濟社會委員會는 歐羅巴共同體의 여러가지 集團體들의 이익, 특히 고용주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와 농민들을 代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歐羅巴委員會는 초국가적인 權限을 갖고 있다. 委員會는 구라파공동체 條約들에 저촉되는 共同體의 政策, 예로서는 내부적 시장화, 외부적통상 그리고 共同農業政策 등을 樹立 또는 執行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또한 閣僚理事會는 구라파공동체에 있어서 最高決定權限을 갖고 있으며 현재 制度的 權限의 均衡을 調節한다. 歐羅巴議會는 代의원이 비록 直接選舉에 의해 선출되지만 이것은 단지 協議機構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歐羅巴共同體의 예산을 제외하는 여러가지 案件에 관해서 아주 制限된 權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歐羅巴議會는 그 역할을 점진적으로 增大해 가고 있다.

每年 1월과 7월에 歐羅巴 閣僚理事會의 議長이 바뀐다. 議長國家는 모든 會議을 주관하며 會員國들의 外交政策을 조절하는 노력과 같은 政府와 政府關係

問題 등을 第3者 國家에게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外交政策의 조질은, 구라파 政治協力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共同體 모든 회원국들의 共同行動을 위한 합의점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최근의 예로서는 中東平和過程, 南아프리카 그리고 中央아메리카 문제 등이다.

1989년 6월 현재로서 歐羅巴共同體委員會는 279개 1992년 지시 중 234개 公式 提案을 처리했다. 그중 130개안은 理事會를 거쳐서 會員國들에 의해 實踐되어 가고 있다. 委員會는 나머지 45개 제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1990년 12월까지는 모든 指針을 통과시키면서 1992년 1월 1일이전까지는 모든 立法措置를 실행하겠다는 것이 期待의 요점이 된다.

일단 指針이 채택되면 會員國家들은 특정한 期日이내(그것은 보통 18개월 내지 3년간으로서 또한 연장이 가능한 하지만) 國內法律化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과정에서 會員國들은 國內法律과 規定化에서 어느 程度의 裁量을 행사할 수는 있다. 따라서 指針은 共同體法律化는 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각개 會員國들의 시행을 監視하는 필요성이 남아 있다.

만일 會員國의 施行一程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抗議의 대상이 됐을때는 歐羅巴共同體委員會는 구라파공동체 法廷에게 訴訟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措處들은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該當國家들로 하여금 歐羅巴共同體 法案의 준수조건을 遲延시키는 결과 밖에 안될 수가 있다.

V. 歐羅巴共同體의 機能擴張

歐羅巴共同體는 국제정부간 機構로서 그 기능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擴張
되 왔다. 이들은 共同體 市民들로 하여금 관광이나 고용등을 위해서 이동하는
데 制限을 제거하기 위한 旅行證의 단일화, 1968년에 關稅同盟을 만듬으로써
共同體會員國家들 사이에 物物交換이 자유화되고 또한 共同農·水產 그리고 原
子核 研究政策들을 채택하는 것들이다. 최근에 와서는 歐羅巴共同體가 더욱
책임을 증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예로서는 金融政策의 조정, 환경관리, 마
약통제 그리고 그동안 會員國들에게 공식 부여됐던 광범위한 案件들이었다.
1989년 7월에 歐羅巴共同體는 또한 7개국 經濟正常會談國으로부터 폴란드와
헝가리에게 서방측 援助를 조절하는 役割을 부여 받았다.

12개 會員國의 경제를 統合하기 위해서 歐羅巴共同體는 현재 1992년까지
市場의 單一化 統合을 진전시키고 있다. 199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共同政策
을 예로 든다면 (1) 1990년초부터 資本의 自由移動을 저해하는 나머지 요소를
제거하는 것, (2) 專門 또는 敎育學位를 상호인정하므로써 辯護士, 醫師 그리
고 엔지니어들이 共同體내 어느곳에서라도 開業할 수 있는 것, (3) 트럭들을
위해서 單一化 稅關通過書類를 제정하고 지상, 공중 그리고 해상교통의 非統
制를 위하여 첫단계를 취하는 것, (4) 財政奉仕의 자유화를 위하여 첫번 조치
를 취하되 銀行投資 그리고 保險을 그 범위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5) 여러분
야에서의 生産品基準의 표준화와 조화를 상호 인정하되 歐羅巴共同體 내의 한
국가에서 판매되는 商品은 공동체내 어느 곳에서라도 販賣하게 조치하는 것

등이다.

현재의 市場單一化 努力은 1985년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會員國들이 약 300개의 法 지침을 승인한데서부터 기인한다. 1987년도 歐羅巴單一化法을 그 代表的 예로 들 수 있는데 政府指導者들이 時間表에 의거해서 立法 통과를 용이하게 만들다. 그 이후 歐羅巴共同體委員會는 약 85%의 立法指針을 완료했고 또 歐羅巴共同體理事會는 약 半이상을 共同體法案化를 완료했다. 이와 같이 어려운 決定을 완수했는데 그 이면에는 歐羅巴 國民 특히 企業家들이 歐羅巴에 있어서 單一市場의 登장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앞으로 상정되는 立法 案件을 봤을 때 歐羅巴共同體委員會로 하여금 대규모 事業體의 統合과 引受를 규제하는 權限의 부여, 共同體로 하여금 단일화된 事業體法案의 창설 공개적인 公共入札을 통하여 防衛를 제외하는 모든분야에 있어서 外國人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콘테이너로부터 自動車 또는 生物 工學에 이르는 여러분야에 있어서 生産과 規制를 均一化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진실로 歐羅巴市場의 單一化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歐羅巴共同體가 通商이나 投資問題를 초월해서 진출해야 한다. 共同體는 이미 환경보호, 마약과 테러리즘의 法的 規制 또는 이민, 노동법 그리고 貨幣와 財政에 관한 규제 의 法案化를 추구해 왔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國家主權의 문제 등은 會員國과 共同體制度들 간에 분쟁을 야기시켰다. 그동안 討議는 앞으로도 難關이 많은 것이 입증됐는데 한 예로서는 1990년 4월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理事會에서 英國首相 마저릿트 대치씨는 歐羅巴政治統合을 계속 추진하는

안전에 관한 聲明書에 이의를 제기했다. 따라서 비록 아주 樂觀的인 歐羅巴人
들도 1993년까지 完全無缺한 單一市場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

VI. 歐羅巴共同體의 敎訓

그러면 歐羅巴共同體의 40년 경험이 韓半島共同體案에 줄 수 있는 敎訓은 어떤 것인가? 歐羅巴共同體가 주는 유효한 교훈을 우선 열거하기 이전에 우선 두 共同體 사이에 있어서 性格과 目的에 있어서 기본적인 差異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민족공동체는 韓國 政府當局이 궁극적인 統一을 향해서 中間 段階으로 필요한 장래의 構想의 청사진에 불과하다. 이런점으로 봐서 韓半島共同體는 어떤 目標를 위한 手段의 하나로, 第6 共和國 盧泰愚大統領이 추진하는 정책인 것이다.

歐羅巴共同體는 이에 반해서 목적 自體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歐羅巴共同體가 현실화되었으며 超國家的인 입장에서 制度化 구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완전한 經濟統一이 성취하지는 않았으나 커다란 經濟共同社會를 위해서 歐羅巴共同體가 목표한 것은 효과적으로 實踐되고 있다. 따라서 歐羅巴共同體가 성공하는 이유는 會員國과 그들 국민이 이러한 國家止揚의 초국가적 협력 노력이 바람직하다는 總意와 要求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족공동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總意에 관해서 合意가 부재한데 그것은 한민족공동체가 韓半島 統一을 위한 특별한 形態와 接近의 한 表現으로서 南韓의 利益만을 따라서 北韓의 利益을 대표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限界內에서도 다음과 같은 敎訓을 歐羅巴共同體의 초국가적 공동사회 建設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1. 共同社會建設이라는 조치는 長時間이 소요됨.
2. 共同社會建設의 과정은 점차적으로 이행되어 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단계적”이지 “결의”에 의하거나 “공표”에 의해서 발생 발전하는 論理가 아니기 때문이다.
3. 歐羅巴共同體는 “합의적”인 형태의 統合 또는 制度建築으로서 會員國들의 國家主權과 獨立이 유지보존된 한계에서 이룩됐다.
4. 超國家的인 권력의 代行이란 단지 제한된 범위내에서 特定된 문제영역, 例로서 구라과공동체의 共同農業政策 채택과 같은 데에서만 가능하다.
5. “強制的”통합, 즉 “合意的”인 제도구축의 代案으로서의 強制的인 西歐羅巴地域統合은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自發的인 협력에 따른 總意에 의거해서만, 현재의 民族體制라는 환경하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6. 제한된 範圍內에서의 초국가적 權限은 단지 會員國家들이 상호 便利하고 有益하다고 인정되는 特定된 機能分野에서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認定된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7. 따라서 두가지의 “아이덴티티”나 “충성”이 對立 또는 衝突되었을 때, 민족국가의 “아이덴티티”나 “충성”이 초국가적인 “아이덴티티”와 “충성”보다 優位를 차지하는 것이 현 구라과 歷史와 政治에서 表出되는 현상이다.
8. 汎歐羅巴主義(1992년 이후의 구라과공동체)와 같은 超國家的 “아이덴티티”와 의식성은 위기를 통해서만 시험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超國家的인 理念은 두가지 칼날을 가진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그것은 西歐羅巴共同社會라는 영역이내에서의 肯定的인 地域統合을 위한 또는 統一을 위한 힘

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은 非歐羅巴國家나 民族과 같은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除去 또는 不統一이라는 否定的인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VII. 歐羅巴共同體와 政治統一

歐羅巴共同體가 서구라파국가들의 政治的인 統一을 이룩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고 두고봐야 하겠다. 따라서 歐羅巴인들이 오늘날 필요한 것이 共同市場이라는 제도하에서 經濟統合을 이룩한 그 이상으로 政治統一이 과연 필요하다는 것이 自明한 것도 아니다. 歐羅巴合衆國과 같은 政治統合은 바람직하거나 필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西歐羅巴의 經濟統合이 구라파인들의 궁극적인 政治統一을 위한 양호한 環境을 조성해 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政治統合만이 구라파인들의 利益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論理는 서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歐羅巴合衆國을 달성하겠다는 政治的결의나 要求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로서는 歐羅巴統一國家를 건설하겠다는 운동이나 캠페인이 理想主義者나 理想家의 꿈과 마음 이외는 있는 것도 아니다.

歐羅巴共同體의 敎訓을 한민족공동체에 適用한다면은 역사적이거나 제도적 발전에 있어서 어느 필요한 段階를 초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치 歐羅巴共同體가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필요했듯이 한민족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時間이 소요된다. 마치 구라파공동체가 進化的인 과정을 통하여 段階적으로 진전되듯이 한민족공동체도 앞으로 유사한 進化 節次를 통하여 진전할 것이다. 마치 歐羅巴經濟市場, 歐羅巴石炭鐵鋼共同體 그리고 歐羅巴原子力共同體가 구라파공동체 건립을 위한 1967년 Roma條約에 의해 설립되었듯이 한민족공동체도 南北韓 對話와 協力을 거쳐서 制度經驗과 試驗이라는 사전경험의 테

두리에서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民族共同體憲章의 채택이라는 문제만해도 南北對話의 적극추진 그리고 쌍방간의 증대된 交流와 協力이라는 과정이 앞서야 한다. 따라서 民族共同體의 제안만 하더라도 그것은 現實性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는데 그 이유는 남북대화나 협력이 쌍방 사이에 사전 實踐되기 이전에는 다만 學術的인 가능성 내지는 桌上空論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VIII. 結論：歐羅巴共同體類型的 妥當性

만일 歐羅巴共同體의 경험을 한민족공동체를 통한 韓半島 將來에 적합한 모델로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南北韓間에 韓半島共同體가 참으로 바람직하거나 실현성이 있다는 승意와 總意를 조성하고 성립시키는 작업을 指導層에서 先決問題로서 취급할 것이다.

1967년 로마條約은 구라과공동체를 正式成立시키는데 있어서 비단 시작만이 아니고 歐羅巴國民들 사이에 오랜동안의 제도와 총의 성립의 事前措處들의 결산이라 할 수 있다. 두개의 韓半島 當局사이에 사전협약이 없는 상황하에서 한민족공동체안은 그동안 보기 좋게 만들기는 했으나 실제 價値가 적은 統一方案중의 하나로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과거 1971년 이후에 서울과 평양 당국이 각기 提案해온 南韓의 20개 項目 統一方案 그리고 北韓의 高麗聯邦 提案들이 그러한 운명을 거쳤기 때문이다.

둘째, 한민족共同體案은 歐羅巴共同體의 “二重的 執行原則”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歐羅巴委員會는 매일活動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政策的인 방향과 지도는 閣僚理事會에게 부여되고 있다. 理事會는 定期的으로 단시간 예고에 따라서 빈번히 회합한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의 20명 南北閣僚委員會와 大統領 위주의 理事會는 歐羅巴共同體 委員會와 閣僚理事會와는 機能的 一致性이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100명으로 구성되는 南北評議會나 共同事務處 歐羅巴共同體議會나 브뤼셀에 위치한 共同體事務局과는 相異한 존

제이다. 한민족공동체의 여러 機構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役割을 좀더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민족공동체案은 좀더 目的 자체로서, 어느 목적에 의한 手段이 아닌 目的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가 歐羅巴共同體와 다른점으로서는 통일헌법제정과 총선거 실시 이후 통일민주국가를 수립한다는 점이다. 歐羅巴共同體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政治統一이 歐羅巴合衆國을 설립한다는 등의 정책선언이 없다는데 있다. 이런 면에서 統一韓國을 수립한다는 한민족공동체 방안은 會員國들의 政治統一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歐羅巴共同體 이상으로 進展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特記할 점은 앞으로 韓半島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歐羅巴共同體라는 국제기구의 經驗보다는 1989년 11월에 극적으로 전개된 東獨 베르린 障壁의 崩壞를 통하여 兩獨의 政治統一의 가능성이 성취되었듯이 南北韓의 정치적 통일도 分斷 獨逸의 경우가 좀더 역사적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겠다.

1989년의 冷戰體制의 붕괴와 美蘇 超強大國의 화해는 앞으로 南北韓 統一을 희망하는 韓民族에게 커다란 敎訓을 준다 하겠다. 그것은 世界政治와 安保環境과 國際體制는 극적으로 변화 또는 변질이 아직도 可能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의 韓半島統一과 장래도 남북한간에 政治意慾과 민족적인 統一에 관한 執念이 존재하고 있는 한 반드시 앞날이 암담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民族에게 극적인 순간과 기회가 앞으로 賦與된다면 이것은 事前豫告나 警告없이 조용히 또는 서서히 올 수도 있다 하겠다.

4.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과 高麗聯邦制 方案

高 秉 喆(일리노이大)

目 次

I. 머릿말	77
II. 南北의 統一方案	78
III. “高麗聯邦制”案의 可能性과 限界性	82
IV.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可能性과 限界性	85
V. 南北韓 統一方案의 類似性과 相異性	89
VI. 南北韓 統一方案의 折衷 可能性	91

I. 머릿말

韓半島의 分斷이 長期化한 것을 說明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要因을 들 수가 있겠지만 그중 方案의 不足은 아마 가장 比重이 낮은 要因일 것이다. 가장 重要한 要因은 두말할 것도 없이 南北韓間의 相互不信이다.

따라서 우리는 南北韓이 發表한 여러가지 方案 또는 청사진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方案의 주된 機能은 상징적인 次元에서 해석할 수 있다. 양쪽 집권층의 統一意志를 表現하고 선전경쟁에서 先술적인 利得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例이다.

그러나 統一方案이 宣傳의 도구라고 일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統一方案은 양쪽에서 원하는 統一像과 統一方法을 提示하는 機能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南北韓의 統一方案을 검토하으로써 南北間의 視角, 現實認識, 接近方法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음미할 수 있다.

이 論文은 두가지 意味의 “理解”에 조금이나마 공헌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것이다. 하나는 南北韓 統一方案의 學問的 理解를 증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南北韓間의 相互理解와 和合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目的을 달성하려면 分析의 客觀性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客觀的 分析을 도우기 위하여 필자는 南北韓이 發表한 統一方案에서 똑같은 수의 肯定的인 側面과 問題點을 찾아 보려고 한다. 다음 두 方案의 類似性和 相異性을 檢討하고 마지막으로 두 方案의 折衷 可能性을 생각해 볼 예정이다.

II. 南北의 統一方案

南北韓이 發表한 統一方案의 內容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약할 필요가 없을 듯 하나 몇가지 중요한 部分만 간단히 언급해 보려고 한다. 時期的으로 北韓의 方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1980年 10月 10日 평양에서 열린 朝鮮勞動黨 第6次大會에서 金日成 主席이 “中央委員會 事業總和報告”를 하면서 신을 보인 것이 바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이다. 이 方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從前의 “聯邦”이 統一을 성취하기 전에 거쳐가야 하는 過渡機構 또는 暫定的 措置라는 立場을 버리고 聯邦 自體가 統一의 한 形式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한다는 論理이다.¹⁾

이 方案은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한 “연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는 것이다.²⁾

또한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1)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참조. 이 책자는 金日成의 보고 중에서 統一에 관한 부분만 따로 출판한 것이다.

2) Ibid., p.12.

을 예상하고 있다.³⁾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은 10大 施政方針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自主性”의 견지, 民主主義 실시, 民族大團結의 도모, 南北間의 經濟的 合作과 交流, 科學, 文化, 教育分野에서의 交流와 協調, 交通·通信의 연결, “全體人民”의 생활안정도모와 복리증진, 海外同胞들의 권익보호, 南北共通된 국방, 외교정책 실시등을 내세우고 있다.⁴⁾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은 또한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南北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15만명으로” 감소한 다음 조선인민군과 大韓民國國軍을 統合하여 “단일한민족연합군을 조직”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⁵⁾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이 發表된지 3年後인 1983年 9月 9日 北韓·政權 創建 35周年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金日成은 “연방국가의 통일 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北韓에서는 이것이 “통일국가의 권력분배를 평등하게 하여 통일정부를 가장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새 방안”이라고 주장한다.⁶⁾

다음 南韓의 統一方案을 論하기 위하여는 1989年 9月 11日에 大韓民國 國

3) Ibid., p.13.

4) Ibid., pp.13-23.

5) Ibid., pp.20-21.

6) “남북연방제의 실시는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통보, 제 8 호(1983년 10월), pp.1-3.

會에서 盧泰愚 大統領이 發表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⁷⁾ 이 方案은 “하나의 사회가 없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한민족공동체”의 회복 발전을 위하여 南北이 共存하면서 協力하는 統一 以前의 中間段階로서의 “南北聯合”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南北聯合”은 “南北頂上會議”, “南北閣僚會談”, “南北評議會”, “共同事務處”, “常設連絡代表” 등의 여러기구를 가지게 된다. 남북한의 최고지도자(대통령과 주석)으로 구성되는 南北頂上會議는 南北聯合의 最高決定기구이며, 南北閣僚會議는 “공동의장(남북쌍방 총리)과 南北 各其 10명 내외의 閣僚級으로 구성”되어 “남북간의 모든 懸案問題와 民族問題에 대한 協議, 調整 및 그 實行을 보장”하며 人道, 政治, 外交, 經濟, 軍事, 社會, 文化分野를 다루는 5個 常任委員會를 가지게 된다.⁸⁾

“100명 내외로 쌍방을 代表하는 동수의 南北 國會議員으로 구성”되는 南北評議會는 “南北閣僚會議에 대한 諮問, 統一憲法 基礎 및 統一實現 方法과 절차 마련”이 주된 업무이다. 南北評議會에서 “統一憲法 草案”을 작성한 뒤에는 그것을 “民主的方法과 節次를 거쳐 확정, 공포”하게 되며 “統一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한다고 한다.⁹⁾

統一國家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組織과 施政方針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南北間에 協商하여 決定하게 되지만 南韓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明示되어 있다. 우선 통일은 自主, 平和, 民主의 3原則

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해설자료>, 1989. 9(서울 : 국토통일원, 1989)

8) Ibid., pp.13-15.

9) Ibid., pp.16-17.

을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民主”는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統一하는 것을 意味한다고 한다.¹⁰⁾

둘째로, 統一國家는 “民族成員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自由, 人權, 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國家”이다. 따라서 어느 特定集團이나 階級の 專橫이 없는 民主共和政府를 우리 민족의 유일한 選擇으로 확인함과 同時에 “새통일방안은 두體制의 共存을 영구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中間段階 성격의 未完成 統一에 대한 拒否 立場을 분명히”하고 있다.¹¹⁾

마지막으로 統一國家의 立法機構는 兩院制의 國會로 하되 上院은 “地域代表性”을 下院은 “國民代表性”을 반영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上院에서는 南北이 同等한 權限을 가지게 되나 下院은 人口比例의 原則에 따라 구성됨으로 南이 北보다 두배의 投票權을 가지게 된다.¹²⁾

以上 南北韓 統一方案의 骨子を 요약하였는데 다음은 두 方案의 比較分析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0) Ibid., p.14.

11) Ibid., pp.30-31.

12) Ibid., p.7.

Ⅲ.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의 可能性과 限界性

分析의 平衡을 維持하기 위하여 필자는 두 方案에서 같은 數의 可能性과 限界性을 찾아 보는 接近方法을 쓰고자 한다. 우선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의 可能性부터 살펴보면 첫째로 同案이 現實情下에서 南北의 “制度的統一”이 不可能하다고 認定하고 聯邦을 통한 “民族的統一”을 標榜하고 있는 것은 現實的 視角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南北의 思想, 制度 等の 差異와 獨自性을 認定한다는 趣旨도 肯定的으로 평가된다.

세째로 聯邦이라는 概念은 柔軟性 있게 해석하고 適用한다면 現實性 있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째로 聯邦政府가 私的所有와 個人所有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財產所有를 認定하고 保護하며 “여러계급과 계층의 이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南北의 經濟를 發展시켜 나간다는 것과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이권을 계속보장”한다는 方針은 資本主義體制의 受容이라고 풀이할 수 있고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의 實用主義的 側面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¹³⁾

다섯째로 그밖에도 이 方案은 “10大施政方針”에서 民族和合과 統一實現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概念과 原則들을 많이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自主性, 民主主義, 民族大團結, 多방면의 교류와 협조, 모든 사람의 福利增進, 남북간의

13)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pp. 16-22.

軍事力 축소, 해외동포의 권익보호, 南北間의 對外活動과 對外政策의 조절 등은 南北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고 民族全體의 利益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면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의 限界性은 무엇인가? 첫째로 論理的 一貫性의 缺如를 들 수 있다. 北韓은 한편으로는 南北의 思想과 制度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聯邦國家를 形成하여 統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南쪽의 制度가 바뀌는 것을 要求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南의 “군사궤소정권”이 民主政權으로 交替된 다음에 聯邦을 하겠다는 論理는 現存하는 相異한 制度間의 聯邦이 아니고 北의 制度는 保存하되 南의 制度는 變革시켜야 한다는 “남조선 혁명”의 論理와 大同小異하다.¹⁴⁾

1984年 1월에 北韓이 三者會談을 提議함으로써 南韓의 政府와 對話할 意思를 表示하였고 같은 해 가을부터 南北對話가 再開된 것은 上記한 論理가 默示的으로 修正되었을지도 모른다는 可能性을 提示한다. 그러나 北韓은 現存하는 南韓政權이 그대로 聯邦의 對象이 될 수 있다고 明示한 적은 한번도 없다.

둘째로, 만일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이 南北에 現存하는 政府가 聯合하는 것은 前提로 하고 있다고 假定하면, 聯邦政府가 과연 政策決定機能을 수행할 수 있을는지 의문시된다. 南北 같은 數의 代表로 구성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가 意思決定을 多數決로 한다면 南北間의 意見 不一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南北代表 以外에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도 이 두 기구의 代의원 또는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南北間의 의견대립시 決定權을 가진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南北協商에 依하여 그들은 兩分되는 勢力,

14) Ibid., pp.7-8.

즉 南北同等의 原則을 변경시키지 않는 勢力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의장과 위원장직을 南北間에 번갈아서 하는 운번제를 쓴다고 하지만 그것이 南北 어느쪽에 意思決定權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다.

세째로 聯邦下에서 南北韓의 군대를 통합하여 單一한 “民族聯合軍”을 조직한다는 것은 실현성이 희박하다. 연합정부의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條件下에서 “民族聯合軍”의 통일적 지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사실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인 軍隊가 統合된다면 그것은 制度的 統一도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네째로,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은 制度的 統一을 장기적인 目標로도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완전한 統一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意志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同案이 예상하는 모든 條件이 충족된다면 그것은 民族的 統一을 의미할 뿐 아니라 制度的 統一과도 근본적인 差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案은 現存하는 南韓政權이 受容하지 않으므로 實現性의 가장 기초적인 條件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南北 양쪽의 制度를 그대로 두고 聯邦制를 만든다는 것은 양쪽 執權層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한쪽의 意思를 무시하고 強制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聯邦制이므로 수정되지 않는 상태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은 南쪽의 權力構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實現性이 희박하다.

IV.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可能性과 限界性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比較分析의 客觀性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한민족공동체”案의 肯定的인 側面과 問題點도 각각 다섯가지 찾아 보려고 한다.

同案의 可能性 또는 肯定的인 側面으로 우선 그것의 現實的 接近方法을 들 수가 있다. 同案은 현실정하에서는 南北間에 統一政府를 수립하는 것이 不可能하다고 인정하고 “南北聯合”이라는 中間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둘째로 이 方案이 南北間의 理念과 體制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로 인한 南北間의 對立, 敵對構造를 극복해야 할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說得力이 있다.

세째로 “民族共同體”라는 개념은 思想, 理念, 體制를 초월하여 南北의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째로 統一 3原則의 재확인, 民族統一이 政治的 統合 보다 先行되어야 한다는 論理, 南北間에 “民族同質性 회복을 위한 交流, 協力과 병행하여 政治, 軍事問題도 협의 해결할”의도의 표시, “南北聯合”內의 모든 기구를 南北의 同等한 代表性에 기초하여 구성한다는 것 등은 北韓의 主張을 受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肯定的으로 평가된다.¹⁵⁾

다섯째로 “南北聯合”이 “1民族 2國家를 의미하는 國家聯合이 될 수는 없으며, 분단 상황하에서 완전한 統一 實現시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暫定的 關係라는 점에서 특수한 結合狀態”라고 規定한 것과 統一國家의 政策基調에서 民族

15)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pp.19, 26, 32-33.

成員 모두의 복리증진, 民族의 안정보장, 對外善隣友好關係 등을 明示한 것은 分斷의 영구화를 거부하며 統一後 政策面에서 南北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共通分母를 찾기 위한 意志의 반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¹⁶⁾

그러면 “한민족공동체”案의 限界性 또는 문제점으로 무엇을 지적할 수 있는가? 첫째로 이 案은 엄격한 의미에서 統一方案이라기 보다는 南北關係 정상화 방안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 “南北聯合”의 모든 機構가 조직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南北關係는 敵對關係로부터 善隣友好關係, 對決로부터 協力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南北關係가 두개의 獨立國家間의 관계를 방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南北聯合”의 전제조건인 南北對話에 의한 “民族共同體憲章” 채택, 그리고 각 機構의 설립, “常駐連絡代表”의 교환 등이 과거 南北對話의 경험과 현재의 南北關係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現實可能性이 있는지 의문시된다.

둘째로 이 方案이 統一3原則을 수용한 것은 肯定的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1970年代에 시도된 南北對話 과정에서 노출된 南北間의 견해차이 다시 말하면 3原則의 해석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努力이 결여되어 있다. “自主原則”은 北에서는 外勢排除, 따라서 南韓에서의 美軍撤收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南에서는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統一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것은 “既存 友邦國과의 선의의 協力關係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美軍撤收와 무관함을 默示的으로 主張하고 있다. 또한 “民族大團結”은 北에서는 思想의 差異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南韓에서 反共政策을 止場하는 것

16) Ibid., pp.25, 37.

을 필수조건으로 여기고 있으나 南에서는 “民族成員 개개인의 民主的 權利가 보장되고 責任이 수반되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民主原則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¹⁷⁾

셋째로 “南北聯合”의 諸 기구가 南北의 同一原則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은 南北間에 의견불일치로 인한 膠着狀態가 생길 가능성을 안고 있다. 다만, 남북 대화의 정규 채널(channel)이 유지 된다는 것 자체가 象徴的인 의의를 가질수 있고 문제에 따라서 南北間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可能性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네째로 “한민족공동체”案은 “두체제의 共存을 영구화할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는 中間段階 성격의 미완성형 統一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北韓의 肯定的인 반응을 사전에 배제한 것과 다름이 없다. 北韓의 立場을 受容한다고 하면서 北韓이 가장 중요시하는 聯邦案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近視眼的인 전술인지도 모른다. 실질적으로 “南北聯合”과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은 類似한 점이 있으므로 聯邦의 개념과 취지에 더욱 轉向的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¹⁸⁾

마지막으로 “한민족공동체”案이 구상하는 統一國家는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이며 統一國會의 上院은 “지역대표성”을 下院은 “국민대표성”(인구비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南에 의한 北의 吸收를 의미

17) Ibid., pp. 19-22.

18) Ibid., p.31.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北韓의 집권층이 수용할 수 있는 統一
國家像이 아니므로 그들의 拒否感을 강화시킬 수 밖에 없다. 南北對話와 協商
을 전제로 하는 統一方案이 한쪽에 현저하게 不利한 인상을 준다는 것은 現實
性を 極小化시키는 것이다.

V. 南北韓 統一方案의 類似性과 相異性

南北韓의 統一方案에서 共通分母 또는 類似性을 發見할 수 있다면 아래와 같다.

첫째, 두 案 모두 統一의 필요성, 나아가서는 必然性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두 案 모두 南北分斷狀態의 장기화로 인하여 南北間에 사상, 이념, 체제상의 차이가 커졌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셋째, 두 案 모두 南北間의 민족적 紐帶性을 강화하는 것이 政治的統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넷째, 두 案 모두 南北 同等의 原則을 무시한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섯째, 두 案 모두 통일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달성하여야 하며 統一國家는 국민전체의 복지, 민주주의 평화적 對外政策을 國是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反面 두 統一方案의 차이점은 심각하다. 이 중 다섯가지만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南韓은 “한민족공동체”의 회복, 발전을 위하여 “南北聯合”이라는 南北間의 平和共存, 多方面 協力, 信賴構築이 계속되는 中間段階를 설정하고 단일 통일국가는 最終段階에 수립한다는 漸進的 접근방법을 내놓고 있으나 北韓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南北이 “민족적통일”을 즉시 성취한다는 一括的 접근방법을 提示하고 있다.

둘째, 南의 궁극적 目標을 단일민족국가의 건설, 즉 “民族統一”을 바탕으로 한 “國家統一”이나 北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수립이 “民族的 統一”을 상징하며 制度的統一은 實現 不可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南北이 모두 統一 3 原則을 수용한다고 말하지만 그 原則의 의미를 해석하는데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南은 “自主原則”이 南韓의 미군주둔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北은 正反對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北은 “民族大團結”이 南의 反共政策의 포기를 전제로 한다고 主張하나 南은 그러한 論理를 거부하고 있다.

넷째, 北韓의 統一方案은 南韓의 政權交替와 美軍撤收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南韓의 統一方案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南北이 모두 南北同等原則(지역대표성)을 받아 들이나 南은 統一國家의 立法機關은 兩院制로 하되 그 중 하나는 人口比例原則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VI. 南北韓 統一方案의 折衷可能性

結論을 대신해서 많은 문제점과 상이성을 가지고 있는 南北韓의 統一方案을 折衷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南北關係가 잘 개선되지 않고 統一이 요원한 것은 方案의 결함 때문이 아니고 南北間의 相互不信과 敵對感情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南北이 서로 相對方의 正統性을 인정하지 않을 뿐아니라 상대방의 體制變革을 期待 또는 懲憑하는 상황에서 성의있는 對話, 協商 그리고 讓步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無理이다.

南北關係가 한쪽의 利得이 다른쪽의 損失로 인식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부터 양쪽이 다 利得을 볼 수 있다고 인식되는 베리어블섬 게임(variable-sum game) 또는 파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탈바꿈하지 않는 限 교착상태는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다.

相互不信을 해소하기 위한 南北의 接近方法은 대조적이다. 南은 작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자고 하면서 人道的問題 해결(이산가족 상봉), 經濟交流, 文化交流의 優先原則을 오래동안 고수해 왔다. 北은 軍士問題, 특히 군사적 대결부터 解決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1970年代에 南北對話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 “北과 南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軍事的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誤解와 不信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平和를 위협하는 근원”이라는 것이 北의 論理이다.¹⁹⁾ 다시 말하면 北은 軍事的對峙가 相互不信의 原因이라고 主張하는 반면에 南은 相互不信이 軍事的對峙의 原因

19)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p.20.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서는 이 相反되는 立場의 折衷을 위하여 모든 問題를 동시에 協商解決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것은 南北間의 차이가 절충될 수 있는 可能性을 조금이나마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큰 差異點은 南北의 分斷現實을 보는 視角이다. 北은 分斷現實을 否認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公式的으로 인정하는 어떠한 措置도 分斷을 영구화시키는 結果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유엔(UN) 同時加入, 交叉承認은 물론 “한민족공동체”案에서 구상하고 있는 “南北聯合”을 강력히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다.²⁰⁾

南은 分斷現實을 인정할 뿐아니라 分斷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먼저 南北關係를 정상화하고 다음 “한민족공동체”를 회복 강화하여 統一國家를 수립하자는 提案을 하고 있다. 따라서 統一以前의 과도기에서의 南北의 유엔 同時加入, 交叉承認이 결코 統一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段階를 거친 東西獨이 조만간 統一될 것이 확실해 진 것은 南의 論理를 뒷받침해 준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南韓이 北韓의 거부감을 부채질해 주면서 유엔의 單獨加入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특히 中國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서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는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유엔加入 추구는 得보다 損이 더 많은 行爲일지도 모른다.

20)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비현실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통보, 제81호(1989년 1월), pp.7-11.

分斷現實을 明示的이든 또는 默示的으로는 인정하는 것이 南北의 共通된 立場이므로 “南北聯合”을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테두리 안에서 實現하는 方向으로 折衷해 보는 것은 理論的으로 可能한 代案의 하나이다.

이미 몇번 강조한 바와 같이 南北統一이 안된 것은 方案의 不在 또는 缺陷 때문이 아니고 南北間의 相互不信과 양쪽 집권층의 利害가 根本的으로 對立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양쪽 집권층이 그들의 權力的 減소를 포함한 最大의 양보를 할 각오를 가지고 상대방의 提案을 最大限으로 受容한다면 統一은 實現될 수 있다. 반면에 상대방이 提案하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고 底意를 의심하는 態度를 바꾸지 않는 한 統一方案의 結晶은 不可能하며 統一은 말할 것도 없고 南北關係의 개선도 요원한다.

最近 蘇聯, 東 유럽, 몽골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는 外部環境의 급격한 變化가 執權者들의 思考와 政策을 變化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自意이든 他意이든 集權자들이 “新思考”를 가지게 될 때에 韓半島에도 統一의 曙光이 비치게 될 것이라는 期待를 해볼 수 있다.

第2分科 한민족공동체 形成의 實踐的 課題

5. 한민족공동체의 實現方案

申 正 鉉(慶熙大)

目 次

I. 序 論	99
II.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特徵	104
III. 「南北聯合」의 構造와 機能	108
(1) 「南北聯合」의 意義	108
(2) 「南北聯合」의 組織과 役割	110
IV. 「南北聯合」의 實現方案	114
(1) 一方的 水準	114
(2) 雙務的 水準	117
(3) 多邊的 水準	121
V. 結 論	123

I. 序 論

이제 1995년이 되면 우리 民族은 분단 반세기를 맞게 된다. 過去 수천년동안 지속되어 온 동질적인 民族歷史에 비해 보면 분단 반세기는 時間的으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우리 민족은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分斷의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서울과 평양에 각기 수립된 政權들은 이념이나 체제상 결코 兩立하기 힘든 질적으로 상이한 國家秩序를 형성하게 되었고 급기야 1950년에는 쌍방간에 戰爭을 일으키게 되었다. 3년간 계속된 韓國戰爭은 동서냉전의 국제적 갈등과 連繫되어 우리 민족에게 과도한 희생을 가져다 주었으며 民族內의 불신과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戰爭이 休戰으로 중지된 이후에도 南北韓은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對峙狀態를 지속해 왔으며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첨예하게 분리, 대립된 分斷體制를 형성해왔다.

分斷體制가 같은 역사와 문화 및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民族의 同質性을 크게 약화시켜 왔음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軍備競爭을 촉진시켜온 결과 민족 전체의 生存까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비록 戰後에 형성된 대립적 東西兩極체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南北對決構造는 여전히 그 긴장의 정도를 이완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統一에 대한 민족적 염원은 역사적, 당위적 차원에서 增大되고 있지만 그의 실현은 오히려 現實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분단 이후 이를 극복하고 統一國家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

니다. 南北韓이 각기 자신의 입장에 의거해서 상당수의 統一方案들을 제시해 왔지만 그 어느 것도 이유야 어떠하든 기대했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內外的 條件들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통일방안들이 제기되고 또 그들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民族史的 요구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方案들은 통일의 강력한 民族的 意志를 결집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그들의 實踐的 過程이 체계적으로 摸索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第6共和國 政府가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주목해 볼 만하다. 이 방안은 한국의 盧泰愚 大統領이 1989년 9월 11일에 국회에서 행한 特別演說을 통해 발표되었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새로운 통일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1970년대 이후 한국정부가 취해온 통일 정책의 基本論理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멀리는 평화통일원칙을 명시한 「7·4南北共同聲明」(1972)에서부터 북한을 사실상의 國家實體로 인정한 「6·23宣言」(1973), 민족전체의 화합을 강조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1982), 그리고 가까이는 북한을 민족 공동체 형성의 同伴者로 규정한 「7·7特別宣言」(1988)등이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背景의 요소들이다. 물론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나 실천 과정의 전제 그리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등에 있어 앞에서 열거된 통일방안들과 다른 特性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공동체 통일방안은 그의 提案背景과 관련해서 새로운 측면들을 강조

하고 있다.¹⁾무엇보다도 이 통일방안은 새로운 國際環境의 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東西和解體制의 등장은 남북한 통일을 접근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環境的變數로 인식되고 있다. 美·蘇間의 신데탕트 형성과 세계전역에 걸친 軍縮의 움직임, 국가들간의 경제, 사회적 相互依在性의 증대 그리고 중국,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改革과 開放등은 분명히 한반도 통일접근을 위한 새로운 環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韓半島 內外에서 형성되어 온 대립적인 군사, 전략체계는 물론 남북한 간의 葛藤構造의 기반을 변화시킬 것임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로서 東西對決의 종식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體制 改革의 물결속에서 한국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北方政策」은 남북한 통일환경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國際環境의 변화속에서 근본적으로 冷戰의 산물인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接近方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속에서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共同體 統一方案은 또한 한국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變化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은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룩해왔으며 그 결과 한국사회가 對內外的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먼저 한국사회의 國際化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와 1989년의 「한민족 체육대회」등이 그 대표적인 實例들이다. 이들을 통해

1) 이에 대해서는 이흥구,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초와 실천방향, 국토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pp.9-32 참조

우리 民族은 민족적 일체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統一을 위한 잠재적 기반의 형성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韓國社會는 내부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統一接近에 대한 증대된 국민적 關心과 參與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동안 權威主義 체제속에서 통일문제는 정권의 專有物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國民들의 자유로운 논의나 의사표시는 엄격히 규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民主化 過程은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평등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統一論議의 開放化를 가능케 했다. 이 과정에서 韓國社會의 각 계층들이나 세력들은 과거의 統一政策이나 方案들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批判的 견해를 제시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統一運動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統一論議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그의 실현을 위한 운동이 組織化되는 상황에서 第6共和國 政府가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제시한 것은 어느 정도 한국사회 내부의 時代的 要求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한국 정부의 새 統一方案이 아무리 시대성을 반영하고 또 내용상 論理的 體系를 갖추고 있다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의 實踐性 여부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分斷 이후 다수의 통일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 어느 것도 통일에의 接近을 현실화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은 어떠한 방안이든 그의 實踐可能性의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例示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여하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몇가지 問題點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核心的 요소로 제시된 「南北聯合」(The Korean Commonwealth)의 실현을 위한 政治的·制度的 方案들을 모색하는데 이 논문은 重點을 두고있다. 이런 목적으로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特徵들을 살펴 보고 이와 연관해서 南北聯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어 필자는 分析의 편의상 세가지 水準들을 설정하여 각 수준에서 적절한 방안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세가지 수준들이란 1) 一方的(Unilateral), 2) 雙務的(Bilateral), 그리고 3) 多邊的(Multi-lateral)인 수준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一方的 水準은 한국내에서, 雙務的 水準은 남북한 관계에서, 그리고 多邊的 水準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체계의 구성 국가들간의 포괄적인 相互作用(interactions)속에서 각기 南北聯合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措置들이나 方案들을 검토, 분석해 보는 것이다.

Ⅱ.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特徵

과거에 韓國政府가 내놓은 통일방안들과 비교해 볼 때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이 그 基本原則이나 內容構成 및 추구하는 目標面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觀點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로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은 統一國家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民族共同體 또는 民族社會의 再形成 및 發展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韓國政府의 統一方案에서 民族概念이 중심적인 요소로 제기된 것은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이 처음이 아니다. 통일을 위한 基礎的 概念으로 민족이 강조된 것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領土的·政治的 分斷으로 인해 민족내부의 分裂과 異質性을 극복하여 민족의 再結合을 실현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도가 內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에서는 北韓이라는 지역에도 같은 민족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政治的 實體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北韓을 “民族共同體의 一員”으로 포용하여 민족의 共榮을 추구함으로써 통일된 近代 民族國家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基本 命題가 내재해 있다. 西歐 역사에서 보면, 민족국가의 형성에서는 民族(Nation)과 국가(State)가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반드시 一致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다.

概念上 민족은 주로 심리적,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반해 國家는 정치적, 법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民族과 國家는 각기 독립된

것으로 존재할 수도 있었다. 즉 國家 없는 민족의 존재가 가능했던 반면 民族 없는 국가도 존재할 수 있었다. 결국 두 개념이 일치하게 된 것은 近代 民族國家의 形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 민족국가 형성에서 두 概念들은 반드시 동시적으로 결합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獨逸의 경우 민족의 식이나 동질적 문화의식이 國家出現에 앞서 형성된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君主國家가 民族意識의 형성에 앞서 출현하였다.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들은 국가가 민족을 창조해 나가는 경향을 띠었다.²⁾ 韓國과 같은 分斷國에 있어서는 서구 근대 민족국가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들이 똑같은 의미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은 민족사회(혹은 공동체)의 再創造나 民族共榮體를 형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분단된 남북한을 하나의 民族國家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한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성원들이 分斷 이전에 하나의 政治體制下에서 살아 왔고 또 높은 수준의 민족적, 문화적 同質性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民族共榮의 추진과 공동체의 재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은 그 基本方向에서 우리 民族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함께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은 北韓에 대한 인식에 있어 큰 變化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分斷이래 한국에 있어 북한은 敵對的, 競爭的 혹은 공존적 대상으로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통일방안에서는 북한이 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一員으로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즉 북한은 민족

2) Reo Michristenson and Others, *Idelologies and Modern Politics*, 3rd Edition, (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1981), pp.21-22.

의 일부로 구성된 정치적 실체로서 相互信賴와 和解 및 協力を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民族共同體 形成의 「同伴者」로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

北韓에 대한 인식의 轉換은 第6共和國 政府가 발표한 「7·7특별선언」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선언은 북한을 敵對關係에서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몇개의 獨立된 國家로서 상반관계를 규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統一國家가 실현될 수 있을 때까지 暫定的인 조치로서 민족 공동체내의 複數關係로 한정시킨 것이다. 이는 결국 남북한에 1民族 2體制가 존재하고 있다는 基本原則에서 分단국 특유의 二元的關係를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은 그러한 원칙하에 統一國家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을 1대1의 同等性原則을 적용할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 원칙은 한국이 북한을 동등한 協商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나 또는 「南北聯合」의 구성에 있어 北韓의 대표성을 南韓의 그것과 똑같이 설정한 것에서 잘 나타났다. 南北韓 代表性的 원칙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平和的 共存의 수용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쌍방 어느 한쪽도 唯一代表權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 숨궴되어 있다.

세째로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은 南北韓이 완전한 統一國家를 수립하기까지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中間段階」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통일방안과 다른 特徵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들은 대부분 結果로서의 통일만을 강조했을 뿐 그러한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關心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分斷의 시발이나

분단 후 南北韓 關係를 고려해 볼 때 統一에 이르는 과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통일방안은 너무 分斷現實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南北韓 統一이 그렇게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목표로서만 看做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북한이 분단 이후 쌍방간에 형성해 놓은 不信과 對立體制를 극복하거나 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共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統一을 달성한다는 것은 非現實的이다.

또한 分斷에서부터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中間段階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북한이 協商過程을 통해 상이한 이익과 입장을 調整하고 管理해 나갈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은 통일을 지향하는 中間段階에서 남북한간의 상호 협력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 統一基盤을 조성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過渡的 統一體制로서 「南北聯合」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民族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된 統一媒介體인 것이다. 그러나 南北聯合은 성격상 독립된 두 개 國家들간의 관계가 아니라 民族內部에서의 분단된 두 政治的實體들 간의 特殊關係를 형성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궁극적으로 統一國家를 실현하는 中間段階로서의 性格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民族分斷의 固定化」라는 의미는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세 가지 側面들에서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이 갖고 있는 特徵들이 검토되었다. 결국 이 統一方案은 남북한간의 통일과정을 統合(Integration) 개념으로 연계시키면서 그러한 통일과정으로 실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南北聯合의 개념을 具體化하고 있는데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이 있다고 보겠다.

Ⅲ. 『南北聯合』의 構造와 機能

(1) 『南北聯合』의 意義

南北聯合은 매우 독특한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統一國家를 실현하는 最終形態가 아니고 남북한간 상호 협력과 교류 및 공동번영을 통해 통일 기반으로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過渡的 統一過程 推進體로서 잠정적 성격을 갖고 있다. 南北聯合은 남한과 북한이 현존 政治體制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聯合形式으로 조직됨으로써 독립된 國家間的 관계가 아닌 民族 內部的 특수한 관계로 형성되고 그에 相應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개념상 南北聯合은 국제법이나 국제정치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온 國家聯合(Confederation)이나 聯邦制(Federation)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남북연합이 英文으로 The Korean Commonwealth로 表記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본래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와 여타 17世紀 理論家들이 논의해 온 바에 의하면 Commonwealth라는 用語는 어떤 사회질서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복리나 사회적 복지를 집단적으로 추구하려는 데 利害關係를 다 함께 갖고 있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러한 社會福祉의 추구에 따라 정치에 대한 必要性이 결정되며 나아가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法과 制度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결국 Commonwealth개념은 初期段階에서 구성원들(혹은 구성국가들)이 共通的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利害關係가 있을 때 조직되는 結合體를 의미했으며 이 때

구성원들 상호간에는 特殊한 關係가 형성,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했다.³⁾ 이런 의미에서 南北聯合이 Commonwealth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英聯合(The British Commonwealth)과 類似性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분단국인 남북한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특수한 결합형태라는 점에서 상이성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英聯合은 구성국가들이 英國 國王을 결합의 상징으로 하면서 同等한 地位와 기능수행을 기초로 결합된 自治的 共同體인 것이다. 영 연합의 구성국가들은 상호관계에서 同等한 地位를 가지면서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獨立國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그들은 相互間에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특히 경제적으로 共同利益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目的을 두고 있다.

한편 國家聯合이나 聯邦制는 그 구성 정치 단위들에게 어느 정도의 自律的인 권위와 권한을 賦與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나의 統治體(혹은 결합체)를 구성하여 대내외적으로 主權國家로서 권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물론 前者의 경우에서 後者の 경우보다 構成政治單位들의 독자적인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강력한 中央政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構成單位들에게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概念上 聯邦制이고 이에 대해 통일된 中央政府가 전국가 수준에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의 기능 수행이 國家體制外 구성단위들의 同意나 合意에 의존하게 될 때 이런 형태의 정부를 國家聯合이라고 규정한다.

3) Roger Scruton, A Dictionary of political thought(London : the Macmillan Press, 1982), p. 79.

南北聯合은 어떤 형태로든 통일된 中央政府나 國家體制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分斷의措置로서 그 存在意義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의 통일된 政治體制나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신 南北聯合體制下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지금까지 각기 대외적으로 유지해 온 독립된 國家體制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쌍방간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國家間의 關係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特殊한 關係로서 統一指向的 統合過程을 공통적으로 추진해나가게 된다. 결국 南北韓 統一過程을 제도화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남북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南北聯合은 그 性格이나 概念定義에 있어 매우 난해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개념이 國家聯合이나 聯邦制와도 다르며 또한 英聯合과 類似性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이한 면을 갖고 있다. 또한 南北聯合은 통일의 最終段階로서 북한이 내세우는 「高麗民主聯邦制」와 달리 ‘완전한 統一國家로 가는 過渡的 統一體制’로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南北聯合의 概念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統一問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南北韓協商過程에서 좀 더 具體化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南北聯合』의 組織과 役割

韓國政府가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에 의하면 南北聯合의 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南北頂上會議에서 채택한 민족 공동체 현장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체 統一方案에서 한국정부는 南北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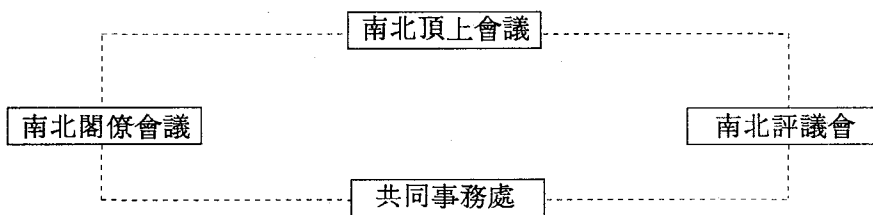
숨이 갖추어야 할 기구들과 이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제시했다.

우선 統一民族國家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이끌어갈 中間段階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南北聯合은 쌍방 존재에 대한 현실인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남북한 共同繁榮을 추구하고 나아가 民族社會의 동질성과 통합을 촉진해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남북연합이 民族共同體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遂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南北聯合은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몇가지 機構들의 設置를 제시하고 또 이들이 수행해야 할 役割들을 열거하였다.

첫째로 南北聯合은 「南北頂上會議」를 두고 있다. 이 회의는 南北韓頂上으로 구성되며 最高 決定機構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共同體 統一方案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南北頂上會議에서 민족공동체헌장을 採擇하도록 되어 있다.

<表1> 南北聯合機構



둘째로 南北聯合은 쌍방 政府代表들로 구성되는 「南北 閣僚會議」를 설치 운영한다. 이 기구는 南北聯合體制下에서 일종의 執行機構의 성격과 기능을 가진다. 南北閣僚會議는 남북한의 總理가 공동의장이 되며 남북한 쌍방에서 각기 10餘名 내외의 閣僚級委員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會議안에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등 제분야에 걸쳐 常任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한다. 南北閣僚會議은 주로 南北韓의 重要한 問題들과 民族問題를 협의, 조정하며 그의 구체적인 집행을 각 常任委員會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南北閣僚會議은 1) 離散家族 재결합, 2) 政治的 對決狀態의 완화와 民族的 이익의 共同伸張, 3) 南北韓社會의 開放과 다각적인 交流, 交易, 協力の 추진, 4) 民族文化의 창달과 共同繁榮의 經濟圈形成, 5) 軍事的 信賴構築과 軍備統制, 6) 現 休戰協定體制의 평화체제로의 代替등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세째로 南北聯合은 南北評議會를 설치, 운영한다. 南北評議會는 남북연합체제에서 일종의 代議機構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評議會는 100名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南北國會議員으로 구성된다. 南北評議會는 남북각료회의에 대해 諮問하고 統一國家의 수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重點을 두고 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統一憲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憲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남북한이 각기 構想해서 제안한 초안을 토대로 民主的方法과 節次를 거쳐 單一案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네째로 南北聯合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決定된 事項들을 집행하는 實務的 役割을 담당하는 共同 事務處를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서울과 平壤에 각기 常駐 連絡代表部를 마련하여 쌍방 政府間의 필요한 連絡業務를 맡도록 하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은 共同事務處를 포함한 南北聯合의 기구나 시설을 非武裝地帶안에 평화지역을 설치하여 운영해 나갈 것을 提示하고 있다.(그러한 평화지역을 統一平和市로 발전시켜 나갈 것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기술된 南北聯合의 조직과 역할은 매우 개괄적이고 총체적인 면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더 세부적인 組織構成과 運營 및 施行에 관해서는 남북한이 聯合體制의 형성에 합의한 이후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북연합은 南北頂上會議에서부터 協議制나 委員會制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그러한 協議制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관해 남북한이 합의를 보는 일이다. 南北聯合의 조직 구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具體的인 原則이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南北韓이 합의를 볼 수 있을 때 남북연합은 統一民族國家를 실현하기 위한 過渡的體制로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南北聯合의 조직체계에 있어서는 機能別 專門性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南北評議會안에도 각 분야별로 分科委員會를 두어 南北韓 代表들이 접촉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機能 遂行上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分野別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全體的으로 민족 공동체의 回復이나 發展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IV. 『南北聯合』의 實現方案

南北聯合案이 비교적 獨創性을 갖고 있으며 또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南北韓 雙方이 그의 성격이나 내용을 수용하고 적용하려는데 見解를 같이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이 방안에 대한 北韓의 반응은 否定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이 방안이 南北分斷을 永久化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政府가 남북연합을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中間段階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聯合案이 실현되는데 필요한 몇가지 방안이나 措置들을 모색해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3가지 水準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표2〉) 그러한 방안이나 조치들은 오히려 南北聯合 실현이전 단계에서 취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어느 의미에서 그들은 統一國家 實現을 위한 또 다른 中間段階에서 모색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一方的水準(Unilateral Level)

이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韓國自體가 남북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주어지게 된다. 물론 北韓도 개별적으로 어떤 조치나 方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論外로 해야할 것이다.

〈表 2〉

南北聯合의 實現方案

水 準	內 容
一 方 的 水 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적 이미지의 제거 * 법적, 제도적 장치의 재조정 * 연합추진위원회 구성
雙 務 的 水 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와 교류의 확대 * 안전공동체의 확보 * 경제공동체의 실현
多 邊 的 水 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지역체계의 안전과 화해 유지 *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회의」 개최 * 공동 경제협력체의 구성

우선 南北聯合體制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내에서의 對北韓 認識體系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個人的으로나 集團的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북한은 敵對的, 對決的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남아 있다. 물론 이것은 남북한간의 戰爭이나 계속된 對峙關係때문에 쉽게 완화내지 이완되기는 힘들지만 南北聯合體制를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냉전적 인식체계는 결코 순기능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7·7特別宣言」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북한을 民族共同體形成을 위한 同伴者로 적극 포용하고 相互適應하는 인식과 태도가 普遍化될 수 있을 때 적어도 한국의 입장에서 南北聯合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北韓의 상응하는 태도나 행동이 前提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韓國內에서 그와 같은 북한에 대한 敵對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일이 先行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한국내에서 남북한 對決構造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던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를 再調整하거나 廢止하는 것이다. 國家의 대내외적 安全維持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必要하겠지만 남북한간의 對決意識이나 構造를 경화시키는 것들은 남북연합을 추진하는 목표와 관련해서 볼 때 全面的으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韓國內에서 남북연합에 대한 이해와 合意를 조성시키기 위해 「南北聯合推進協議會」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의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은 北韓만을 유일한 상대로 전제하면서 추진될 수는 없다. 오히려 統一方案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韓國社會內에서 그에 대한 合意와 支持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韓國社會는 산업화 과정을 걸어오면서 구조적문화와 정치적 多元化를 이룩해왔으며 어느 정도 계층적, 계급적 갈등구조를 표면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統一方案이나 정책이 정부에 의한 一方的發表나 宣稱만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非現實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르러 한국사회에서 統一問題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크게 兩極化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自由民主主義의 테두리내에서 韓國의 主導下에 통일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統一推進은 사실상 反統一主義에 불과한 것이라고 부정하면서 자

주와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民衆 主導의 통일실현을 주장하는 소위 民衆統一論이 대두되고 있다. 統一方向이나 方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한국사회내에서의 對立과 分裂은 한국정부가 제시한 統一方案의 실현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내에서 南北聯合을 통한 統一國家의 실현에 目標를 둔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韓國社會內에서 그러한 方案에 대한 國民的合意圈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서 超黨派的機構로서 「南北聯合推進委員會」의 구성은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

(2) 雙務的水準(Bilateral Level)

南北韓 統一方案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간의 相互關係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雙務的水準이란 바로 남북한 相互關係를 뜻한다. 이 수준에서 남북연합을 실현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우선 雙方間에는 정치, 경제, 사회, 인도 등 諸分野에 걸쳐 協商과 接觸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들이 기대했던대로 成果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相對方의 입장을 確認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南北聯合을 실현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南北對話인 것이다. 대화를 통해 남북한이 聯合體制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必要性을 다같이 인식하게 될 때 그의 실현은 가능케 된다. 이런 점에서 南北對話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南北對話가 계속 이루어질 때 그것은 相對方의 存在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더 진전될 경우 相互信賴를 구축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對話를 통해 남북한간에 공식적, 비공식적 接觸과 交流가 增大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對話通路는 가능한한 多元化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對話는 남북연합의 실현에 效果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연합이 實現되는데는 적어도 두 가지 條件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相互利益의 追求이다. 前者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남북한간의 「安全共同體」(The Security Community)의 구현이다.⁴⁾安全共同體는 구성원들이 각기 법적인 獨立性을 보장받으면서 서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현안의 爭點들을 平和的方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南北韓 安全共同體에서는 쌍방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周邊 國際環境으로부터 南韓과 北韓의 정치적 실체가 각기 물리적으로 그의 安全을 위협받지 않는 어떤 保障裝置가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의 對外的 安全이 동시에 保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雙務的水準에서 남북한 안전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必要한 조치들을 취하는

4) 이 개념은 본래 칼 도이취와 그의 연구진들이 북태평양지역에 있는 국가들간의 통합(Integration)과정을 연구하는데 적용된 개념이었다. 이들은 안전공동체를 통합되어지는 사람들의 한 집단으로 규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가치의 양립성, 구성 정치 단위들의 목적에 의존치 않는 상호 적응 능력 그리고 구성원들의 형태에 대한 상호 예측성 등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남북한이 특수한 민족 내부의 두 정치적 실체들간의 관계에서 개별적 혹은 쌍무적으로 상호안전체제를 확보해 나가는 일련의 적응과정을 의미한다. 칼 도이취의 「안전공동체」개념에 관해서는 Karl Deutsch and Others,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참조.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政治的, 軍事的 측면에서 많은 수단들이 강구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政治勢力들간의 接觸과 交流를 통한 상호이해와 신뢰의 구축 그리고 쌍방 軍事力의 적절한 관리 및 통제등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물론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 相對方의 存在를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共存措置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南北韓 安全共同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대화와 교류가 행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南北韓 頂上會談」의 개최나 「高位政治軍事會談」의 개최 등은 그러한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韓半島에 과밀하게 밀집화되어 있는 軍事力을 통제하고 제한하며 또한 축소하는 措置들도 강구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간의 軍備統制措置가 취해질 수 있도록 상방간의 合意導出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남북한간의 軍事指導者들의 정규적인 접촉이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나아가 그리고 「南北韓軍縮委員會」같은 기구가 구성,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制度的인 面에서 南北韓 安全共同體는 현존 休戰協定 體制를 平和體制로 轉化시키거나 상방간 不可侵協定을 締結하게 될 때 더욱 분명하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安全共同體를 위한 조치들이 너무 急進的으로 추진되거나 요구될 때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共同體의 維持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남북한간의 깊은 不信과 軍事的 對決狀態의 지속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韓 安全共同體는 점진적으로 상호신뢰의 정도를 蓄積해 나가는 方向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출발점은 南北韓 어느 쪽도 統一을 위해 무력이나 革命的手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취하는 것

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相互利益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南北韓이 「經濟共同體」를 이룩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토마스 홉스가 말한 바와 같이 共同으로 보전하거나 추구할 수 있는 集團的 利益이 존재할 때 聯合體(Commonwealth)가 형성될 수 있다고 前提할 때 남북연합의 경우도 쌍방이 다같이 共同으로 利益을 볼 수 있는 領域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의 실현은 가능케 된다. 이런점에서 남북한 經濟共同體의 형성은 남북연합의 실현을 促進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공동체 형성에는 남북한간의 經濟的 相互補完性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한이 축적해 온 先進技術 및 管理能力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資源과 原料들이 상호 교류됨으로써 남북한은 經濟的 共同利益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이 점차 확대될 경우 공동번영을 가능케 하는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확고한 기반을 갖게될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韓國政府는 북한의 對外經濟開放을 촉진시키거나 참여하려는 政策을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韓國 經濟界의 자발적인 對北韓 投資나 經濟交流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南北韓 雙務的水準에서는 쌍방이 아직도 역사, 문화 및 언어 등에 있어 共通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에서 共同活動(합작)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시도들이 확대될 경우 남북한간의 民族共同體 形成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사실상 南北韓間에는 비록 理念的, 政治的 대립이 지속되고 있지만 같은 문화, 전통을 유지해 온 긴 歷史를 갖고 있기 때문에 民族共同體의 형성을 위한 潛在力은 충분히 共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남

북한이 共通的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領域들에서부터 相互接觸과 交流가 구체적으로 促進되어야 할 것이다.

(3) 多邊的水準(Multilateral Level)

南北聯合을 실현시키기 위한 措置들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南北韓間의 關係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韓半島와 그 周邊 東北亞地域 體系間의 關係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南北韓 統一問題는 민족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의 接近過程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體系間의 關係나 동북아지역 體系自體의 변화 등은 주요한 變數들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만큼 南北韓關係의 변화나 통일과정의 추진이 東北亞地域 體系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그 反對現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東北亞地域 體系는 남북연합의 실현을 위한 外的 環境要素가 되고 있는 것이다.

南北韓間의 聯合體制가 형성되는데는 東北亞地域 體系가 안정되고 和解構造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남북한 關係에서도 대결구조가 완화될 수 있고 平和的方法에 의한 통일접근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東北亞地域 體系가 안정과 平和를 실현하게 될 때 南北韓과 4大強國들간의 關係에서 相互存在性이 증대될 수 있고 그런 關係에서 個別國家들은 실리적인 측면에서 國家利益을 추구하는데 정책적 우선권을 들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러한 地球體系속에서 남한의 對北方關係가, 그리고 북한의 對南方關係가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남북한간의 安全 및 經濟共同體

形成은 동북아지역 체계와 밀접히 연관된다. 이미 南北韓의 軍事·戰略問題는 동북아 지역의 軍事·戰略體系와 連繫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安全共同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은 東北亞地域의 세력관계를 무시하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또 그러한 勢力關係를 전적으로 도외시키고 南北韓 安全共同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다는 것도 想像하기 힘들다. 남북연합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이런 공동체는 동북아지역 체계의 安定과 和解 및 協力構造속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韓半島 問題解決을 위한 「多者間 會議」나 「東北亞平和協議會」의 개최 등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의 軍縮을 위한 雙務的 혹은 多國間 協商도 남북연합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外的 環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東北亞地域에 위치한 社會主義 國家들이 대내적으로 經濟發展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經濟開放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地域 國家들 간의 경제 협력이나 교류도 점차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들간의 경제적 相互交流가 증대되면 될수록 그들간의 政治的·軍事的 關係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地域에서 국가들간의 경제적 交流가 확대되고 다원화될 경우 個別國家들과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의 經濟協力體 같은 「多國間 共同協力體制」를 형성시키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地域에서 어떤 형태로든 經濟共同體 形式의 집단적 협력체가 형성될 경우 그것은 불가피하게 北韓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南北韓經濟共同體를 활성화시키는데 貢獻하게 될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南北聯合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 실현을 위한 몇가지 方案들이 검토되었다. 비록 분석의 便宜上 세가지 水準들에서 그러한 방안들이 檢討되었지만 분석수준의 구분은 필요한 방안들이 段階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同時的 혹은 交叉的으로 모색되고 또 적용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實際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南北韓 雙方關係에서 安全共同體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경우 그것은 일방적 수준에서 제기된 南北韓間의 적대 이미지를 제거하는데 肯定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多邊的 水準에서 東北亞 地域體系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多國間 軍縮協商이나 平和會議가 개최될 경우에도 그 효과는 一方的 水準에서의 信賴回復이나 雙務的 水準에서의 南北韓安全 및 經濟共同體까지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南北韓이 실현가능한 것에서부터 聯合體制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나 방안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만약 南北韓이 軍事的 側面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관해 一方的 혹은 雙務的 水準에서 어떤 措置를 취해나갈 것에 合意할 수 있다면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聯合體制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그러한 방향에서 어떤 進展을 볼 수 있도록 相互適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南北聯合을 실현하는데는 무엇보다도 雙方이 그러한 연합체제를 구성하는데 利害關係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統合의 상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마치 英聯合에 있어 英國國王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처럼 結合 혹은 統攝의 상징이 필요하다. 그러나 南北聯合의 경우 그와 같은 象徴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을 실현하는데는 새로이 統攝의 상징을 창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연합의 명칭을 공히 受容할 수 있는 방향에서 새로이 정한다든지 혹은 南北頂上會談에서 채택될 「民族共同體憲章」에서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統攝의 象徴이외에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聯合形成에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共同利益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개발해나가는 할 것이다. 南北聯合 자체가 民族共榮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한 共榮體制를 특별히 經濟的側面에서 어떻게 수립해 나가느냐에 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韓國이 北韓과 직접 經濟交流나 協力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시베리아나 滿洲地域의 개발에 北韓과 함께 共同으로 참여하는 방안들이 摸索될 수 있다. 결국 南北聯合은 쌍방간의 協商을 통해 실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體制構成이나 役割定立의 문제에 관해서는 韓國이 彈力性있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必要하다고 보겠다.

6. 한민족공동체 形成의 基盤造成

朴 漢 植(조지아大)

目 次

I. 序 文	127
II. 民族共同體의 前提	130
III. 不一致의 類型	133
IV. 平和 創造와 共同體建設	138
V. 共同體建設의 準備	141

I. 序 文

그동안 수많은 學者的 努力이 南北關係에 기울어져 왔음에도 그 주요 論爭의 잇슈나 假說의 形成 또는 具體的 計劃을 엄밀히 評價해 보면 이들의 대부분이 단지 推定단계에 지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이들 “學者的” 努力들은 韓半島의 交錯狀態를 打開하는데에 별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筆者는 이러한 學者的 努力의 限界가 다음 세가지 사실에 緣由되는 것이라고 본다.

첫째는 政治制度의 人格化이다. 南北韓문제에 관한 종래의 研究들은 南韓과 北韓은 各各 人格性을 소유하고 內在的 目標을 갖고 行動하는 實體로 파악하여 各 政體를 人格化시키는 경향을 보여왔다. 다시말하면, 이들 연구들은 南北韓 各各의 政體들을 具體的으로 一貫性있게 機能하는 單位들로 並列시킴으로써, 그 연구의 軸점을 南北韓 相互關係에만 두어왔던 것이다. 하나의 民族 “共同體”를 各 政體를 支配하는 단일하고 일사불란한 實體로 파악하는 것은 비단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非生産的인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방식으로 종래의 研究들은 사실상 二人게임을 위한 시나리오를 엮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 게임은 政治現實보다는 일정한 實驗的 規則을 따르는데 치중하기가 쉬웠다.

둘째, 漸增主義(incrementalism)의 缺如는 學者的 活動을 現實에 관련되게 하고 기능토록 하는데에 逆機能的으로 作用하였다. 그리하여 이 分野에 있어서의 學者的 努力은 대체로 南北韓 兩 體制가 어떻게 行動해야 하는가에 대한

規範的 處方이나 道德的 當爲에 머물러 있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종래의 연구들을 目標實現을 위한 具體的 方法에 대한 言及이 없이 일의 바람직한 상태를 묘사하는데에 그치고 마는 일이 너무 許多하였다.

세제, 學者들 스스로가 體制的 偏見에 의하여 制限되거나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쉬웠다. 規範的 選好나 이데올로기적인 偏見은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런 사항들이 願하는 結論을 유도하는 指導的 原理로서 使用되기 보다는 學問的 研究의 結果가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本稿는 보다 具體的인 提議와 措置들이 意味를 갖는데 필요한 “環境”을 造成할 수 있도록 方案을 먼저 講究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 최근 한국정부에 의해 公表된 구체적 政策들은 民族共同體의 理想과 符合하는 方向으로 새로운 정책 定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示唆해 준다.¹⁾ 따라서 이미 제안된 具體的措置 이상의 새로운 것들을 考案해 내려는 시도는 徒勞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진정한 課題는 그러한 措置들이 실질적인 結果를 가져올 수 있도록 效率的이고 實行可能토록 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課題는 과연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안고 있는데 특히 이는 北韓이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外交政策의 主要한 變化를 시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 제안된 具體的 措置들이 民族共同體의 久遠한 理想을 實現하기위한 社會的·文化的 環境을 造成하려는 努力에 의해 수반된다면 더욱 效果的일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端

1) 今年 4月 29日 韓國政府는 南北韓交流를 中進시키기 위한 包括的인 政策措置들을 樹立하였는데 이에는 離散家族의 再結合의 兪슈를 비롯 教育·經濟·스포츠·環境·에너지·交通 그리고 科學技術등의 各方面의 兪슈가 포함되어 있다.

的으로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北韓側의 反應에 關係없이 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南韓 나름대로의 獨自의인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本稿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相互關聯된 問題들을 提起 하고자 한다. : (1) 民族共同體의 基本的 前提는 무엇인가? 이 問題에 대한 大 답은 우리에게 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해 필요한 “準備”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 줄 것이다; (2) 南北間 相互不一致의 性格은 무엇인가? 體制間의 긴장을 完化시키려는 노력들은 緊張 그 자체의 分明한 認識에 의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이미 提議되고 있는 民族共同體의 目的은 무엇인가? 우리는 共同 體의 發展과정을 貫流하는 共同의 目的意識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그렇다 면 北韓의 協力에 關係없이 南韓側의 立場에서 어떠한 具體的 措置들이 취해 져야 할 것인가? 위에서 論議된 것처럼, 民族共同體의 形成은 두 體制間의 政 治的 關係를 넘어서는 包括的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만큼 民族共同體 에 대한 第6共和國의 概念은 종래에 있어왔던 提案들과는 달리 各 體制內部 로부터 起源하는 漸增的過程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I. 民族共同體의 前提

그동안 남북한 兩側 특히 南韓으로부터 다양한 政策提案들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民族再統一의 課題를 政治的으로 解決하려는 目的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南北問題解決을 위한 수많은 提案, 宣傳 그리고 판문점 “會談”에도 불구하고 南北韓 交錯狀態를 打開하는데 기여할 具體的 成果는 별로 없었다. 或者는 이 交錯狀態의 持續을 政治體制 自體內에 內在하는 요인들이나 혹은 國際政治的 環境에 起因하는 것으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교착상태를 지속시키는데 기여한 보다 根本的인 原因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提案들이 統一問題를 非政治化하지 못하고, 具體的이고 실현가능한 措置들을 중시하는 “節次的 漸增主義”를 具現하는데 失敗하였다는 데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즉 統一問題에 대한 새로운 接近으로서의 “民族共同體”의 形成은 統一問題의 非政治化와 “節次的 漸增主義”라는 兩大課題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筆者는 民族共同體의 理論的 基盤에 대해 이미 論議한 바 많고 이들 기회를 통해 民族共同體의 形成이야말로 政治的 再統合이라는 궁극적 目的을 追求할 가장 의미깊은 基盤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었다.²⁾ 基本的으로 民族共同體는 種族的으로 同一한 民族이 內部的 調和를 가지면서 比較적 自足的인 集合性을

2) “民族共同體形成을 위한 理論的 基盤”이라는 주제하의 강연이 지난 1989년 6월 18, 25일 그리고 7월 2일 3회에 걸쳐 KBS 3 텔레비존에 放映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989년 7월 6-9일 모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된 民族統一問題에 관한 第5次國際會議에 발표된 論文 “民族共同體의 理論的 基盤”을 참조할 것.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사회이다. 이 과정에서 共同體는 内部的으로는 機能的 相互依存關係를 형성함으로써 외부 環境과 均衡을 유지한다. 그리하여 民族共同體 形成의 課題는 단순히 政治統合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社會의 각각 다른 부분간에 役割과 제도에 機能的 연계성을 발전시켜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共同體의 領域을 限定지을 수 있을 民族的 기풍의 발견과 高揚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그것은 韓民族이 더이상 外部勢力의 힘과 영향하에 놓이지 않도록 自足能力을 증진시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이 民族共同體의 시스템을 보다 큰 지역적 또는 國際共同體 社會에서 機能的 分化를 담당함으로써 相互間의 均衡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民族的 自給自足の 理念을 현 시대에 있어서 世界主義의 成長과 民族國家概念이 점차 진부해짐에 비추어 편협한 局地主義와 時代錯誤의 概念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種族問題가 오늘날 政治生活에 있어 - 民族國家內와 全世界的으로 共히 - 가공할 힘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現在 蘇聯에서 일어나고 있는 異民族들로부터의 강력한 獨立要求나, 中共의 少數民族運動은 모두 이러한 경향의 뚜렷한 예들이다. 이러한 現象은 아프리카나 第3世界의 他地域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많은 多民族國家들이 種族紛糾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體制不安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민족 再統一의 길은 兩立하기 어려운 側을 힘으로 結合시키는 과정으로서 보다는, 民族發展의 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方法이라고 하겠다. 筆者가 民族再統一의 한 方法으로서 共同體 建設을 探求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民族發展의 概念에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提案된 見解들

은 分斷된 우리민족의 현 실정에서 이러한 社會的·文化的 發展過程을 더욱 促進할 수 있도록 意圖된 것이다.

Ⅲ. 不一致의 類型

서로 다루는 兩側이 그들 不一致의 性格을 探究하고 그 차이를 조절하기로 合意하지 않는 이상 분쟁이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自明한 理致이다. 그러나 相互 敵對인 쌍방간의 交錯狀態를 타개하는 일은 이를 위한 훨씬 더 심각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種類의 敵對的인 관계는 이의 解消를 위한 서로 다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南北關係의 性格을 파악하는데에 紛爭의 種類에 관한 類型的 研究가 필요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國際的 紛爭은 적대하는 紛爭 당사자들이 價値에 관한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할 때에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紛爭의 性格은 이들 당사자들이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는 對象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마 定義될 수 있다. 이 對象은 一般的으로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 (1)利害와 (2)價値. 동시에 不一致의 解消는 紛爭當事者들에게 各各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1)兩側에 共히 利益을 주는 경우(포지티브-섬 게임), (2)한쪽이 利益을 보면 다른 한쪽은 損害를 보게되는 경우(제로-섬 게임), 그리고 (3)兩側 모두 損害를 보게 되는 경우(네거티브-섬 게임). 여기서 不一致의 對象이 되는 두 변수(價値와 利害)를 이들 3가지의 경우에 병렬시킴으로써 紛爭의 6가지 類型을 判別해 볼 수 있다.

(a) 포지티브-섬 게임에 있어서 利害에 대한 不一致

이 경우에 利害의 不一致가 物理的 對立상태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분쟁당사자인 兩方이 紛爭의 해소로부터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은 協商을 통해 追求될 것이 분명하다. 사실 분쟁 당사자들이 利益을 극대화하기 위해 合理的으로 행동한다면 協商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協商이 進行되는 過程은 市場에서 물건을 놓고 흥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이 게임方式 충돌은 一時的이며 심각한 對決로 번질 可能性은 적다고 하겠다.

(b) 제로-섬 게임에서 利害에 대한 不一致

제로-섬게임의 狀況에서는 이길 것을 기대하는 측은 交流를 확대하려 시도할 것이고, 패배를 예상하는 측은 상대방에 비해 劣等하다고 판단하는 한 前者와의 去來를 피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의 뚜렷한 예로서 말성많은 종속이론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第3世界國家들이 超産業社會와의 開放된 접촉을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열세에 놓여 있는 한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의 政治·經濟的 착취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경우의 去來의 性格이 착취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c) 네거티브-섬 게임에 있어서의 利害에 대한 不一致

만약 분쟁당사자들이 結果的으로 不利한 結果를 예상한다면 그 어느 측도 去來에 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關係에서는 紛爭當事者 어느 측도 行動을 먼저 취하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受動性(passivity)” 또는 相互無關心의 狀態로 발전하기 쉽다. 價値가 아닌 利害에 관련하여 紛爭當事者들이 立場을 달리하므로 行動을 취하도록 촉구할 어떠한 規範的이거나 道德的 當爲도 없고 따라서 相互接觸의 회피야말로 모든 당사자들의 最適選擇이 된다. 이 경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d) 포지티브-섬 게임에 있어서의 價値에 대한 不一致

게임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價値定向을 갖고 있으나 서로간의 去來로부터 양측이 모두 利益을 볼 것으로 기대할 때는 그들의 價値가 相互尊重되는 한에 있어서 그 去來가 지속될 것이 分明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去來의 性格을 平和에 符合하고 調和있는 相互共存에 이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一方이 他方の 價値定向을 인정할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價値를 강요하려 한다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양한 價値體系가 서로 受容되고 去來의 結果 모든 당사자들이 利益을 갖게 될 때에 協同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協同의 의미는 不一致가 利害關係에 얽혀 일어나는 경우(위의 (a)의 形態)와는 다르다고 보겠는데, 이는 서로 다른 價値는 相互補完의 方法을 探索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던 당사자들도 他方の 참여없이는 온전히 機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相互依存的으로 되는 것이다. 本稿에서 後述되겠지만 이러한 종류의 관계야말로 “平和創造”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e) 제로-섬 게임에 있어서의 價値에 대한 不一致

價値의 異質性이 相互受容을 不可能하게 할 때는 相互協同이나 協商을 통한 紛爭의 타결도 不可能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勝者의 出現이 敗者의 存在를 불가피하게 함으로 분쟁의 平和的인 타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兩側이 모두 同時에 勝者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의 대표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또한 우리 韓半島에 적용된다고 筆者는 보고있으므로 이러한 形

態의 紛爭의 性格과 構造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이 글의 뒷부분에서 論하려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關係가 가히 交錯될 것이 확실하므로 “交錯狀態”의 개념은 이러한 종류의 상황을 보다 상세하며 표현하는 概念이다.

(f) 네거티브-섬 게임에 있어서의 價値에 대한 不一致

紛爭當事者들의 價値觀이 相馳되고 相互交流가 관련당사자들의 損失만을 초래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의 協力的 共存도 不可避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價値가 相互 敵對的이거나 兩立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들은 그 어느쪽도 상대방의 영향권 아래 놓이기를 원치않게 되므로 오직 힘에 있어서의 優位만을 추구하게 된다.

冷戰的 世界秩序下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反睦하는 兩體制가 相互 파괴의 두려움 때문에 緊張關係를 維持해 왔던 것은 바로 이 對決的 狀況의 전형적 例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는 “抑止”라고 특정짓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表 1 에 요약된 분쟁의 6가지 模型은 과연 南北關係의 性格을 把握하는데에 매우 有用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分類와 더불어 이 글은 한반도 交錯狀態의 性格을 파악하고 民族共同體의 發展을 위한 몇가지 政策的 措置들을 導出해 내고자 한다.

(表 1)

不一致의 類型

(期 待 되 는 結 果)

		포지티브-섬	제로-섬	네거티브-섬
不一致의 內 容	利 害	協 力	搾 取	受 動
	價 值	平 和	交 錯	抑 止

IV. 平和創造와 共同體 建設

위에서 論議된 類型에 따라 검토해 볼 때 韓半島狀況은 南北 兩側의 價値의 차이가 그동안 持續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深化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民族分斷의 固着化과정에서 兩體制는 그들간의 關係를 무엇보다도 價値의 異質性이라는 面에서의 제로-섬 게임으로나 또는 軍事的 對決이라는 側面에서의 네거티브-섬 게임으로 파악해왔다. 兩體制間의 價値의 異質性이 변화되지 않는 限 협상에 의한 妥結可能性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협상에 의한 분쟁의 해소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利害關係에 기초하였을 때 보통 일어나기 때문이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休戰協定이 1953년에 체결된 이후 모든 南北間의 協商과 會談이 아무런 實效 있는 結果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協商과 會談은 이미 결렬되게 되어 있었다. 兩體制는 오직 相對方의 가치와 信念體系를 否認함으로써 그들의 正當性을 確保하려 노력해왔던 것이다. 南北의 그 어느 一方도 價値問題에 타협하거나 양보할 의사를 갖지 못하였는데 이는 바로 그들의 存立根據를 침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南北間의 協商의 제스처는 진실로 상호간의 차이점을 調整한다거나 紛爭을 해소하려는 目的에서 보다는 國內政治的 便宜를 위해 이용되어져 왔다.

위에서 說明된 紛爭解消의 몇가지 類型은 韓半島 交錯狀態를 緩和하는데에

3) John W. Burton, Global Conflict(Great Britain : Wheatsheaf Books, Ltd., 1984), p. 157.

두가지 가능한 방법을 提示해준다. 첫째는 兩體制의 價値가 同化統合될 수 있는 統一된 政治文化를 創出함으로써 兩體制間의 차이를 利害관계에 局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協商에 의한 妥結이 民族再統一을 위한 實踐的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價値觀의 차이는 서로 異質的인 가치를 반드시 反睦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서로 다른 價値나 信念體系는 相互共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機能的 相互依存關係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異質的인 가치를 소유하는 兩體制는 제로-섬 상황으로까지 발전함이 없이 交流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相互關係의 性格을 변화시킴으로써 價値(이데올로기)의 均一性을 追求하거나 一方의 價値選好를 상대방에 賦課함이 없이 平和創造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接近方法중 첫째의 것은 試圖되었으나 失敗하였는 바 이는 바로 이미 언급된 것처럼 협상이 價値問題의 해소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或者는 우리가 價値의 차이를 除去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筆者는 감히 文化的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均一性을 창조하는 일이 政治的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道義的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에게 平和創造를 위하여 두번째의 方法을 선택하도록 하게 한다. 만약 우리가 “平和”를 창조하려한다면 價値의 均一化보다는 價値의 多樣성과 文化的 多元化가 추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바로 平和란 異質間의 調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調和란 곧 多樣性으로부터 하나됨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價値의 差異가 保全된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南北間의 서로 異質的인 經驗의

蓄積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價値觀의 차이는 보다 높은 價値體系속으로 受容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모든 가치들이 相互矛盾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價値는 그것이 相互矛盾된다는 것 때문에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相互矛盾되는 價値와 理想들은 보다 包括的인 價値體系內에서 그 적절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비록 서로 모순되는 가치들은 受容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뜻에서 本稿에서 제안하는 것은 南北 兩體系의 各其 다른 中心的 價値 및 信念體系가 包容될 수 있는 보다 次元높은 價値體系(이데올로기)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보다 包括的인 價値體系야말로 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靑寫眞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民族共同體의 有機的 目標은 平和이어야 한다. 眞情한 平和는 비단 우리가 武力對決로 인한 相互 파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좀더 중요하게는 平和야말로 共同體建設의 유일한 살아있는 代案이기 때문에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平和의 의미를 단순히 분쟁의 해소라는 소극적 定義를 넘어 보다 적절히 概念化할 필요가 있다. 戰爭의 不在는 平和創造에 必要하긴하나, 결코 그것만으로 充分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平和를 平和가 아닌 것에 의하여 정의하지 말고, 平和 그 自體의 속성에 의하여 정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서 간단히 言及한 것처럼 平和의 속성(本質的 內容)은 調和이다. 이런 의미에서, 共同體建設의 과정은 質的으로 서로 다른 個體間의 調和있는 相互作用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平和의 增進은 韓民族의 共同體內에서 調和있는 關係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 나아가 이는 또한 世界共同體라는 보다 큰 環境속으로 民族共同體가 적응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V. 共同體 建設의 準備

지금까지 우리는 民族共同體의 建設이 韓半島 交錯狀態를 타개하는데 있어 과연 통찰력이 있는 接近方法이라는 것과 그 共同體建設의 過程을 平和創造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開陳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는 平和를 創造하는 과정의 性格을 具體적으로 論하였다. 이제 우리의 課題는 統合된 民族共同體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具體的 政策的措置들을 淸안해내는 일이다. 이들 措置들은 南北兩體制에 의하여 探索되어야 하겠으나, 現實적으로 南韓側의 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필자는 세가지 일반적인 분야에 제안하여 이 論議를 전개하려 한다. 첫째, 새 이데올로기의 創出을 위하여 共同的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各體制內에서 政治教育을 위한 特別教育計劃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海外同胞들의 人的資産이 共同體建設의 바람직한 目的을 위해 活用되어야 한다. 이제 이들 각각을 詳細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a) 이데올로기의 統合

政治이데올로기는 政治권력을 正當化하고 政策樹立의 指標역할을 한다. 어떠한 체제도 이데올로기를 통하지 않고 大衆의 지지를 얻어내거나 政治權力을 公고히 하는데에 効果적일 수 없다.⁴⁾ 새로이 出現하는 民族共同體가 信賴를

4) 이데올로기가 體制正當性を 確保하기 위한 制度的 手段이라는 論題는 朴漢植의 Human Needs and Political Development(人間의 欲求와 政治發展) (Cambridge, Mass. : Schenkman Publishing Co., 1984), Ch.5에 상세히 論議되어 있다.

받고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共同體의 性格과 民衆의 열망에 符合되는 이데올로기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창조는 世界共同體 그 자체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傳統的인 自由民主主義나 共產主義는 이미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現代社會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데올로기 空白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 傳統的인 두 이데올로기는 冷戰期間中 制限 對立狀態에 있었고 그들의 1차적 目標은 그들의 霸權의 影響력을 世界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만큼 각 진영은 그들의 民衆들에게 相對方에 의한 支配에 대해 공포감을 注入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이제 더이상 단순히 적대감이나 反感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존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 이데올로기는 政治的 共同體의 目的을 成就하는데 있어 道德的 說得力과 더욱 중요하게는 機能的 效率性을 보여주어야 한다. 蘇聯과 동유럽에서의 共產體制의 崩壞는 곧 人民의 需要와 基本的 欲求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財貨와 서서비스를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正統性있는 民族共同體를 건설하는 일이 민족의 진정한 目的이라면, 우리는 먼저 그 民族共同體 實現을 위한 지침과 政策的措置들이 강구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이 바람직한 이데올로기를 規定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筆者은 새 이데올로기의 信念體系속에 포함되어져야 할 두가지의 中心價値를 제안하려한다. 最優先的인 가치는 “人間의 尊嚴性”이며 이는 “世界化”에 의하여 수반되어야 한다.

人間尊嚴性的 概念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로써 앞으로의 새 이데올로기에 中心的이다. 첫째는, 그 개념이 어떠한 規範도 受容할 만큼 포괄적이어서 이데올로기 統合을 위한 공동의 廣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그동안 南北韓의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극한상태에 이르러서 人間の 尊嚴性和 같은 포괄적 개념이 절대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록 두體制가 그 개념의 定義를 規定하는 방식에 의견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어느側도 이 개념 自體의 崇高性を 否定할 수는 없다. 이런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의 가치에 대해 본능적으로 反對하던 종래의 습관으로부터 탈퇴하여 協力精神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 둘째로, 人間尊嚴性的의 概念은 人間自身이 南北韓에서만 아니라 全世界的으로도 “發展”의 희생이 되어왔다는 점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인간존엄성을 向上시키려는 目的을 가진 이데올로기는 南北韓 社會뿐만 아니라 全世界에 걸쳐 民衆의 支持를 획득하기 위한 광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人間尊嚴性은 첫째로 生存權의 維持를 의미한다. 生存을 위한 人間の 權利는 너무도 普遍的인 것이어서 리더십의 형태나 權威의 구조를 초월한다. 그러나 일단 物理的 生存의 최저요건이 확보되면, 화해(또는 “소속감”)의 권리가 증진되어야 한다. 둘째로, 人間은 歷史적으로 소외로부터 해방될 權利를 추구하여왔다. 인간이 결코 소외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간 소외를 영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나 이데올로기는 인간존엄성에 有害하고 反動的인 것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人間을 존엄하게 하는 것은 선택할 權利이다. 選擇權은 人間을 노예狀態로부터 해방시킨다. 노예는 그 자신

의 行爲에 대하여 選擇할(決定할) 權利를 박탈당하였다는 점에서 노예인 것이다. 역으로 주인을 노예로부터 구별짓는 것은 自意로 선택할 권리인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발전시키려 열망하는 한 우리는 選擇權을 伸張시켜야 한다. 요컨대 人間尊嚴性을 生存權, 所屬權 그리고 選擇權을 포함하는 일련의 人權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이들 權利를 그 內의 가치고 包含하는 이데올로기가 民族共同體를 위한 中心的 信念體系로서 形成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주요특성은 그것이 세계화의 理想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세계화가 절박한 이유로서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의 兩體制를 統合(단 受容)하는 課題는 진정 世界的眼目を 필요로 한다. 南北韓 兩體制의 이데올로기적·政治的 異質性은 너무 심각하여 이들 특수성을 넘어서는 世界的 視角이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이데올로기의 創案者들로 하여금 그들의 精神世界를 보다 높은 차원, 즉 世界的精神으로 向하도록 만든다. 둘째, 새로이 出現하는 民族共同體는 보다 큰 世界共同體內에서 機能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어떠한 政治體제도 世界的 他共同體와 孤立되어 存續할 수는 없다.

民族共同體가 그 構成要素들간의 相互作用의 均衡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꼭 같이 世界體制는 그 構成共同體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兩極의 世界構造는 多元化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적 爭鬭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고 보겠으나 새로이 出現하는 世界共同體는 더이상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體制에 의하여 指導될 수는 없다. 한민족공동체를 위하여

창조된 새 이데올로기가 他 政治體制 뿐 아니라 世界共同體 그 자체를 위하여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지금까지 몇가지 見解들이 새 이데올로기 價値體系의 가능한 구성요소로서 제안되어 왔으나 이것들은 實踐的措置들로 뒷받침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만큼 좀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民族共同體를 건설하기 위한 政策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創造하기 위한 努力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b) 北韓에 對한 教育

北韓은 더이상 신비스러운 나라가 아니다. 남한사람들에게조차 北韓은 많이 알려져 있다. 다만 問題는 北韓이 잘못된 방향으로 알려져있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方向이란 다음의 두가지 極端主義的 見解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첫째는, 北韓이 강압과 정보조작에 의하여 유지되는 異常體制로서 그 持續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붕괴가 임박해있다는 超保守的인 見解이다. 蘇聯과 東歐圈 社會主義 국가들의 변화에 힘입어,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北韓이 궁극적으로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北韓에 대하여 浪漫的으로 단순한 民族主義的 이미지를 갖는 見解이다. 대체로 급진적 학생들과 이른바 “左翼同情論者”들에 의하여 주창되고 있는 이러한 見解는 北韓을(南韓보다도) 진정한 韓國民族主義의 具現者로서 보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북한에서 持續的으로 表現되고 있는 反日主義나 “主體”思想에서 그와 같은 점이 잘 나타난다는 것이다. 保守主義的 견해와 달리 이러한 見解는 北韓의 發展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위에 언급된 北韓에 대

한 두 상반된 見解는 좀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분명히 事實에 立脚한 情報나 經驗的 知識보다는 先入觀이나 規範的 偏見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問題는 해외의 學者나 機關들에 의하여 배포되는 출판물을 포함하여 北韓에 관한 믿을만한 情報의 不足이라고 하겠다. 과연 情報의 不在는 몹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으므로 蘇聯이나 中國, 日本 그리고 프랑스, 東유럽 등지로부터 利用가능한 學問的·時事的 資料들을 획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國內外에 걸쳐 專門的 識見을 가진 훌륭한 학자들에 의한 북한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學者的 活動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讀者들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學問의 非政治化를 위하여는 먼저 公共機關에 의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施設機關이나 個人들에 의하여 적절한 制度的 裝置가 고안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다.

國民大衆을 위한 情報의 탐색과 병행하여 各級 수준의 學校 특히 大學에서는 北韓研究에 관한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한국의 社會와 政治, 그리고 歷史, 言語, 人類學에 대한 研究는 北韓을 포함해야 한다. 북한의 政治體制는 정당한 學問的 研究의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高級教育機關의 학생들은 그 教育內容속에 北韓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北韓에 대한 教育의 活性化는 위에서 논의된 바 적절하고 믿을만한 情報가 더욱 利用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努力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教育分野에 있어서의 또하나의 問題는 質的으로 자격을 갖춘 教師들의 不足

이다. 이러한 學者들의 不足사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특히 晲쇄적 孤立 政策을 추구하는 북한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남한에서 학자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政治的 人間性을 들 수 있다. 이 分野에 있어서의 이러한 學者不足現象은 비단 남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問題이다. 그러나 國內外的으로 冷戰體制의 終熄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大幅 完化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北韓研究의 專門家들을 育成하는 일은 지극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政治·文化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기가 되었다. 專門家들의 양성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므로 海外學者들을 活用하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統一院이 앞으로 초청가능한 학자들의 最新의 리스트를 定期的으로 만드는 일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이런 목적을 위해 고안된 教育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한 財政的 補助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c) 海外同胞들

民族共同體는 地理的으로 局限된 개념이 아니다. 이미 論議되었듯이 그것은 種族的이고 기능적이며 有機的 概念이다. 民族共同體의 개념이 이렇게 定義될 때 海外韓人同胞 5百萬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海外同胞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로서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人口統計的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외에 살고있는 韓人들의 숫자는 가히 놀랄만한 것이다. 대체로 總人口(6천만)의 8%가 海外에 居住하면서 韓國人으로서의 民族的·同族的 同質性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의 數나 혹은 그 이상의 비율의 海外僑胞를 가진 他 국가들이 있을런지 모르나 그 어느

나라도 해외에서 한국인들처럼 文化的·情緒的·同質性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다.⁵⁾

두째로, 우리는 海外同胞들의 외국거주로부터 파생되는 社會·政治意識의 경향과 責務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500萬同胞의 대부분은 현재 4大強國에서 살고 있는 바 中國에 200萬, 美國에 100萬, 日本에 70萬 그리고 蘇聯에 40萬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점인데 왜냐하면 이들 강국들이 분단된 한국政治와 未來의 進路에 深大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행사할 것으로 믿어지는 때문이다. 이들 4大強國은 冷戰期間중 北韓을 지원하는 中國과 蘇聯, 그리고 南韓과 同盟關係를 가진 美國과 日本의 두편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므로 이들나라에서의 한국인들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定向과 서로 다른 政治體制의 影響아래 露出되게 되었다. 海外韓人共同體內에 형성된 바로 이 다양성이 南北韓兩體制의 統合을 달성하는데에 智慧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실, 그들 해외동포들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조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民族共同體 실현을 위하여 各體制의 理念間的 차이와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南北韓과 공히 組織行動에 이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南·北韓 相互交流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文化的·知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세째로 世界強國들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한민족공동체 건설에 合當한 정책을 이들 나라들이 형성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政策立案者들은 설

5) 조지 쿠리안(George T. Kurian)은 世界 모든나라들중 오직 두政治體制만이 완벽한 100% 種族的 同質性을 유지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南韓과 北韓이라고 報告하고 있다. 그의 The Book of World Rankings (New York : Facts and File, 1985)을 참조할 것.

특할 수 있다. 특히 中國과 蘇聯에 살고있는 韓國人들은(미국의 교포들은 그 정도가 약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반을 구축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基盤이 活用되지 않고 遺棄되어져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 外國에서 韓인들이 政治的으로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한 연구가 시행될 것을 제안한다.

맺 는 말

韓半島 交錯狀態를 타개하기 위한 南韓側의 새로운 接近方法으로서 民族共同體의 概念이 導入된 이후 이 民族共同體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措置들이 探求되어져 왔다. 사실 韓國의 第6共和國政府는 對北韓政策의 主要變化를 포함하는 새로운 실천적 措置들은 취함으로써 共產圈政策에 있어 일대 進歩를 이룩하여 왔다. 몇몇 새로 제안된 措置들을 보고 筆者도 놀랄 때가 많았다. 더 이상의 시나리오를 첨가하는 일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問題는 생각, 方法 그리고 시나리오의 부족에 있지 않다. 그보다 문제는 그러한 생각들을 受容할 준비태세의 결여에 있다고 筆者는 믿는다 認識과 態度, 그리고 制度에 있어서의 그러한 준비가 없이 모든 理想的인 생각과 계획은 단순한 審美的 價値나 호소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은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을 피하고 대신 이데올로기, 教育, 그리고 政策的 觀點에서의 改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具體的으로 이 글은 이미 제안된 民族共同體 實現에 正當性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과 教育機關의 教科過程은 南北間의 相互理解를 增進할 수 있도록 北韓研究가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海外同胞들의 역할이 강조되어져야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몇가지 原則들에 기초하여 몇몇 具體的 政策措置가 제안되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사항들이 探求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 分野에 관한 研究努力을 촉진하고 調整하기 위하여 民族共同體 研究를

위한 研究機關이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機關은 非政治化되고 世界化되어져야 하는 점에서 종래의 研究機關들과는 그 性格을 달리 해야할 것이다.

7. 南北韓의 經濟協力 方案

李 喜 相(위스컨신大)

本 論文에서는 北韓이 改革이라는 말 없이 經濟改革을 일부 추진해 왔음을 논증하겠다. 그 改革의 核心은 8月 3日 人民消費品 生産運動이며 이 施策은 中央執權計劃體系를 일부 위축시키는 改革役割을 하는 것이다. 8月 3日 人民消費品 施策은 合營法과 같은해인 1984년에 발단했으며 對外部門을 개혁하는 合營法을 병행하여 國內經濟를 改革해왔다. 8月 3日 消費品 施策은 동반자인 合營法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속은 덜하지 않다고 본다. 이 施策은 6年 동안이나 꾸준히 확대돼왔을 뿐 아니라 昨年에는 輕工業運動과 또한 今年에는 增產節約運動과 結合되있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미니페레스트로이카가 이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정을 못하는 것이 北韓의 고민인 것 같다.

8月 3日 消費品運動은 1984년에 있는 平壤市 輕工業展示場에서 發端되었다. 展示場에 진열된 製品에는 옷, 신발, 식기, 가구, 학용품 같은 것이 있었다. 그렇게 평범한 일용품들이 展示會에까지 나타난 이유는 그들의 原料가 폐설물이나 부산물이며 제작에는 遊休人力을 作業班으로 組織 動員했다는 特殊性에 있었다. 이 展示場에는 金正日 자신이 현지도를 하고 두가지 指示를 내렸다.

1. 群衆的運動으로 家庭과 企業所에 作業반을 더욱 조직하여 시대적 미감과 인민의 기호에 맞는 生活必需品를 더욱 많이 생산할 것
2. 生産되는 生必需品를 인민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직매점을 각 區域에 세울 것

이와 같은 기사가 1984年 8月 4日 字 로동신문 1面に 실렸다.¹⁾ 이로써 8月 3日 人民消費品施策이 탄생한 것이다.

1) Rodong Sinmun, August 4, 1984.

그 이후에 北韓의 신문들은 이 運動에 관해 종종 報道하였다. 그러나 外部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 하나의 이유는 新聞報道에 改革이라는 용어가 없을 뿐 아니라 보도의 초점이 北韓의 상투적 群衆動員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金日成과 金正日의 현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영도와 교시를 높이 받들고 生産에 열중하는 作業班 勤勞者들; 국가재정에 부담없는 지방원료의 사용; 줄지어 늘어나는 市地域에 세워진 직매점의 대중적 인기등이 보도의 초점이었다.

그 뿐 아니라 보도의 대상도 全國的인 것이 아니라 郡이나 市地域에 국한되었고 生産의 增加에 관해서도 增加率만 말하고 기준기간의 절대수량은 주지 않았다. 따라서 8월 3일 消費品 生産運動이 어떠한 改革을 뜻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추정할 수가 없어 外部의 關心을 꾸준히 끌지 못했다.

中央政府 豫算에 부담없이 地域自體에서 마련되는 材料와 人力의 使用, 生産과 投資決定의 地方自治性, 또한 地域안의 生産을 지역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직매점의 존재는 8월 3일 소비품 施策이 中央計劃體系밖에서 運營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렇다면 北韓體制 핵심의 일부를 改革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論理的 可能性에도 불구하고 그 施策을 둘러싼 상습적 용어나 群衆動員은 역시 과로하는 주민과 줄어드는 資源을 좀더 짜내어 부족한 生必需品을 보충해 불러는 北韓 政權의 상투적 術策으로 생각하기가 쉬웠다.²⁾

8월 3일 消費品 生産運動이 外部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가 또하나 있었

2) The author made an observation to that effect. See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28, No. 12, December 1988, p. 1269.

다. 그 運動은 원래 북한이 地方工業을 세울 때 쓰던 술책과 너무나 비슷하였다. 北韓이 1950年代부터 重工業爲主의 經濟發展을 시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政策은 第1次 5개년계획(1957~1961)의 2次年度인 1958년에 벌써 重工業과 輕工業의 不均衡, 거기에 따른 消費品부족을 危機狀態로 몰았다. 그래서 1958년 6월에는 로동당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消費品生産을 늘이기로 결정한 것이다.³⁾ 그러나 그 方法에 있어서는 중공업에 쏟는 國家財政에 부담이 안되도록 한 것이다. 즉 地方權力機關의 管轄과 責任하에 地方住民이 가장 원하는 소비품을 지방의 재원을 동원하여 생산하도록 소위 地方工業을 이르게 세우자는 술책이었다.

김일성은 그러한 생필품의 地方自給自足政策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였다. 근로자의 부인이나 다른 식구들의 遊休人力의 雇傭, 自然過失이나 纖維의 使用, 野山등 遊休地의 耕作, 輸送費 節約, 都市肥大化의 防止, 그리고 分散된 生産基地의 戰爭時 重要性 등 이유를 제시하였다. 물론 중소기업으로 이루는 地方工業工場들은 投資費用이 적게들면서도 많이 세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地方工業政策은 初期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個人的이 아니라 지역적이거나 자기 이익 추구 原理를 活用했기 때문이었다. 1962년에 金日成은 地方工業工場들이 그 政策發端後 잠시동안에 평균 10개가 各郡에 세워졌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이 전국 消費品生産의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과시할 수 있었다.⁴⁾

3) Kim Il Sung, "Let Us Radically Improve the People's Living Standards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county and Further Developing Local Industry and Agriculture," Selected Works, Vol. III, Pyongyang :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1, pp. 341-343.

4) Ibid., p. 344.

그러나 그 후부터 北韓의 生必需品 生産은 부진하였다. 消費品 生産의 큰몫을 맡아야하는 現代式 輕工業工場들은 中央政府의 管轄하에 묶어놓고 등한시 해 버렸다. 地方工業은 의도대로 등한시켰을 뿐 아니라 中央執權計劃體系로 끌어 들인것이다.

金日成은 1962년에 地方工業의 發展을 과시하는 자리에서 地方指導者들에게 地方工場을 국가계획에 따라서 設立하고 허가없는 投資를 위해 資金을 쓰는 違法行爲를 경고하였다. 郡과 市는 計劃하는 事業에 필요한 資材와 資金을 精確하게 계산하여 道지방산업국에 提出하라고 지시하였다.그러면 國家에서 약간의 鋼鐵, 木材, 石灰 등 資材를 보내주겠으며 地域안의 中央工業工場들이 一定量의 도움으로 地方産業에 해주도록 하겠다 하였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각 郡이 수행해야 할 生産指標를 내놓았다. 食用기름의 生産은 각 郡에서 인구당 10-20그램, 옷감의 生産은 작은 郡이 40만-50만미터 그리고 큰 郡은 1백만-2백만미터, 纖維原料로 삼(대마)를 각 郡에서 農土가 아닌 길가나 집주변의 당 300-400정보에 심을 것, 종이工場이 있는 郡에서는 종이생산을 몇톤씩, 이러한 식으로 地方工業을 生産意慾 질식시키는 중앙계획체계로 끌어 들였던 것이다.⁵⁾

이렇게 하여 北韓은 1984년에 8월 3일 소비품 시책을 도입할 때까지 地方工業을 등한시하고 부진시킨 歷史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책은 地方工業을 다시 어느 수준까지 發展시키려는 일시적 술책의 재연으로 疑心할 수가 있었다. 그 시책을 위해 金正日 자신이 지시한 直賣店도 시장제도와 너무나

5) Ibid., pp. 350-360.

類似하기 때문에 北韓으로서는 오래동안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北韓의 新聞들은 그 시책에 관한 報道를 점차 늘렸고 金正日의 이름과 항상 結付시켰다. 그래도 위에 말한 의심은 가지지 않았다.

결국에 가서는 勞動黨의 月刊紙인 “근로자”에 한 문헌이 출판됨으로써 그 의심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⁶⁾ 그 文獻의 저자는 최인덕, 그는 8월 3일 소비자 生産運動에서 模範性을 인정받아 中央黨의 감사장을 몇번이나 받은 평양시 선교구의 黨 責任秘書인 것이다. 최씨의 비교적 직선적인 글은 8월 3일 消費品 施策의 중요한 측면을 몇가지 알려 주었다.

첫째, 그 시책이 國家計劃體系 밖에서 運營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그 施策의 初期에는 지역의 黨과 行政要員의 일부가 “8월 3일 消費品 生産이 國家의 計劃指標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遂行하지 못하여도 법적추궁이나 기업활동에서 지장을 받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消費品の 양과 가지수를 늘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로되었다.” 이렇게 敘述함으로써 그 확인을 해 준 것이다. 최씨는 이어 8월 3일 소비자운동이 大規模中央工業 및 中小規模地方工業과 더불어 第3의 消費品 生産部門을 이루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밖에도 최씨의 문헌은 8월 3일 消費品 生産에 從事하는 勤勞者數가 全國的으로 수십만명이나 되며 直賣店 販賣流通額이 全國國營商業網 消費品 유통액의 9.5%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씨 자신의 선교구에는 8월 3일

6) Choe In Duk, “Our District Party Committee’s Political Organization Works for the Increased Production of People’s Consumer Goods Through a Mass Movement,” *Kulloja*, No. 1, January 1990, pp. 80–85.

消費品生産額이 區域工業總生産額의 12%이며 區域商品流通額의 28%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직매점 全國販賣 總額이 中央計劃體系 밑의 상업망 總販賣額의 9.5%에 이르렀다는 숫자는 잠시 이전에 다른 지표 두 곳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⁷⁾ 따라서 이제는 8월 3일 消費品 施策이 얼마나 커졌으며 그 성장이 中央計劃體系의 相對的 縮小犧牲으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 핵심적 情報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단편적인 新聞記事들을 끌어모아 분석함으로써 8월 3일 消費品 施策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發展되었나를 觀察할 수 있게 되었다. 그 施策에 관한 신문기사가 지난 1년동안만해도 수십개가 되지만 그 중에서 4개를 뽑아 소개하겠다. 그 넷중에 들은 최씨의 선교구에 관한다.

“선교구에서는 지난 5년동안에 8월 3일 消費品 生産을 수십배로 높이고 품종수(물건종류 뿐 아니라 크기와 색깔 등까지도 計算한 숫자 같음)을 6,000여종이나 늘렸다. 區域黨委員會의 指導下에 區域에서는 8월 3일 消費品 生産隊列을 1만수천명이나 더 늘렸고 國家로부터 資材를 받지 않고 구역안에서 만든 1,000여개의 生産설비를 270여개소나 더 꾸린 生産基地에 공급하였다.

구역 당책임비서 최인덕동무는 區域技術補給室을 꾸리고 3大革命 붉은 기 爭取運動과 結付하여 技術革新과 創意創發性을 제고하였다. 그리하여 구역안의 한 製藥工場에서는 알콜폐수를 정제하여 살결물을 생산하였고 한 편직공장에서는 거기서 폐부산물로 나오는 압착테트론으로 올해여름 그렇게 인기를 끈

7) Rodong Sinmun, August 3, 1989 ; Kim Chang shik, “Mobilization of Local Production Reserves Represents an Important Means for Improving People’s Standards of Living,” Kulloja, October 1989, p. 66.

중절모자를 만들었다.

구역안에 있는 平壤紡織機械工場에서는 生産基地를 훌륭히 꾸려 양말機械를 천여대나 多量生産하여 區域안의 家內作業班과 家內 便宜 奉仕團員들에게 供給하여 8월 3일 消費品 生産을 끊임없이 늘리게 하였다.

이구역 直賣店 奉仕일꾼들은 製品生産單位들과 연계를 강화하여 주문봉사이동봉사도 조직하고 구역안의 매 세대들에 必要한 소비품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⁸⁾

“8월 3일 人民消費品 供給事業에서 훌륭한 模範을 보여준 平壤區域과 선교구역 직매점 일꾼들에게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감사문이 전달되었다. 감사문은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忠誠心を 지니고 높은 革命性和 正當性和 生活力을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주문제에 의한 供給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들이 요구하는 질 좋은 여러가지 製品들을 더 많이, 더 값싸게 生産하도록 生産者들과의 連繫를 強化하며 直賣店의 物質技術士臺를 더 잘 꾸려 住民들의 生活를 責任지고 돌보는 주부로서 人民의 사랑과 尊敬을 받고 있다고 強調하였다.”⁹⁾

“新義州市의 人民消費品 生産者들은 8월 3일 人民消費品 生産을 올해 상반기 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8배로 가지수를 基本品鍾만도 근 600종이나 더 늘이는 革新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市에서는 얼마전에 黨中央委員會 감사를 받는 영광을 지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높

8) Rodong Sinmun, November 10, 1989.

9) Rodong Sinmun, July 23, 1989.

이 받들고 시행정 및 經濟指導委員會에서는 市黨委員會 지도밑에 內部豫備를 적극 動員하여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을 2배로 늘릴 대담한 戰鬪目標를 내세우고 그 實現에 大衆을 불러 일으키는 組織政治事業을 잘 짜고 들었다.

신의주화장품工場에서는 비누 폐액을 회수하여 세탁비누를 생산하고 있는가 하면 법광철기工場에서는 부산물로 바게쓰, 물통등 그릇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고무日用品工場에서는 낡은 타이어를 回收하여 자전거 타이어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市的으로 注文신발生産基地를 꾸려놓고 여러가지 신발을 生産하는 등으로 8월 3일 人民消費品 生産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리는 자랑을 떨쳤다. 이 밖에도 市에서는 直賣店 建物を 종전보다 2.2배로 늘리고 신의주 百貨店에 9월 3일 人民消費品 매대를 따로 꾸렸으며 5개지구에 分店을 내는 등으로 直賣店事業을 더욱 強化하였다.”¹⁰⁾

지난 5년동안에 선봉군에는 消費品 生産額이 근 3배로 늘어났고 品種數는 수백종이나 늘어났다. 친애하는 金正日동지께서는 8월 3일 人民消費品 生産을 위해 많은 作業班과 가내작업반, 부업반을 꾸렸다. 郡에서는 매해 150여톤의 파비닐을 수매하여 榮譽軍人工場과 農機械生産職場의 8월 3일 人民消費品 作業班에 보내주어 부산물과 配合하여 가방, 트렁크, 버치, 간장통 등 여러가지 맵시있고 쓸모있는 비닐製品을 많이 만들도록 하였다. 또한 郡에서는 破古鐵을 收買하여 鐵製日用品工場과 船舶修理職場에 보내주어 石油근로를 비롯한 40여종의 鐵製日用品들을 生産하도록 하고 있다.”¹¹⁾

10) Rodong Sinmun, July 29, 1989.

11) Rodong Sinmun, July 27, 1989.

이와 같은 記事들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8월 3일 消費品施策의 特性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施策은 단순한 기술과 못쓰거나 안쓰던 財源으로 간단한 日用品을 生産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發展過程에서 원래 쓸모있는 財源도 적지않이 사용하게 되었다. 技術도 在來式이 아직 두드러지지만 準 現代技術水準의 器械, 機械 및 原料를 점차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施策은 地域안의 소모를 위한 것이고 地域當局의 決定權으로 運營되고 있다. 地域的 生産意慾裝置는 直賣店의 設置로 制度化되었다. 直賣店은 地域當局으로 하여금 生産, 販賣, 價格 및 投資에 관해 中央計劃官僚나 財務統制 官僚에 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직매점 종업원들은 관료정신에서 벗어나서 企業精神으로 소비자의 선호를 찾아 生産者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直賣店分店의 설치는 8월 3일 消費品施策의 發展과 인기를 상승시키고 있다.
3. 施策施行에 있어 創作과 決定은 주로 黨과 行政要員들이 하고 있다. 그들은 集團社會의 권좌를 누리는 過程에서 企業家 노릇을 하게 되지만 점차적으로 市場動向에 민감해지는 기업인처럼 되고 있다. 그들 밑에는 지역적 自律生産制度의 활기성을 체험하는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있다. 그러한 관료기업가들과 地域自律生産者들이 北한의 200여 郡과 市區域에 골고루 많아지고 있다.
4. 地域自律과 自給制度는 8월 3일 消費品施策에게 中央執權計劃部門을 잠식하여 탈계획부문을 확대시키는 자체 推進原動力을 부여한다. 처음에는

일부 地域指導員들에 있어서 관료정신 및 완만성이 地域利益追求 발동력을 누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最高當局의 뒷받침에 동요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든 지역들은 自體利益追求次元에서 8월 3일 소비품 운동에 뛰어들어갔다. 經濟成長의 원동력으로서 地域利益追求은 개인이익추구보다 훨씬 약한 것이다. 그러나 地域利益追求力이 中央計劃의 발동력보다 우세한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8월 3일 소비품시책을 北韓은 얼마나 더 용납할 것인가? 그 施策에 불어넣은 成長原動力으로 하여금 얼마동안이나 더 國家計劃體系를 制壓하고 위축시키도록 허용할 것인가? 이러한 質問의 解答에는 蘇聯과 東歐에서 불어오는 改革바람도 참고해야 하지만 北韓 內部の 理念 및 現實의 動態를 관찰해야 한다.

理念面을 볼 때 8월 3일 消費品施策의 탈계획 生産과 直賣店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 北韓은 원래 經濟運營에 있어 스탈린式 中央執權計劃體系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다. 새로 일어난 地方工業을 1960년대 초에 中央計劃 밑으로 끌어들이는데 金日成 자신이 한 役割을 위에서 본 바가 있다. 金日成은 1964년 北韓의 計劃體系全體를 전고화하는데 또다시 깊숙히 참여하였다.

그는 소위 一元化計劃體系를 그 때 도입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고전적 스탈린式 計劃體系였다.¹²⁾ 이 體系는 완제품, 部品 및 原資材 하나하나를 각기의

12) Kim Il Sung, "To Give Full Play to the Great Vitality of the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of the National Economy," Selected Works, Vol. IV,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8, pp. 252-290.

예상된 總需要量에 맞게 生産할려는 이른바 物質的 均衡 方法에 의지하는 것이다. 物質的으로 均衡하는 種목을 세부화하면 할수록 經濟運營이 잘된다는 計劃體系인 것이다. 計劃官僚 자신들은 세부화계획의 問題點을 제기했으나 김일성은 주저없이 추진하였다. 그는 1960년대말의 比較的 단순한 北韓經濟事情에서도 무려 10만개까지의 製品種目的 物質的均衡을 目標로 하는 細分化 중 앙집중계획을 지시하였다.¹³⁾ 이것은 1980년대 초의 복잡성을 띤 蘇聯經濟에 있어서 대략 65,000개 種목의 均衡을 시도한 蘇聯의 計劃體系보다 더욱 細分化한 것이었다.¹⁴⁾ 이러한 理念的 背景에서 8월 3일 消費品の 脫計劃生産을 도입한 것이다.

직매점에 관한 理念的 問題도 심각하다. 直賣店은 自由市場과 비슷한 제도이며 김일성은 어떠한 市場도 社會主義制度에 끼치는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일찌기 市場에 관해 권위있는 論文을 發表한 바 있다. 그 논고의 초점은 農民市場이었다. 北韓은 集團화된 農業體系 밑에서 각 農家에 조그마한 個人用 밭을 허용해 왔으며 거기에서 생산되는 달걀 등 副業産물을 자유가격에 팔 수 있는 農民市場을 차려주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그러한 資本主義 유물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었다. 김일성도 농민시장이 利己主義를 부추겨서 社會主義社會에 해로운 結果를 초래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농민시장을 허용했는데 그 이유는 社會主義 生

13) Kim Il Sung,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Unified Planning System," Works, Vol, 24, Pyongyang :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86, p. 105.

14) Gene Tidrick, "Planning and Supply," in Gene tidrick and Chen Jiynan, eds., China's Industrial Refor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176.

産과 供給이 住民의 消費欲求를 充分히 만족시킬 수 있기 전에 農民市場을 法的으로 廢止한다면 반드시 암시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개인적 副業生産과 거기에 필요한 農民市場은 제거해야 하며 결국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지만 그 時期는 社會主義 生産이 풍부해질 때로 파악했던 것이다.¹⁵⁾ 金日成의 이와 같은 理念的構想에서는 農民市場의 궁극적 소멸을 지향하는 것이며 그 소멸은 社會主義에서 共產主義로 進入하는 成功의 입증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理念的 高찰의 結論은 金日成이 8월 3일 消費品 施策을 허락했을 때 그것이 심각한 理念的 後退임을 알고도 했다는 것이다. 스탈린式 計劃體系에서의 後退이며 또한 이기심 없이 발전하는 새 人間상의 社會創立理念으로 부터의 後退임을 빠져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3일 消費品運動이 줄 수 있는 정치 및 경제에서의 實用的利得을 보고 허용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연장선인 金正日 個人的으로 그 施策과 結付되도록까지 한 것이다.

이제 理念은 접어두고 근년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觀察해 보면 역시 의미심장한 것이다. 8월 3일 消費品施策이 1989년 및 1990년의 年次的 經濟運動과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8월 3일 소비품 시책의 地域利益追求라는 成長原動力을 1989년과 1990년의 경제운동으로 장치한 것이다.

金日成의 新年辭와 勞動黨中央委員會 第6期 第16次 全員會議 1989년을 輕工業의 해로 지정하였다.¹⁶⁾ 北韓의 각지역에서는 輕工業運動을 推進하는 過程

15) Kim Il Sung, "On Some Theoretical Problems of the Socialist Economy," Selected Works, Vol. V, Pyongyang :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2, pp. 294-319.

16) The People's Korea, January 21, 1989.

에서 消費品生産을 늘이기 위한 方策을 여러가지로 이행하였다. 그 중에서 畵
부산물 및 生産性提高를 강조하는 區域들은 8월 3일 소비품 구호를 주로 채
택하였다. 그밖에 新規投資나 設備擴張을 강조하는 區域에서는 輕工業運動 口
號를 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脫 계획생산 및 地域利益追求라
는 成長原動力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 두개의 實情
事例를 소개한다.

단천시에서는 當중앙위원회 第6期 第16次 全員會議 決定을 높이 받들고
人民消費品 生産을 늘이기 위한 鬭爭에서 계속 양양을 일으키고 있다. 市에서
는 가까운 年間에 消費品生産을 2배로, 그 가지수를 3배이상 늘릴 目標을 내
걸고 있다.

단천장工場에서는 각종 어린이 食料品을 生産할 수 있는 새로운 工程을 꾸
렸으며 단천食料工場에는 醬냉이 加工工程을 크게 꾸려놓았다. 단천 鐵製日用
品工場에는 새로운 법랑철기 生産工程을 꾸리고 단천運動具 生産協同組合에는
파고무로 맵시있는 신발창을 生産할 수 있는 工程을 새로 갖추었다.

단천시안의 地方産業工場들에서는 消備品生産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工
場들을 더 많이 건설하며 새로운 工程들을 더 많이 보강하기 위한 大衆的 鬭
爭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이미 착공한 큰 규모의 신단천 종이공장과 팔프
生産器機 건설장에는 工事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이와 함께 市에서는 앞으로 現代的인 織物工場을 비롯하여 많은 工場들을
建設하며 현재 있는 絹織, 編織, 양말工場들에 現代的인 設備를 받아들일 작전
도 펼치고 있다. 또한 市에서는 자체의 原料원천에 더욱 튼튼히 의거하기 위

하여 연말까지 30여정보의 原料基地를 더 造成할 目標로 組織事業을 짜고 들고 있다.¹⁷⁾

안주시는 黨中央委員會 第6期第16次 全員會議의 決定을 높이 받들고 人民消費品 生産을 늘리기 위한 鬭爭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成果를 거두고 있다. 市에서는 2-3년 안에 市안의 原料源泉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人民消費品 生産을 2배로 늘이고 品種은 1.4배로 확대할 目標를 내세우고 있다.

市에서는 간장, 된장의 生産量을 늘릴 뿐 아니라 그 질을 決定的으로 높이고 어린이 食品과 단과류 生産能力을 늘리며 종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꾸리는 것을 當面課業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주시 黨委員會 지도밑에 市안에 있는 中央工業 工場, 企業所 責任일꾼들이 協議會를 열고 地方工業 工場들의 生産設備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現代化하기 위해 必要한 設備制作을 分擔하였다. 그리하여 市안의 中央工業 工場, 企業所, 勞動者, 技術者들이 地方工業 工場들을 돕는 것이 黨中央委員會 第6期第16次 全員會議 決定을 관철하는 鬭爭으로 된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 동원되게 되었다.¹⁸⁾

이와 같은 新聞報道가 1989년동안 여러개 있었다. 거기에 나타나는 地域自力自助 行爲는 8월 3일 消費品 施策이 아니라 第16次全員會議 決定에서 正當性을 찾는다. 이 보도 내용에는 8월 3일 消費品 運動과 같은 용어를 使用하면서도 生産이 國家計劃體系 밖에서 進行한다는 문구는 없다. 그렇지만 새로 생

17) Rodong Sinmun, September 12, 1989.

18) Rodong Sinmun, August 9, 1989.

산되거나 생산능력이 擴大되는 消費品의 多樣性은 경직한 中央計劃官僚나 財政統制官僚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地方指導者들의 결정인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製品들이 지역안에서 소비되는 것이나 地域의 熱性的 霧圍氣도 명확히 나타난다.

물론 國家計劃指表 이외나 이상으로 생산되는 物件이 모두 地域안에서 소비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은 내용의 新聞記事가 있다. 그러나 1989년 輕工業運動 밑에서 증산되는 소비품의 상당한 부분이 脫計劃生産이며 그의 상당한 部分이 地域안에서 소비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90년에 관해서는 增産과 節約의 해로 金日成의 新年辭와 第17次 全員會議에서 決定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⁹⁾ 이 運動은 輕工業 뿐 아니라 重工業도 包含한다. 따라서 石炭生産이나 다른 여러가지 重工業 部門에서는 增産節約運動에서 增産되는 製品을 산발과 같은 消費品으로 變形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많은 重工業企業所들의 增産節約運動은 國家計劃指表의 超過達成으로 나타나며 地域을 위한 脫計劃生産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가능한 여건 하에서는 地域利益을 추구하는 창발성동원으로 脫計劃生産이 많이 履行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는 1990년 增産節約運動과 8월 3일 消費品 施策의 共生共存關係를 보여주는 사례 두개를 살펴본다.

10월 5일 自動化綜合工場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올해 新年辭와 黨中央委員會 第6期第17次 全員會議 決定을 받들고 增産節約豫備를 探究動員하여 生産을 늘이는데 模範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지난 2월에 群衆의

19) The People's Korea, January 27, 1990.

지혜와 힘을 動員하여 145건의 節約豫備案을 實現함으로써 重要資材들을 10-15% 節約하여 月 計劃을 0.9% 초과수행하였다.

그밖에 그들이 찾아낸 增産節約豫備案은 1,500件이나 되지만 그것들을 實現하여 增産을 最大化하는 사업은 시원스레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을 제때에 포착한 工場의 責任 일꾼들은 群衆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問題 解決策을 놓고 토론하였다. 그 結果의 하나로서 시행하게 된 것은 節約豫備案을 實現하여 생긴 素材들을 規格品 生産者들 뿐 아니라 8월 3일 消費品 生産者들에게도 供給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工場에서는 節約된 消費財로 연간 400만 개의 각종나사와 機具製品들 및 6만점의 8월 3일 人民消費品을 增産하게 되었다.²⁰⁾

염주군 염주읍에 들어서면 첫눈에 안겨오는 것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地方建設이라 읍 한복판을 흐르는 염주천 좌측에는 198세대의 現代的 아파트들이 일떠서고 右側에는 106세대의 아파트들이 솟아오르고 있다. 더욱이 흥미 있는 것은 江 左側에 일떠서는 살림집들은 초시기부터 계획된 資材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강우측에 솟아오르는 살림집들은 순수 增産豫備를 가지고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06세대분의 增産豫備는 어떻게 되어 솟아났는가.

얼마전 일이었다. 建設部門 일꾼들 태반은 計劃대로 190-200세대분만 짓자는 것이었다. 이유는 郡建材生産 基地工場들이 만가동을 해도 세멘트, 벽돌, 블로크등 기본건재가 160-200세대 아파트 建設밖에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

20) Rodong Sinmun, March 25, 1990.

었다. 그러나 당위원회 책임일꾼들은 增産節約運動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 群衆속에 깊이 들어가 해결방도를 찾기로 했다.

몇몇 일꾼들은 資材 保障의 基本인 벽돌工場에 나가 勞働者들과 增産豫備를 찾아내기 위하여 머리를 쓰며 궁냥을 넓혀나갔다. 群衆은 지혜로와 나홀이 지나자 解決策을 내놓았다. 점토굴착을 높이기 위하여 굴착기 바가지와 불도저 날을 現在보다 크게 改造하고 벽돌 성형기의 압기를 개조하는 등 해서 벽돌을 더 많이 뽑아내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창발성을 발휘하여 군의 벽돌生産能力을 일당 8,000개에서 12,000개로 늘일 수 있었다.

세멘트공장들에 나간 일꾼들은 勞働者 技術者들과 舍心하여 연간 生産能力을 1,000톤에서 1,600톤으로 확대하는 방도를 찾아냈다. 염주군에서는 이렇게 해서 새로 찾아낸 增産豫備를 가지고 106세대의 살림집을 더 建設할 計劃을 세우고 地方建設을 통이 크게 다그치고 있다.²¹⁾

본 바와 같이 8월 3일 消費品施策과 1990년도 增産節約運動의 결합은 地域利益追求力으로 하여금 消費品生産 뿐 아니라 住宅建設의 增大도 促進하고 있는 것이라 北韓의 1990년도 經濟運動에서 많이 알려진 것은 平壤의 5만세대 住宅建設 事業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 구역들에서도 增産節約運動口號하에서 住宅建設을 增大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住宅增産事業의 발동력까지도 8월 3일 消費品 施策에서 물려받은 것을 인식하면 北韓은 지금 國內 經濟改革의 速度를 加速化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상 서술한 시책들의 南北韓關係에 관한 의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8월

21) Minju Chosun, March 6, 1990.

3일 소비품 시책과 연결된 經濟運動들의 根本的 의이는 北韓이 상당한 規模와 速度로 國內經濟改革을 推進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國內改革은 같은 1984년에 對外經濟개혁 方策으로 導入된 合營法에 상응하는 것이다. 北韓은 이미 6년동안이나 持續적으로 中央執權計劃體系를 相對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生活水準 向上을 시도해 왔다. 또한 8월 3일 消費品 施策을 1989년 및 1990년의 年차 經濟運動과 結合시킴으로써 生活水準 向上 速度를 늘리고 있다.

韓國 政府는 北韓의 이 改革過程을 장려할 수 있는 方策을 探究 이행했으면 한다. 그러한 方策의 하나로 北韓이 자기 나름대로 經濟改革을 推進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한거름 더 나아가서 北韓이 수락할 수 있는 방면으로 그 改革過程에 도움이 되는 經濟協力을 조용히 提供했으면 한다.

北韓의 國內經濟 개혁은 外部에서 들어가야 效率的인 財源의 必要性을 많이 야기할 것이다. 北韓은 이미 外部 財源을 받아들일 수 있는 裝置로 合營法을 設置 해 놓고 있다. 南韓과도 金剛山 開發등 合作事業을 원하는 포시를 했다.²²⁾

새로운 分野의 合作事業으로서 8월 3일 消費品 施策推進過程에 도움이 되는 방면을 舉論해 본다. 비누, 크림, 로션, 양말, 신발, 식기, 가구 등등을 製造하는 수천개 中小企業 工場들에서 金요하게 쓸 수 있는 器機, 機械 및 技術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財源이나 技術이 있으면 8월 3

22) Hy-Sang Lee, "Economic dimensions of Inter-Korean Interactions and Cooperation," in Republic of Korea, National Unification Board,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nd the Question of Unification. Compendium of papers presented to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Reunification, Los Angeles, California, July 6-9, 1989, Seoul :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89, pp. 103-121.

일 消費品施策하에서 生産普及을 할 수 있는 消費品 種目도 많을 것이다. 北韓의 未開發 消費品 一部를 8월 3일 소비품으로 生産할 수 있도록 도우는 方法은 現在 南韓에서 實用的인 消費品을 生産販賣하는 企業人들과 協力하여 講究할 수 있을 것이다.

8. 南北韓의 軍事的 信賴構築方案

文 正 仁(켄터키大)

目 次

I. 머릿말	177
II. 南北紛爭의 構造와 性格	178
III. 南北紛爭의 管理	184
IV. 南北韓 信賴構築方案	193
V. 結 論	202

I. 머 리 말

分斷과 統一을 논함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가정은 일단 남북분단의 要因이 제거될 경우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樂觀論이다. 그러나 이러한 發想은 한가지 중요한 現實的 制約을 輕視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다른 아닌 객관적 현실로서의 南北紛爭 構造이다. 分斷의 原因들을 제거하는 것은 통일로 이르는 必要條件의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南北韓 葛藤構造는 분단의 元初적 原因과 별도로, 同일의 沮害要因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分斷, 紛爭, 그리고 統一은 不可分의 因果고리로 연동되어 있다 하겠다. 따라서 同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南北韓 紛爭의 性格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紛爭管理의 方案들을 강구하는 것은 必須的이라 하겠다. 南北紛爭의 客觀的 制約을 무시한 統一論議는 當爲論的이고 目的論的인 탁상공론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

本 論文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 南北韓 論爭의 性格을 再照明해보고 이를 통해 南北韓 분쟁의 管理方案들을 摸索해 보는데 그 一次的 目的이 있다. 첫째, 本 논문은 “痼疾化된 社會葛藤理論(Protracted Social Conflict)”의 시각에서 南北紛爭의 性格을 規定하고, 둘째, 南北韓 紛爭의 관리를 위한 南·北韓側의 제 의들을 理論과 實際의 틀에서 분석하고 있다. 셋째로, 本 論文은 效果的인 紛爭管理를 위한 南北韓 信賴構築 方案들을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紛爭管理와 信賴構築을 위한 政策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1) 南北韓 紛爭研究에 關한 綜合的 論議는 다음 文獻을 參照바람. 文正仁, “南北韓 紛爭研究의 總點檢 및 새 研究方向 摸索.”양성철 역음, 「南北統一 理論의 새로운 展開」(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9)

II. 南北紛爭의 構造와 性格—痼疾化된

社會葛藤理論 視角

효과적인 紛爭管理 方案들을 모색하기 위해 先行되어야 할 것은 該當 紛爭의 形態, 構造的 성격이다. 그러나 南北韓紛爭의 존재론적 성격에 대한 학자들간의 合意는 存在하고 있지 않다. 一部學者들은 南北韓 紛爭이 國家利益, 安保環境, 그리고 戰略的 相互 作用이란 現實主義的 變수들에 着점을 맞추어 이해될 수 있는 國家間(Inter-State) 葛藤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南北間 紛爭을 다분히 階級的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현재의 南北韓 갈등을 民族解放戰으로서의 「6.25」사변의 연장으로 把握하고 있는 것이다.²⁾

위의 正統, 修正主義 視角들은 南北韓 紛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貢獻을 한바 있다. 그러나 이 相衝되는 理論的 視角들로 韓半島 葛藤의 構造와 形態를 이해하는데는 根本的 限界가 있다 하겠다. 南北韓 紛爭을 국가간의 葛藤으로 이해하고 있는 正統主義的 시각은 그 분쟁에 수반되고 있는 對內的 變수들(즉, 國內政治的 力學關係, 理念的 相馳性, 體制異質性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修正主義 시각은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安保環境과

2) 南北韓 紛爭의 성격에 關한 論議가 最近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正統主義的 視角의 代表的인 文獻으로서 다음을 參照바람.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第2輯」증보판(서울: 西江大學校 出版部, 1986) 修正主義的 視角의 代表的인 文獻으로서 다음을 參考바람. Bruce Cumings, The origin of the Korean War(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勢力均衡의 역동성을 다소 경시하고 있다. 이러한 두 시각의 短點들을 補完할 수 있는 이론시각으로 “痼疾화된 社會葛藤(Protracted social conflict)”理論을 들 수 있을 것이다.³⁾

여기서 痼疾的 社會葛藤이란 국가내의 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隣接國, 그리고 심지어 周邊 強大國들이 葛藤當事者들로 國家內的葛藤에 깊숙히 개입하는 갈등형태를 指稱한다. 고질적 社會葛藤은 국가간에 相衝되는 利害關係 또는 국가내의 階級對立 뿐만 아니라 正體(identity), 認定(recognition), 參與(participation), 發展(development), 그리고 安全(security)등과 같은 社會的價値에 대한 政治, 經濟, 文化, 理念的 對立 때문에 발생하는 葛藤의 類型인 것이다.⁴⁾

痼疾화된 사회갈등은 그 특유의 形態的 性格을 띠고 있다. 첫째, 葛藤期間의 長期化 現象이다. 둘째, 葛藤強度와 頻度數에 있어서 극심한 起伏現象을 보인다는 점이다. 세번째, 痼疾화된 社會葛藤의 경우, 葛藤領域이 政治·軍事部分에만 국한되지 않고 經濟, 社會, 文化 全分野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이다. 네번째, 葛藤의 展開過程에 있어서 위기와 안정, 전쟁과 평화의 確연한 구분이 없이 항상 過渡期的이고 部分的인 平衡狀態를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葛藤主體의 不分明性이다. 葛藤主體의 對內外的 모순이 없어지고 多重的 갈등행위자들이 複合的으로 連繫되어 있다는 점이다.⁵⁾

3) “痼疾화된 社會葛藤(Protracted social conflict)”에 대해서는 Edward Azar,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Hampshire : Dartmouth, 1990); Edward Azar and Chung-In Moon, “Managing Protracted Social Conflicts in the Third World : Facilitation and Development Diplomacy,” Millennium Vol. 15, No. 3(1985), pp. 393-406 參考할 것

4) Azar,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Edward Azar and S.P. Cohen, “The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between Israel and Egyp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16, No. 2(1981), pp. 87-114.

5) 上揭書

이와 같은 痼疾的 社會葛藤의 代表的인 事例들로는 요즈음 全世界的으로 만연하고 있는 種族間葛藤(Ethnic conflict)들을 들 수 있다. 40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아랍-이스라엘」紛爭, 解決의 실마리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레바논」事態, 그리고 최근 크게 緩和되고 있긴 하지만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스리랑카의 「타밀-싱할레스」간의 種族紛爭등은 고질적 社會葛藤의 標本的 事例들이라 하겠다.⁶⁾

南北韓紛爭 역시 고질화된 社會葛藤의 성격을 다분히 內包하고 있다. 일반 國家間的 紛爭의 경우, 분쟁의 기간이 平均 2-3년인 것으로 集計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紛爭은 40년이상 持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종식의 徵候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紛爭의 長期性이 南北韓紛爭을 痼疾的 社會葛藤으로 분류케 하는 큰 이유중 하나라 하겠다.

여타 고질적 社會葛藤처럼 南北韓 紛爭 역시 그 強度와 頻度에 있어서 激甚한 起伏現象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葛藤은 그것이 國家間이던 國家內的葛藤이던 生成, 成熟, 衰退 그리고 終熄이란 명시적 週期를 나타낸다. 그러나 南北韓紛爭은 이런 통상적 葛藤형태로부터 크게 逸脫하고 있다. 「6·25」動亂 勃發이란 生成始點은 있으나 그 후의 葛藤樣狀은 豫測不許의 不安全性을 보여왔다. 혹 全面戰의 양상은 띄지 않으나 休戰線 일대에서의 武力衝突, 諜報工作戰, 테러등 武力摩擦의 性格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經濟, 外交, 心理戰등에 있어서 격심한 競合現象을 보여왔다. 바꾸어 말하자면 「休戰協定」에 의거 全面戰과 같은 武力衝突은 없었지만 그 저변에는 軍事緊張의 強度가

6) Azar and Moon, "Managing Protracted Social Conflicts in the Third World."

지속되어 왔고 危機擴散의 메카니즘은 그냥 방치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顯示的 그리고 默示的 葛藤形態의 複合的 點綴은 韓半島의 安定과 平和를 沮害하고 南北韓 國民들간에 不安과 초조감을 深化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形態의 特殊性은 韓半島 葛藤이 內包하고 있는 構造的 性格과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하겠다. 韓半島 葛藤의 構造的 性格중 例外的 要素는 다른 아닌 葛藤 당사자의 複合성과 그에 따른 갈등주체의 不分明性이다. 表面的으로 南北韓 葛藤은 南韓과 北韓에 국한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葛藤當事者는 이들에 국한되지 않고 周邊 4대강국들이 直·間接적으로 連繫되어 있다. 美國은 엄연한 葛藤主體의 하나(즉, 休戰協定에 따른)일 뿐 아니라 蘇聯, 中國, 그리고 日本 역시 南北韓 紛爭에 미묘하게 얽혀져 있다. 그 뿐만 아니라 南北韓을 단일한 葛藤主體로 인식할 수는 없다. 北韓의 경우는 예외로 치더라도 南韓의 경우는 韓半島 紛爭과 關聯, 다양하게 相衝되는 利害集團들을 含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多重的 葛藤主體의 存在는 韓半島 紛爭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障礙物로 등장하고 있다 하겠다.

韓半島 葛藤의 構造的 복합성은 葛藤主體의 多重성에 제한되지 않는다. 葛藤이슈의 多枝化 現象 또한 紛爭解消에 逆機能的 要素로 등장하고 있다. 여타 痼疾的 社會葛藤 처럼 南北韓 紛爭은 軍事武力摩擦에 끝나지 않고 軍備競爭, 心理戰, 諜報·工作戰, 테러리즘, 外交競合, 經濟, 社會, 文化的 競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南北韓紛爭이 한판승부를 가리는 단순한 武力競爭과 對內外的 正統性 함양이란 非軍事的 競合을 複合적으로 함유하

고 있다는 점을 示唆해 주고 있다.

이러한 葛藤構造의 복잡미묘성은 韓半島紛爭의 기원에 그 源頭을 두고 있다 하겠다. 어느 누구도 南北紛爭이 日帝強占과 冷戰體制의 유산이라고 하는데 異議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한반도의 分斷과 葛藤, 超強大國의 競合, 戰略的 相互作用, 그리고 國家利益의 函數關係에 의해 一次的으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強大國勢力 均衡決定論에 따른 南北韓 紛爭의 이해는 還元主義의 愚를 犯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비록 남북한 분쟁의 기원이 美·蘇간의 勢力擴張 등 國際體制水準의 變數들에 의해 觸發되었지만 그 심화과정은 自體의 論理와 力動性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理念的 相馳性, 國內政治的 正統性, 그리고 體制上 異質性등 對內的 變數들이 韓半島 葛藤을 持續, 深化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國際體制水準 變수들과의 國內 構造的 變수들간의 辨證法的 上昇作用으로 인해 韓半島 紛爭 高질적 社會葛藤性格을 지니게 되었다.⁷⁾

마지막으로 南北韓 葛藤이 수반하는 葛藤形態上 特性은 心理的 硬直現象이다. 葛藤의 長期化 現象은 南北韓間에 相互敵對的인 認識構造를 부식시켜왔다. 이같은 敵對的 認識構造는 모든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을 원천적으로 부정케 하는 心理的 拒否主義와 閉鎖主義를 胚胎시켜 왔다. 南北韓은 相對方의 弱點을 자신의 強點으로 유도하려 하고, 상대방측 提案은 거의 機械的으

7) 南北韓 葛藤의 原因에 關한 論議는 다음 文獻들을 參考할 것.

金學俊, “韓半島分斷의 對內外的 要因,” 「國際政治論叢」제 2 집 1 호(1987), pp.3-16;
李吳宰, “韓半島分斷연구의특징과 문제점 : 分斷原因의 諸假說 分析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 2 집 1 호(1987), pp. 17-30; Cumings, The Origin of the Korean War.

로 부정하는 閉鎖的 心理構造를 定着시켜왔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敵對感情은 敵對感情을 觸發시키는 否定的 認識의 환류구조가 거의 제도화되기에까지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心理的 相互排他성과 그에 따른 葛藤의 深化現象이 南北韓紛爭을 痼疾的 社會葛藤의 한 類型으로 분류케 하는 要因이다. 그러면 이 같은 痼疾的 社會葛藤으로서의 南北韓 紛爭을 어떻게 效果的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

Ⅲ. 南北韓 紛爭의 管理 : 理論과 實際

고질적 社會葛藤의 管理方案들은 回避(avoidance), 豫防(prevention), 妥結(settlement) 그리고 解消(resolution)등이다. 네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⁸⁾ 여기서 葛藤回避란 個人이나 그룹간 葛藤의 所持가 될 수 있는 要素들을 사전에 除去함으로써 葛藤狀況이 誘發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指稱한다. 이 같은 回避는 葛藤의 原因이 되는 物質的 또는 地位上의 가치를 충분히 공급하거나 아니면 相互對立關係에 있는 個人이나 集團들에 대해 공동인 가치를 創出, 相互利害의 基盤을 構築함으로써 가능하다.

갈등의 豫防이란 대안은 回避의措置가 失敗로 돌아가 葛藤이 現實的 制約으로 등장했을 때 취해지는 措置이다. 예방적 措置는 通常 葛藤 行態를 統制, 調整하는데 그 力點을 둔다. 葛藤의 統制, 調整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規範, 規律, 制度的 裝置등 相互合意에 의해 葛藤形態를 제한하려는 葛藤規制(conflict regulation)이며 다른 하나는 武力이나 威脅의 行使를 통해 葛藤形態를 制限한다는 葛藤抑制(conflict suppression)方案이다. 葛藤規制의 代表的事例들로서는 軍事統制, 軍縮, 緊張緩和 措置 그리고 武裝解除協約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軍事力 增強을 통한 抑止(deterrence)나 卽刻的 軍事報復措置 등은 葛藤抑制方案으로 分類될 수 있다.

8) 葛藤의 管理方案에 대한 論議는 다음 文獻들을 參照바람. C.R. Mitchell,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John W. Burton, Global Conflict(Sussex : Wheatsheat, 1984); Edward Azar and John W. Burton,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Sussex : Wheatsheat 1986); Azar,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葛藤回避와 豫防은 一般的으로 葛藤이 潛在力 狀態로 남아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인데 반해 葛藤妥結 및 解消는 葛藤이 현실화되어 있을 때 이를 관리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이다. 葛藤妥結(settlement)은 쌍무적협정의 또는 第三者의 개입 및 仲裁를 통해 葛藤當事者들간에 部分的인 讓步를 유도해 내고 이를 근거로 갈등이나 紛爭을 暫定的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不可侵條約, 平和協定, 그리고 休戰協定の 締結등을 타결이라는 紛爭管理方案의 代表的事例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妥結”이라는 방안이 葛藤이나 紛爭의 完全的 解消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妥結의 경우, 葛藤의 原因이나 그에 따른 心理的 敵對關係가 完全히 제거되지 않는 상태를 前提로 하기 때문에 妥結은 명시적 葛藤의 暫定的 또는 過渡期的 抑制策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葛藤이나 紛爭의 潛在的 性格은 계속되며 언제 어떠한 形態로 명시적 武力摩擦로 확대될 것인지를 豫測할 수 없게 한다.

“妥結”과는 대조적으로 葛藤解消(resolution)는 葛藤의 原因을 完全히 제거하고 葛藤의 再發을 永久的으로 遮斷시키는 管理方案을 뜻한다.⁹⁾ 타결의 경우처럼 葛藤解消는 雙務的協議를 통해 또는 第三者의 仲裁·介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國際紛爭에 있어서는 妥結이 通常的인 紛爭管理方案은 國際紛爭의 경우에서 보다는 勞使紛糾와 같은 조직내(intra-organizational) 葛藤, 그리고 夫婦間 葛藤같은 인간간의 葛藤管理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解消하는 방안이 葛藤當事者間에 共通의 價値, 規範, 態度 및 形態를 유도하

9) John W. Burton, “Problem solv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Azar and Burton(eds.),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pp. 94-97.

여 이를 통하여 最終的이고 長期的인 紛爭解決策을 摸索하기 때문에 보다 複
合的인 國際紛爭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相互敵對關係에
있는 국가들끼리 하나의 政治統合을 이룰 때 이는 葛藤解消의 理想的 事例라
할 수 있다.¹⁰⁾ 최근 南北예멘의 統合이라든가 東·西獨統一 등을 이에 비슷한
事例들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葛藤의 回避, 豫防, 妥結, 解消가 相互 排
他的인 葛藤管理方案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順次的 連繫關係를 형성한
다. 一般的으로 어떤 葛藤이나 紛爭이 效果的으로 規制될 경우 이에 대한 妥
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일단 타결의 실마리가 잡히면 이와 같은 葛藤의 窮極
的 解消可能性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規制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解消의 可能性은 極小化되고 葛藤抑制라는 힘에 의한 조치가 葛藤管理의
一次的 方案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같은 分析的 論議를 根據로 이제 南北韓間의 紛爭管理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表1>이 예시해주고 있듯이 南北韓 공히 紛爭管理를 위한 다양한 提案
들을 해온 바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紛爭規制에 관한 제안들이 大多數를 차
지하고 있다. 紛爭規制方案들은 다시 크게 緊張緩和措置, 軍備統制 및 減縮,
그리고 安保環境의 再調整으로 나눌 수 있다.

10) “葛藤解消(Coalition Resolution)”에 관한 代表的 研究는 다음 文獻을 參考바람
Mitchell,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Burton, Global Conflict; Azar and
Burton,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Azar and Moon, “Managing Protracted Social
Conflicts in the Third World.”

〈表 1〉

南北韓 葛藤管理 方案－南北韓 主要提議 比較

형 태	북 한	남 한
규 제 (Regulation) 긴장완화	상호군사훈련 중지/평화위원회 설치/상호 적대적 군사행위의 중지/비무장지대로부터의 전투병력 철수	비무장지대의 재비무장화/비무장지대에 평화市 건설/비무장지대 완충지대 설치/상호긴장완화와 협상/남북한 상호 내정불간섭/군사훈련 사전통지 및 관찰, 감시/무력사용중지
군비통제 및 감축	군비경쟁의 중지/남북한 상호감군(양측 공히 10만명 수준)/군축협상/외국무기 수입금지 조치	
안보환경의 재조정	주한미군철수/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팁스피리트 훈련 중지/동북아 비핵지대안	
타결 (Settlement)	불가침조약/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3자회담/6자회담	평화협정/불가침조약/남북한 정상회담/남북한 관계 기본법 제정
갈등해소 (Resolution)	「고려연방제」통일방안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
억제 (Suppression)	공세적 군사억지(deterrence)	방어적 군사억지(deterrence)

北韓의 경우 이 세가지 分野에 있어서 보다 활발한 提案들을 해오고 있다. 韓半島內 緊張緩和를 위해 軍事訓練 및 敵對的 軍事行動의 中止등 提案을 통해 南北韓間의 軍事行動의 범주를 제한하려는 의사를 表明하면서 平和委員會 設置, 非武裝地帶로부터의 戰鬪兵力 및 軍事施設減縮 또는 撤收등을 提案해온 바 있다. 이러한 軍事緊張緩和措置와 더불어 南北韓 兵力水準의 減縮(양측 공히 10만명 水準), 軍備競爭의 中止, 軍縮協商, 그리고 外國武器輸入禁止措置등 軍縮과 關聯된 다양한 提案들을 제시해온 바 있다. 그러나 北韓側이 가장 力點을 두어온 分野는 安保環境의 再調整을 통한 韓半島葛藤의 規制라 하겠다. 이러한 現象은 南北韓紛爭의 가장 原初的 原因을 美國, 특히 駐韓美軍에 전가시키는 北韓側의 從來立場과 脈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사실 北韓側은 「6·25」 이후 現在까지 駐韓美軍의 撤收와 「韓·美防衛條約」의 撤廢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와 關聯하여 北韓側은 韓美合同軍事訓練인 「팀스피리트」의 폐기를 要請하는 동시에 南韓內의 美軍 戰術核 撤收를 목표로한 「東北亞 非核地帶」設置 提案을 一貫性있게 주장해왔다.

北韓側이 「緊張緩和」, 「軍縮協商」, 그리고 「安保環境의 再調整」을 통해 적극 적으로 韓半島 紛爭의 規制 努力을 보여왔던 반면에 南韓側은 一次的으로 「緊張緩和措置」에 대한 提案들만을 一貫性있게 펴왔고 「軍縮」이나 「安保環境의 改善」등을 통한 紛爭管理에는 比較的 消極的 態度를 보여왔다. <表1>이 보여 주고 있듯이 南韓側은 「非武裝地帶」의 再非武裝化란 기치하에 非武裝地帶에 「平和市」를 建設하고, 완충지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또한 南北韓 相互間에 內政不干涉과 武力不使用등 包括的 緊張緩和方案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軍事訓練의 事前通知 및 觀察·監視와 같은 信賴構築方案 역시 提案한 바 있

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래의 消極的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積極的으로 紛爭規制에 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령 얼마전까지만 해도 軍縮論議가 하나의 禁忌事項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최근 國防部 주도하에 南北韓 減軍등 軍縮協商에의 豫備的 措置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盧泰愚 大統領이 1988년 「유엔」演說에서 밝혔듯이 「東北亞國家會議」의 결성을 주장하면서 周邊安保環境의 改善에도 점차 關心을 集中하고 있다. 이러한 態度變化는 지난 몇년간 積極的으로 추진해온 「北方政策」의 結實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¹⁾

規制的 措置를 통한 紛爭의 예방은 보다 建設的인 紛爭妥結과 해소를 향한 하나의 豫備的 段階라 하겠다. 따라서 분쟁의 妥結을 위해서는 效果的인 規制가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 紛爭의 경우, 紛爭規制를 위한 提案들이 實行에 옮겨지기 전에 양측은 紛爭妥結을 위한 다양한 提案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¹²⁾ 북한측은 紛爭타결과 關聯하여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

11) 南北韓 葛藤規制措置에 대한 代表的인 論議는 다음 文獻들을 參考바람. 國土統一院, 「南北韓 統一方案 및 主要提議 比較」, 國통조 84-6-29; 李石湖, “軍備統制와 政治經濟: 北韓의 境遇”, 「國際政治論叢」, 제26집2호(1986), pp. 107-129; 李達坤, “軍縮論理에 입각한 南北韓 軍縮協商 代表研究”, 「國防學術論叢」(한국국방연구원), 제3집(1989), pp. 130-193; Dae-sung Song, “Arms Control the Korean Peninsula,” an unpublished paper presented to U. W. Year Peace Seminar, Mar 16-17, 1986; Byung-joon Ahn, “Arms Control Proposal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國際政治論叢」, 제26집2호(1986)

12) 南北韓紛爭妥結方案에 關한 代表的인 研究는 다음 論文들을 參照바람. 金達中, “韓半島 平和의 制度化 方案研究,” 「統一政策」(평화통일연구소)1권2호(1975); 민병천,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의 논의에 관한 考察,” 「統一政策」, 3권1호(1977); 國土統一院, 「南北韓統一方案 및 主要提議 比較」; 金明基, “한국평화조약의 체결방안,” 「國際問題」제181호(1985); Byung-joon Ahn, “North Korea’s Proposal for a Tripartite Conference and Changes in Four Power Relations in East Asi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8, No. 1(1984)

로 대체하는 方案과 不可侵條約 등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위해 南北韓, 美國, 蘇聯, 中國, 그리고 日本등이 참여하는 「6者」會談의 開催를 제의해 왔다. 그리고 1984년 이후부터는 南北韓과 美國이 참여하는 「三者會議」의 開催를 통해 韓半島紛爭의 妥結點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韓側의 提案이 駐韓美軍撤收를 골자로 하여 제3자 개입을 통한 紛爭妥結에 注力하고 있는데 반해 南韓側은 雙務協商을 통한 분쟁타결에 치중하고 있다. 南北韓 頂上會談 및 軍事會談등과 같은 兩者間 協商을 통해 平和協定, 相互不可侵條約을 체결하려는 努力이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南韓側 역시 「유엔」과 같은 제3자의 개입을 통해 南北韓 葛藤妥結의 실마리를 마련해 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으로서는 駐韓美軍이 存在하는 상황하에서 南韓側의 提案들을 受容할 경우, 이는 駐韓美軍의 正當性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南韓側의 제안에 계속 冷淡한 反應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특기할 事項은 南北韓 공히 「平和條約」과 「相互不可侵協定」을 통해 紛爭妥結의 可能性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이러한 제안들은 한갓 口號에 그치고 마는 傾向이 있다. 특히 駐韓美軍의 역할과 위치에 관해 南北韓間에 合意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는 紛爭妥結에 가장 決定的 障礙物로 남아 있다. 그러나 紛爭規制나 妥結方案들이 제안에서 끝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南北韓 兩側은 紛爭解消 方案의 提示에 積極的인 태도를 보여 오고 있다. 엄밀히 말해 통일이야말로 南北韓 紛爭解消의 가장 理想的 形態라 하겠다. 왜냐하면 통일은 두 相衝되는 體制들이 政治的 統合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統一은 곧 目的이요 手段이라 할 수 있다.

分斷의 悲劇을 體驗하고 있는 韓國人들에 있어서 統一은 지금의 目的인 동시에 技術的으로 볼 때 통일은 南北韓 紛爭을 解消하는 가장 效果的 手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目해야 할 점은 統一이라는 目的이 南北韓 紛爭의 規制, 妥結 그리고 解消라는 順次的 段階를 거치지 않고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統一을 紛爭解消의 效果的 手段으로 상정할 때 南北韓은 각기 相異한 接近方式을 취해왔다.¹³⁾ 北韓側은 “先統一, 後葛藤解消”란 全體主義的 方式을 選好해 왔다. 그러나 統一이 되면 南北韓 紛爭狀況은 自動的으로 解消된다는 가정하의 北韓側 提案(高麗聯邦制)은 客觀的 制約條件으로서의 南北韓 紛爭現實을 看過하는 傾向이 있다. 反面에 南韓側의 統一方式은 單片的, 漸進的 性格을 띄고 있다. 南北韓 葛藤狀況을 하나의 現實的 制約으로 認定하면서 “先緊張緩和 및 紛爭解消 後 統一”이란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南韓으로서는 統一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社會, 經濟, 文化交流, 相互信賴構築, 緊張緩和, 그리고 紛爭狀況의 解消등 段階的 措置를 통해 이룰 수 있는 長期的 目標이기 때문에 이같은 段階的, 機能主義的 統一方案을 先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平和的 紛爭管理 方案의 수사학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韓半島內의 軍事緊張은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不信과 反目이 相互認識의 基를 이루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平和的 紛爭管理의 한계를 노정시켜주는 것으로 南北韓 公히 이같은 狀況에 대처하기 위해 紛爭抑制(suppression)라는 최후의

13) 南北韓 統一方式에 대해서는 國土統一院, 「南北韓 統一方案 및 主要提議 比較」; 양성철, 「南北統一 理論의 새로운 展開」; Sung chul Yang, “Korean Reunification : A Comparative Perspective,” 「國際政治論叢」, 제27권 1호(1987)

管理手段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이 抑制 수단은 軍事抑止(deterrence)를 통한 분쟁경쟁을 가속화시키고 相互不信의 폭을 한층 더 深化시켜 주고있다. 군사역지의 擴散的 惡循環은 效率的 紛爭管理의 可能性을 弱화시키고 窮極的으로 紛爭豫防이란 目標達城마저 沮害하는 結果를 초래하고 있다 하겠다.

물론 國際體制의 無政府的 狀態를 하나의 既定事實로 간주할 때 戰略的 豫備措置와 平和的 제스추어는 동전의 兩面과 같다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조망할 때 南北韓側이 二重的, 그리고 때로는 相衝되는 紛爭管理方案들을 제시한다는 것이 조금도 例外的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紛爭管理態도의 二重構造는 南北韓間의 인식괴리를 더욱 넓혀 窮極的으로는 平和的 葛藤解消方案의 摸索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같은 膠着狀態가 持續되고 있는가? 왜 유사한 內容의 葛藤管理提案인데도 불구하고 兩側의 合意點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는 南北韓 紛爭이 수반하고 있는 痼疾的 社會葛藤이 그러하듯이 不信, 疑心 그리고 偏狹이 亂舞할 때 平和的 葛藤管理方案들을 실천에 옮기기란 거의 不可能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葛藤管理의 實踐的 段階에 들어서기 이전에 葛藤 當事者間에 效果的인 信賴를 構築하는 것이 급선무로 登場하는 것이다.

IV. 南北韓 信賴構築方案—그 批判的 評價

“信賴構築方案(C Confidence Building Measure)”이 國際的 關心을 끌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最近의 일이다. 1975年 헬싱키에서 開催된 協力에 관한 회의에서 論議된 이래 信賴構築方案은 세계 도처에서 多角度로 論議, 活用되고 있다. Mack과 Keal에 따르면 信賴構築方案이란 “일련의 實踐的 手段들을 통해 紛爭當事國들간에 政治·軍事的 敵對感을 減少시키고 相互 信賴를 構築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⁴⁾ 信賴構築은 通常軍事統制(arms control), 武裝解除, 緊張緩和(tension reduction)등과 分析的으로 區分된다. 軍事統制나 武裝解除, 그리고 緊張緩和는 武器라는 “하드웨어(hardware)” 또는 그 配列과 關聯되는데 반해, 信賴構築은 政治, 軍事的 環境의 改善을 통해 確信性, 透明性, 그리고 豫測可能性을 높이는 “소프트웨어(software)”에 해당된다 하겠다. 보다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軍縮이나 緊張緩和方案들은 군사역지의 “能力”을 制限하거나 調整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고, 信賴構築은 군사역지와 關聯된 “意志(will)”나 “意圖(intention)”를 수정하거나 再調整하는데 力點을 둔다. 따라서 信賴構築은 紛爭當事者들의 平和的 意圖나 行태를 상호간에 납득할 만큼 再照明시켜 줌으로써 紛爭規制나 妥結의 霧圍氣를 조성시켜주는 메카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⁵⁾

信賴構築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廣義의 개념으로

14) Andrew Mack and Paul Keal, Security and Arms Control the North Pacific(Sydney : Allen & Unwin, 1988), p.169.

15) 信賴構築方案에 대해서는 다음 文獻을 參照바람. Alfor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Europe : The military Aspects,” in Alford(ed.), The Future of Arms Control : Part III—Confidence—Building Measures(London : IISS, A delphipaper No.149); Abbott A. Brayt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European Security , The world

서 信賴構築이요, 다른 하나는 挾議의 개념으로서 信賴構築이다. 廣義의 概念으로 信賴構築은 “가공할 만한 위협이 존재치 않는다는 證據를 信賴性있게 紛爭當事者間에 알릴 수 있는”¹⁶⁾ 政治, 軍事, 經濟 및 社會·文化的 諸般措置들을 指稱한다. 政治的 信賴構築으로는 不可侵과 平和共存의 의사를 政治的 經路를 통해 表明하는 것을 들 수 있고 經濟的 信賴構築은 友好的 經濟協力關係의 樹立을 통해 關稅 및 非關稅 障壁을 허물고 紛爭當事國들간의 經濟關係를 增進시키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社會·文化的 信賴構築은 자유로운 人的交流, 書信往來, 스포츠팀의 交流, 그리고 文化行事의 交流등을 통해 민간수준의 相互理解와 協力을 增進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밝혀두어야 할 사항은 政治, 經濟, 社會·文化的 信賴構築은 窮極的으로 軍事的 信賴構築을 위한 豫備段階란 점이다. 왜냐하면 非軍事部門에 있어서 協力增進은 軍事部門에로의 建設的 波及效果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軍事的 側面이 信賴構築의 核을 구성한다고 類推할 수 있다.

사실 狹義의 의미로서 信賴構築은 通常軍事的 信賴構築을 指稱한다. 軍事的 信賴構築은 네가지 具體的 方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째는 情報의 共有 및 公開를 통한 軍事的 信賴構築方案이다. 이 경우 紛爭 當事國들이 相互監視團을 交換, 戰力水準을 수시로 把握하고 軍事訓練 및 軍需物資 生産에 관한 諸般情報를 입수하여 피차간에 오해가 없도록 한다. 두번째로 事前通知措置를

Today36 (October), pp. 382-391; Thomas Schelling, “Confidence in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Vol.8, No. 4(1984), pp. 55-66; Mack and Keal,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one North Pacific; Masahik. Asada,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East Asia,” Asian survey, Vol. 18, No.5, pp. 489-508.

16) Brayto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European Security,” p. 382.

들 수 있다. 事前通知(notification)措置는 軍事作戰訓練이나 무기실험사실을 사전에 相對國에 통보하여 잘못된 認識(misperception)이 발생치 못하도록 하는 措置이다. 세번째 軍事信賴構築方案으로는 效果的인 커뮤니케이션體制의 構成을 들 수 있다. 가령 紛爭當事國間에 直通電話(hotline)를 架設한다든가, 共同危機統制센터(crisis control centers) 또는 非武裝地帶에 이 早期警報感知裝置(early warning sensors)등을 設置하는 것이 그 代表的 예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軍事配置(deployment)에 관한 相互協議를 통해 軍事的 信賴構築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紛爭當事國들은 어떤 유형의 兵力과 武器들을 制限하고 許容할 것인가를 배치전에 相互合意를 할 수도 있고 非武裝地帶, 非核地帶, 그리고 對潛艦戰鬥地域등의 設定을 武器配置地域에 關한 事前合意를 이루어 軍事的 信賴構築을 成就할 수도 있다.

〈表2〉 南北韓 信賴構築方案 比較

형 태	북 한	남 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사전통지	거부	일방실시
－ 정보공유 및 공개	거부	부분적, 일방실시
－ 커뮤니케이션	부분적 실시(남북한 협상	부분적 실시
－ 군사력 배치	용 「핫라인」개설) 실시거부	실시거부
정치적 신뢰구축 방안	제안	제안
경제적 신뢰구축방안	소극적	적극적
사회·문화적 신뢰구축 방안	제한적	제한적이나 적극적

그러면 信賴構築과 관련한 南北韓의 立場은 어떠한가? 〈表2〉가 예시해주고 있듯이 南北韓 兩側이 여러형태의 信賴構築 方案들을 제시한 바 있다.¹⁷⁾ 그러나 지금까지의 信賴構築提案들은 다분히 提案에 그친 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그 한 예로 政治的 信賴構築의 경우를 살펴보자. 南北韓 공히 不可侵條約 및 平和協定을 제안한 바 있지만 兩側이 완강히 그 受容을 거부하고 있는 實情이다. 더구나 政治的 信賴構築의 豫備段階로서의 南北議會協商이라든가 頂上會談이 失敗로 돌아갔다던가 아니면 아직도 膠着狀態에 있다는 사실은 政治的 信賴構築의 基本的 限界를 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經濟的 信賴構築도 큰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南韓側은 機能的 統合理論에 根據하여 經濟交流를 통한 信賴構築에 心血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88년 정주영 현대그룹會長의 訪北과 金剛山共同開發合意를 起點으로 하여 民間部分에서의 對北 經濟協力 可能性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北韓側이 現代와의 經濟協力을 일단 白紙化시킴으로 해서 民間채널을 통한 經濟的 信賴構築의 可能性 역시 크게 약화되었다. 社會·文化的 信賴構築 역시 踏步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餘他 分野에 비해 社會·文化 分野에 있어서 南北交流는 괘목할 만한 進展을 보여 왔다. 北韓側이 南韓側 水災民에 대한 救護品 供與, 비록 制限的이긴 하지만 離散家族의 再相逢, 그리고 南北藝術團의 交換등은 이를 단적으로 立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文化的 交流가 軍事的 信賴構築에 미치는

17) 南北韓 信賴構築方案에 관해서는 國土統一院, 「南北韓 統一方案 및 主要提議 比較」; 李達坤, “軍縮理論에 입각한 南北韓 軍縮協商 代案研究”; Asada,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East Asia”; Ahn, “Arms Control Proposal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ir Implication for Korean Security.”

波及效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社會·文化分野에서의 交流마저 膠着狀態를 보이고 있어 非軍事的 信賴構築의 根本的 限界를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軍事的 信賴構築에 있어서도 별다른 突破口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葛藤 管理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南韓側이 北韓側보다 軍事信賴構築에 더욱 積極的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南韓側은 유럽형 信賴構築 方案을 公式 政策으로 採擇하고 이의 實現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⁸⁾ 이에 앞서 韓國과 美國은 1982년 이래로 軍事作戰 및 訓練의 事前通知를 一方的으로 취해오고 있다. 비록 事前通知가 韓美合同軍事訓練에 제한되고 있긴 하지만(즉, 팀스피리트) 訓練에 앞서 軍事訓練의 目的, 參觀兵力規模, 그리고 作戰 및 訓練 開始日 字들을 北韓側에 事前通報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韓美兩國은 北韓側에 軍事訓練時 參觀人團을 派遣할 것을 요청해 온 바 있다. 韓國과 美國側은 事前通知와 參觀人團 派遣要請을 통해 韓·美合同軍事訓練이 侵略的意圖가 없다는 것을 계속 천명해 오고 있으나 北韓은 이러한 提案을 一方的으로 默殺하고 있다. 그 이유는 南韓과 美國의 軍事信賴構築提案을 수락할 경우, 이는 駐韓美軍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동시에 韓美合同軍事訓練의 正當性을 스스로 自認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事前通報와 情報共有가 南韓과 美國側에 의한 一方的 措置로서 軍事信賴構築에 큰 效果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 分野에서는 다소 進展을 보여왔다. 비록 南北協商用 行政電話이긴 하지만 板門店에 架設된 直通電話는 일단 유사시 「에스컬레이션」을 防止하

18) 한국일보, 1990年 4月 20日字

는데 效率的으로 利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軍事配置問題를 중심으로 한 信賴構築 노력은 아주 미미한 實情이다. 非武裝地帶를 軍事配置上 信賴構築의 한 微表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이는 休戰協定の 結果에 불과하다. 최근 南北韓 공히 緊張緩和의 한 方案으로 非武裝地帶의 效率的 軍事管理를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實現可能性이 전혀 없다 하겠다. 이와 별도로 北韓側이 제시한 「韓半島 非核地帶化」도 軍事配置의 調整을 통한 信賴構築努力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南韓이나 美國側은 冷淡한 反應을 보여왔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南北韓 信賴構築은 持續的 膠着狀態를 보여왔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어떤 원인들이 南北韓 信賴構築과 緊張緩和를 阻害하고 있는가? 원래 信賴構築方案은 유럽地域을 對象으로 하여 構想된 것이다. 유럽형 信賴構築은 다음 다섯가지 기본 假定들을 前提로 하고 있다.

첫째, 強度높은 威脅認識이 存在해야 한다.

둘째, 信賴構築當事者들간에 “侵略”의도가 없어야 한다.

셋째, 信賴構築當事者들간에 어느정도의 軍事的 勢力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네째, 政治·領土上 獨立을 相互間 認定해야 한다.

다섯째, 두개의 블럭體制를 國際政治의 現實로 認定해야 한다.¹⁹⁾

바꾸어 말하면 效果的인 信賴構築은 上記 다섯가지 前提條件들을 滿足시킬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 葛藤現實을 客觀的으로 조명할 때 이 다섯가지 前提條件중 오로지 한가지만을 滿足시키고 있다. 즉, 南北韓 공히 強度

19) Mark and Keal,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East Asia.”

높은 軍事緊張과 그에 따른 威脅認識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타 前提條件들은 전혀 充足되지 못하고 있다. 그 한 例로 南北韓 공히 平和協定 이다 不可侵條約이다 하는 것을 수시로 提案한 바 있지만 이들이 額面 그대로 受容되어 拘束力있는 雙務協定으로 締結된 적이 없다. 이는 아직도 雙方 모두가 潛在的 侵略意圖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苛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計劃된 侵略意圖에 의해 發生되는 戰爭이 安保問題로 尊屬되는 한 信賴構築은 不可能 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信賴構築은 誤認과 誤判에 따른 戰爭可能性을 極小化 하려는 努力이기 때문이다.

軍事力 均衡面에서도 南北韓間 信賴構築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南韓政府의 公式的 立場은 北韓 軍事力이 南韓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하고 있는 反面에 北韓側은 南韓側 軍事力이 壓倒的으로 優勢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北韓側 評價는 現實的으로 說得力을 갖는다 하겠다. 왜냐하면 南韓내에 美軍이 駐屯하고 있을 뿐 아니라 駐韓美軍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戰術核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主觀的, 價値介入的 軍事力評價가 지배하고 있는 이상 信賴構築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다.²⁰⁾

南北韓의 主權問題에 대한 相馳性 역시 유럽형 信賴構築方案을 韓半島에 適用시키는데 커다란 障礙物로 登場하고 있다. 南北韓은 상당히 獨立主權國家로

20) 南北韓 軍事力 評價에 대해서는 이 영희, “南北韓 戰爭遂行能力의 比較評價,” 「사회와 사상」 제 1 호, pp.140-166; 오관치, “南北韓 軍事力 比較,” 「월간 군사비전」, 제 6 권 7 호, pp.30-32; Young-sun Ha, “The Korean Military Balance : Myth and Reality (Seoul : Korean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Chung-In Moon and In-Taek Hyun, “Muddling through Security, Growth and Welfare : The Political Economy of Defense Spending in South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Washington, D.C. April 9-12, 1990.

認定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의 南北韓 體制가 統一에 이르는 過渡期的 政府라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다. 北韓은 南韓을 美國의 傀儡集團으로 認識하고, 南韓 역시 北韓을 蘇聯의 代理人으로 상징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南韓의 일부 急進勢力들은 北韓과 政治的 共感帶를 形成하고 있는가 하면 南韓 또한 北韓內部에 存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民主勢力과의 連帶를 希求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社會勢力間的 政治的 相互連繫와 過渡期 性格의 政治體制는 效果的인 信賴構築을 어렵게 해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유럽형 信賴構築方案은 독립된 主權國家들간에 가능한 것이지 分斷國에서 발생한 痼疾의 社會葛藤의 管理에는 그리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두개의 軍事同盟體制에 대한 現實的 認定에 있어 南北韓이 相反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南韓은 北韓을 蘇聯의 軍事同盟國으로 認識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主體」라는 명분하에 獨自的 軍事路線을 見地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하여 韓·美軍事同盟體制의 解體와 駐韓美軍 撤收를 積極的으로 要求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南韓側은 美國과의 軍事同盟關係를 계속 維持하는 가운데서 信賴構築을 꾀하고 南北韓 紛爭管理의 方案들을 摸索하고 있다. 이와 같은 軍事同盟體制에 대한 南北韓 相馳性은 韓半島내의 信賴構築에 커다란 制約을 가하고 있다. 사실 유럽형 信賴構築方案이 NATO 對 WARSAW條約機構란 同盟構造下에 巨視的으로 構想되어 實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韓半島 軍事同盟體制에 대한 南北韓間的 異質的 認識은 信賴構築의 實現可能性을 한층 더 稀薄하게 해주는 요인이다.

이상의 論議를 기초로 할 때 “헬싱키/유럽형”信賴構築方案의 韓半島適用에
는 많은 제약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약들을 여하히 克服할
수 있는가? 效果的 信賴構築을 위한 先決事項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信賴構築과 紛爭管理는 여하히 接木되어야 하는가?

V. 結論：政策提言

국토는 分斷되어도 民族은 하나다. 하나의 民族에 가장 중요한 것은 民族의 生存이요 繁榮이다. 民族生存과 繁榮은 民族의 安保없이 不可能하다. 民族安保의 協定은 南北韓 紛爭의 해소라 하겠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통일은 目的 그 自體라기 보다는 韓半島 紛爭의 解消手段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現今까지 南北韓 紛爭管理는 昏迷와 彷徨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武力에 의한 葛藤抑制가 支配的인 葛藤管理方案으로 굳어져 왔던 것이다. 軍事抑止論理를 골자로 한 葛藤抑制方案은 南北韓間에 軍備競争을 尖銳化시켜왔고 高強度 軍事緊張을 지속시켜 왔다. 이러한 紛爭狀況에서 信賴構築을 摸索하고 平和的 葛藤管理를 定着시키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惡循環의 수렁으로 치닫고 있는 南北韓 葛藤의 現象을 打破하고, 平和共存과 統一의 轉換點을 마련하기 위한 몇가지 政策代案들을 結論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南北韓은 韓半島 葛藤體系내에 복잡미묘하게 자리잡고 있는 “美國問題”를 先決해야 한다. 美國問題의 先決에 必須的 要素는 “駐韓美軍”問題의 解決이다. 駐韓美軍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없이 南北韓 信賴構築이나 平和的 紛爭管理는 어렵기 때문이다. 駐韓美軍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信賴構築과 紛爭 解消를 어렵게 해주고 있다. 南韓側의 경우 駐韓美軍이 있음으로 해서 效果的 軍事抑止가 가능하겠지만 北韓側은 駐韓美軍을 모든 問題의 根源으로 把握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駐韓美軍 때문에 南北韓 軍事均衡이 깨지고 心理的 不

信과 敵對感이 있을 뿐 아니라 韓半島問題의 自主的 解決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駐韓美軍 問題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南韓側으로서는 두가지 代案을 考慮할 수 있다. 그 첫째는 駐韓美軍의 存續與否에 대한 國民投票를 실시하는 일이다. 그 결과가 여하하던 자유로운 國民投票는 駐韓美軍問題에 대한 南韓政府의 正統性을 確立시켜 줄 수 있다. 國民的 合意가 撤收로 歸結되면 北韓側은 더 이상 南韓政府를 美帝國主義의 傀儡集團으로 糾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북간 平和定着協商 回避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國民投票의 結果가 繼續 駐屯으로 判明될 경우도 北韓은 駐韓美軍 問題를 더이상 批判의 對象으로 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事項은 駐韓美軍의 지위와 役割에 대한 國民的 意思를 묻고 集約해야할 歷史的 時間대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駐韓美軍을 더 이상 기정 사실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²¹⁾

두번째 代案은 南韓政府의 外交政策上 발상 전환을 基本前提로 삼는다. 즉 北韓側이 主張하고 있는 「南北韓 및 美國間 三者協商」을 積極的으로 受容하자

21) 駐韓美軍의 法的地位는 아직까지도 不分明하다. 원래 1950년 韓國戰爭勃發時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유엔軍參戰派遣 決議案 採擇으로 美軍이 派遣되었으나 그 후 「韓美相互防衛條約」締結과 더불어 永久的 性格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駐韓美軍」問題에 대한 國民投票發議는 세심한 法律的 檢討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클라크」空軍基地 및 「수빅만」海軍基地 駐屯延長에 대한 필리핀에서의 國民投票 開催論議는 韓國에 많은 示唆點을 줄 것으로 豫想된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事項은 「駐韓美軍」撤收에 대한 國民投票가 對美 그리고 對北韓 協商의 도구는 될지언정, 國內政治上 「쇼크」요법으로 惡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駐韓美軍 撤收에 最近 論議로는 Tae-Hwan Kwak, "The Reduction U.S. Force in Korea and Inter-Korean Peace Process", Paper Presented at the 31st Annual Conven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Washington, D.C. April 10-14, 1990 參照.

는 것이다. 그리고 「三者協商」의 주요의제를 駐韓美軍의 段階的撤收로 하자는 것이다. 신데땅뜨의 대두, 美國의 財政危機, 그리고 新海上戰略을 골자로한 美國의 太平洋 防衛戰略등 一聯의 變化를 考慮할 때 駐韓美軍의 減軍 또는 撤收는 既定 사실이라 하겠다.²²⁾ 이미 美國政府는 1995년까지 駐韓美軍의 三段階 減軍計劃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駐韓美軍 撤收란 잇슈를 對北平和協商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內外的 與件들이 成熟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관련 두가지 補助戰略이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韓國이 外交的 機先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바꾸어 韓國側이 먼저 駐韓美軍의 段階的 減縮이나 撤收를 要請해야만 이를 對北協商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美國의 減軍計劃에 受動的으로 임할 경우 駐韓美軍 撤收란 협상카드는 그 效力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補助戰略은 이미 着手되고 있는 「韓·美 減軍協商」에 北韓側을 옹저머로 參觀시키는 方案이다. 既存의 心理的 不信과 반목을 감안할 때 北韓側은 駐韓美軍의 減軍과 그에 따른 의도를 額面 그대로 受容할 可能性이 극히 微弱하다. 따라서 “투명성”이란 信賴構築의 目標을 위해 北韓側을 韓美減軍協商에 招請하여 南韓側의 참된 意圖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서 北韓側을 南北軍事會談으로 끌어들이고 軍事的 信賴構築의 基盤을 造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美國 問題”의 해결과 關聯하여 南北韓은 공히 韓半島問題를 周邊 強大國의 力學關係에서 분리시켜야 할 것이다. 強大國의 戰略的 相互作用이 韓

22) Ronald D. McLaurin And Chung-In Moo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1989)과 Tae-Hwan Kwak의 上揭書 參照 바람

半島의 運命을 좌우한다는 勢力均衡決定論에서 벗어나야만 南·北韓 紛爭을 效果的으로 解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冷戰體制는 서서히 退潮하고 있고 周邊安保環境은 韓半島 問題에 決定的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強大國들은 韓半島問題로부터 벗어나려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Kenneth Waltz가 指摘했던 바 처럼, 紛爭關聯 當事者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戰略的 不安定이 高潮되고 葛藤解消의 可能性은 稀薄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勘案, 南北韓은 가능한 強大國과 같은 外勢의 개입을 排除하고 兩者間 合意를 통해 葛藤解消의 主導的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세제, 筆者는 앞서 南北韓 葛藤狀況을 “痼疾的 社會葛藤”의 한 類型으로 定義내린 바 있다. 痼疾的 社會葛藤의 管理에 가장 큰 制約要因은 葛藤當事者間의 排他的 認識構造이다. 相互排他, 拒否, 歪曲, 先入見, 그리고 偏狹性등은 痼疾的 社會葛藤의 解消를 構造的으로 沮害한다. 이같은 狀況하에서 紛爭當事者間에 雙務的 協議를 통해 紛爭解消의 可能性을 摸索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하겠다. 따라서 제3자 개입은 必然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현재 시도하고 있는 美·蘇·中·日등 周邊 強大國이나 國際機構의 개입을 통한 仲裁努力은 效果面에서 커다란 限界가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이들 外勢介入은 價值中立的이 아니고 自國의 利益과 關聯하여 紛爭 仲裁를 유도하기 때문에 窮極的으로 紛爭妥結이나 解消를 圖謀하는 것이 아니라 紛爭過程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수도 있다. 따라서 南北韓 政策決定者들은 진정으로 價值中立的인 제3자 개입·중재를 통한 葛藤解消方案들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最近에 몇가지 革新的인 葛藤解消方案들이 提示되고 있다. John

Burton의 「統制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葛藤解消方案, Azar과 Burton의 「國際 葛藤解消促進위크샵모델(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facilitation model)」, 그리고 McDonald와 Monteville의 「Second track diplomacy」등은 참신한 제 3자 개입 모델들로서 고려할만 하다 하겠다.²³⁾

네째, 原論的인 論議지만 序論에서 지적했듯이 南北韓紛爭과 統一의 相關關係에 대한 보다 分析的理解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現今까지의 南北關係 研究는 分斷과 統一에 대한 感想的, 當爲論的, 그리고 방책론적 論議에 置重되어 왔다. 그러나 分斷과 統一을 잇는 決定的 變數로서 南北韓 葛藤狀況에 대한 體系的 研究는 缺如되어 왔다. 다시 強調하거니와 南北韓 葛藤狀況은 分斷의 原因을 除去하고 統一을 성취하면 自動的으로 解消될 수 있는 附隨的 變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南北韓 葛藤의 性格을 深層的으로 이해하고 그 管理方案들을 多角的으로 모색할 때만이 統一의 可能性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國防部 못지 않게 統一院도 南北韓 軍事對決構造 및 그 管理方案에 대한 體系的 研究에 많은 關心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이 설립되는 統一問題研究所의 研究主題設定에 있어 이점이 反映되어야 한다고 思料된다.²⁴⁾

23) Azar and Burton,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Azar,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J.W. McDonald, "Guidelines for Track Two Diplomats," Peace in Action(March 1988), pp. 10-14; J.V. Montrille, "The Arrow and the Olive Branch: A Cake for Track Two Diplomacy," in D.B. Bendahmane and J.W. McDonald (eds.), Conflict Resolution: Track Two Diplomacy(Washington, D.C: Foreign Service Institute, U.S Department of State, 1987)

24) 南北韓葛藤構造의 存在論的, 認識論的, 方法論的, 規範論的 그리고 政策論的 側面에 대한 概括的 論議는 文정인, "南北韓 紛爭研究總點檢 및 새研究方向 摸索," 前揭書 參考바람.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政策的 提言이 아니라 存在論的, 認識論的 問題提起이다. 이제 우리는 南北韓 葛藤의 存在論 性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省察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南北韓은 무엇 때문에 대치하고 있는가? 現實主義論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國家利益의 極大化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強大國들의 代理戰爭을 南北韓이 遂行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執權 爲政者들의 體制利益을 위한 葛藤인가? 이 모든 主張은 오로지 眞實의 한 斷面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타 國家間, 또는 國家內 葛藤과는 달리 南北韓 葛藤은 國家利益과 같은 制限된 物質的 價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공급이 무한한 社會的 價値(즉 相互認定, 戰爭의 恐怖에서 벗어난 共生의 論理, 理念的 排他性)에 대한 相互不信과 誤解에서 문장의 痼疾化가 배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葛藤의 存在論的 性格에 대한 本質的 發生 전환이 先行되어야만 그 效果的 管理가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第 3 分科 한민족공동체와 國際關係

9. 韓國의 UN 加入

吳 公 丹(RAND研)

目 次

I. 序 文	213
II. 現在의 狀況	214
III. 戰 略	216
IV. 韓國의 平和와 自由에 있어서 UN의 役割	226

I. 序 文

南北韓의 유엔加入이란 주제는 研究者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있는 주제가 못 된다. 어떤 意味로는 대단히 단순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當面한 위치가 A라고 한다면 남북韓의 同時加入이나, 또는 남韓의 單獨加入은 B라고 할 수 있는데 A와 B를 연결하는 線은 똑바른 직선이라고 하겠다. 이 직선은 모스크바와 북경을 통과하는데, 그 이유인즉 유엔安保理事會의 상임위원국인 蘇聯과 中國의 동의를 있어야만 韓國의 가입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간결하게 이제까지 同時加入을 반대해 왔으며, 加入여건을 形成하기 위해서 남韓에 의해 제시된 여러가지 提案들은 평양에 의해 여지없이 反駁을 당하고는 하였다. 이런 까닭에 가장 단순한 물음은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이 兩大共產主義 國家들이 남韓의 가입을 同意하느냐는 것이다.

하나의 단순한 幾何學的 모형을 본받아 이 論文은 다음과 같은 副題들을 다루고자 한다: (1)현재의 狀況: B의 觀點(유엔가입국자격 획득)과 관련해서 현재 韓國이 서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2)戰略: 남韓의 유엔加入同意를 얻기 위해 소련과 중국을 說得하려면 남韓은 어떤 線을 따라 B에 이르기 위해 旅行을 계속할 것인가?

II. 現在의 狀況

최근의 動向 중 세가지가 남한의 유엔加入을 성사시키는데 機會를 제공하는 듯 보인다. 첫째는, 東西의 세계적인 데탕트의 화해무드가 보다 平和的이며 서로를 받아 들일 수 있는 外交的 분위기를 창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南韓과 社會主義國家들사이의 관계가 점점 改善되어 간다는 점이다. 셋째는, 최근의 外交攻勢와 國內의 경제, 정치적 성공의 결과로 韓國이 國際社會에서 탄탄한 명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外交政治를 추구할 능력에 있어 自信心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自主 外交 하에서 유엔의 單獨加入은 점차 진실한 可能性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유엔 會員國들의 관점에서 살펴 본 韓國의 현재 위치는 어떤가? 1989년 9월에 개최된 第44次 總會期間中 무려 50餘個國이 한국의 加入을 支持한다고 표명하였다. 이 50餘個國 중에서 특히 새로운 支持者 셋이 포함됐다. 그들은 즉 인도, 오스트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였다. 인도는 역사적으로 南北韓에 대해 소위 “균등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等距離 外交를 펼쳐왔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오히려 南韓보다 北韓에 더 가까웠다. 나이지리아 역시 인도와 같은 立場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서울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支持는 아주 의미가 깊은데, 그 이유인즉 나이지리아가 非同盟 아프리카 國家들사이에서 두 번째의 指導者的인 입장때문이다.¹⁾

討議와 戰略計劃을 짜기 위한 비공식 무대로 최근 유엔內에 작은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 모임은 영국, 캐나다, 불란서, 일본, 그리고 한국의 代表들로 구

1) 「한국일보」, 1990. 3. 10, p.10.

성되었다.²⁾ 예상컨대 이 모임은 유엔總會에 새 가입국의 申請書를 제출하고 안하고를 決定하는 책임을 진 15個國으로 구성된 安保理事會에 어느 정도 影響력을 행사하리라고 기대된다. 韓國政府는 다섯번 加入申請을 냈었다. 1949年과 1951年의 경우엔 소련이 拒否權을 사용했었다(이 때 중국의 자리는 대만이 차지하고 있었다). 1961年, 1974年 그리고 1975年의 경우엔 安保理事會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年代의 상황은 變化하고 있는 듯 보인다. 蘇聯은 이제 곧 남한과 外交關係를 수립할 단계에 들어간듯 하며, 蘇聯과 中國 둘다 사실상의 두개 韓國政策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유엔加入에 대한 이 두나라의 支持를 얻기 위해 이 향상된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 만일 蘇聯과 中國이 北韓의 소망대로 拒否權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면 常任理事會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棄權을 할 수도 있다.³⁾

南韓이 밟아야 될 가장 명백한 다음 단계는 蘇聯과 中國과의 외교수립이다. 그리고 두말할 나위 없이 이 外交樹立이 남한의 가장 중요한 當面課題이다. 흥미없는 戰略上的 한가지 의문은, 과연 한국이 소련, 중국과의 經濟와 外交關係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投票를 얻어내기 위해 어느정도의 重量을 이 得票過程에 두어야 하는 점이다.

2) 「The Korea Herald」, 1990. 3. 31, p. 1.

3) 「The Korea Times」 (LA 版), 1990. 2. 26, p.10.

Ⅲ. 戰 略

南韓의 새로운 유엔 戰略

올해 3월 서울에서 개최된 韓國의 在外公館長會議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수정된 外交政策을 천명하였다. 이 정책에 의하면 4大強國에 의해 南北韓의 交叉承認은 더이상 당면한 목표가 아니었다. 동시에 이제까지 標榜되어왔던 남북한의 유엔同時加入도 수정되었다. 外務部의 第1次官補인 이정민氏는 북한과의 제획과 무관하게 서울은 한국의 單獨加入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우리의 유엔가입과 북한의 유엔가입을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의 유엔가입이 반드시 북한의 가입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⁴⁾

이 새政策은 남한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外交目的을 추구하게끔 할 수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南韓은 소련과 外交를 수립할 뜻을 보이며, 이를 뒤따라 중국도 그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교가 반드시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과 일본에 의한 北韓의 交叉承認의 전제조건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올해 가을에 개최될 유엔總會에 대비해 한국은 유엔의 가입을 목표로 全方位 攻勢를 펼칠 작정이며, 적어도 1992년까지는 會員國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⁵⁾

3월의 公館長會議에서 外務部長官 최호중씨는 다음의 세가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韓國外交 방향의 윤곽을 그려내었다: (1) 모스크바와 北京과의 外交

4) 「中央日報」, 1990. 3. 10, p.1.

FBIS-EAS-90-048, 1990. 3. 12, p.30에서 인용

5) 「東亞日報」, 1990. 3. 3, p.1.

樹立;(2)유엔加入 그리고 (3)북한의 開放과 統一을 향해 문을 열도록 계속 설득 노력⁶⁾

蘇聯에 대한 접근

1990년 2월 日本의 마이니찌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스크바에 소재한 世界經濟國際關係研究所(IMEMO)의 일본과 한국정치 연구 부서의 부장인 게오르기 쿠나제는 모스크바의 韓國政策에 대한 “新思考”를 논의하였다.⁷⁾ 그는 다음과 같은 요지를 설명하였다:(1) 모스크바와 서울간의 外交樹立은 시간문제다;(2)모스크바와 平壤 關係는 질적으로 變化하고 있다;(3)모스크바는 서울의 單獨加入을 반대하지 않는다;(4)북한은 核武器製造의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그리고(5)모스크바와 서울사이의 關係改善이 반드시 평양과 동경, 워싱턴간의 關係改善 속도와 직관된 것은 아니다.

1990년 4월 이번엔 IMEMO의 소장 블라들렌·마르티노프와 쿠나제는 東亞日報에 기고한 “21세기를 향한 한반도 상황의 전망”이란 글에서 세가지 점을 다루고 있다⁸⁾.(1)國際法の 원리에 입각하여 남북한은 가능한한 빨리 상대방을 正統主權國家로 인정해야 된다;(2)두개 韓國은 국제조직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第3世界와 수교를 맺을 권리가 있다.;(3)두개 韓國은 솔직하게 현재

6) 「연합통신」, 0700 GMT, 1990. 3. 2

FBIS-EAS-90-042, 1990. 3. 2, p. 32에서 인용

7) 「毎日新聞」, 1990. 2. 17, p.7.

8) Vladlen Martynov와 Georgiy Kudnadge 공저, “21세기(잘못 오역된 것임)의 끝에서 한반도 상황을 전망한다.”

「東亞日報」, 1990. 4. 1, p.7.

FBIS-EAS-90-067, 1990. 4. 6, pp.20-22에서 인용

로서는 그들의 分斷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정함으로써 統一에 대한 진정한 作業을 시작해야 된다.

이 논문에 게재된 가장 명백한 메시지는 蘇聯專門家들이 이제는 한반도의 現實狀況을 그대로 인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認知했다는 점이다. 南韓과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것이 모스크바에게도 北京에게도 合理的인 선택같이 보인다.

모스크바는 이 결정을 내린 것 같이 보인다. 모스크바 방문중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는 등 대단히 뉴스의 脚光을 받은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서 金泳三씨는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가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된다는 것이다.” 金泳三씨를 동반한 隨行員의 정보에 따르면 蘇聯은 남한의 單獨加入이나 북한과의 同時加入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⁹⁾

최근 서울의 聯合通信은 문선명목사와 일행이 고르바초프와 가진 모임에서 고르바초프가 “올해 내로... 완전한 關係正常化가 실현될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¹⁰⁾ 동시에 蘇聯의 대외경제담당 외무장관인 블라디미르 페트로브스키는 소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소련은 南韓과의 外交樹立을 어떤 다른 條件과 연결지을 의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¹¹⁾

현재까지 서울과 社會主義陣營國家들사이의 관계는 숨가쁜 진전을 보여왔

9) 「The Korea Times」, 1990. 3. 30, p.1.

FBIS-EAS-90-062, 1990. 3. 30, p.17에서 인용

10) 「연합」 1143 GMT, 1990. 4. 12

FBIS-EAS-90-071, 1990. 4. 12, p.18에서 인용

11) 「연합」 0302 GMT, 1990. 4. 12

FBIS-EAS-90-071, 1990. 4. 12, p.18에서 인용

다. 韓國과 蘇聯 양쪽 모두에서 關係가 더이상 향상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時間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A와 B사이의 선은 직선일지 모르나, 반드시 짧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전의 적, 특히 현재 敵對國의 친구(소련과 평양과의 우정이 계속될 경우)와 관계를 수립한다는 일은 많은 時事性을 내포한 큰 짐을 지는 일이다. 이 論文의 토론 중에서 이 사실들을 다룰 공간은 없지만, 이런 함축성들이 外交樹立을 위해 치달리는 것을 牽制하고 있다고 보인다. 보다 조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양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중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韓國의 外務長官 최호중씨는 서울이 “韓國 代表團의 성공적인 蘇聯訪問이 전통우방국인 美國과 日本과의 관계를 흔들거리게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²⁾ 그리고 지난 3월말 코리아 헤럴드 신문은 현재 소련과 한국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뜨겁게 과열된 분위기”라는 것을 우려한 外務部當局者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蘇聯과 같이 거대하고 경험 많은 國家를 다루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操心性을 다해야 된다.”고 쓰고 있다.¹³⁾ 그 외 다른 新聞들도 현재 서울이 모스크바에 다가가는 速度와 強度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스크바는 의심할 여지없이 평양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아무런 물결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 北韓의 중앙통신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리 인민의 친구인 蘇聯은 우리 人民의 적과 친구가

12) 「한국일보」 정광철기자의 기사, 1990. 3. 30, p.3.

FBIS-EAS-90-067, 1990. 4. 6, p.18ff에서 인용

13) 「The Korea Herald」, 1990. 3. 29, p.2.

FBIS-EAS-90-061, 1990. 3. 29, p.19에서 인용

되어서는 안된다.”¹⁴⁾ 蘇聯 外務省의 대변인 유리 그레미츠키크는 北韓의 경고에 대한 질문을 던진 記者들에게 “현재 당장 한국과 수교하는 것은 어느정도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그 문제는 “두나라의 어느 한쪽에도 최우선과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¹⁵⁾ 동시에 이즈베스치야지의 副主幹인 이골 고렘브콥스키이는 外交正常化와 交換이 “좀더 천천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北韓의 反對가 명백한 것에 대해 그의 見解를 제시하면서 똑똑하게, “이 문제는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대신 이 문제는 국가사이의 관계다. 개인적으로, 나는 북한에 매료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¹⁶⁾

中國에의 접근

그러면 韓國의 UN 單獨加入에 대한 中國의 견해는 어떠한가? 중국이 韓國 動亂中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軍隊를 파병한 이래, 지난 40년동안 中國國民은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支持를 드러내왔다. 1989년 4월 天安門사건이 발생한 몇달 뒤 中國 外交部의 대변인은 중국이 한국의 UN加入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安保理事會에서 拒否權을 행사할 것을 시사하

14) 「KCNA」 0407 GMT, 1990. 4. 10 SKNDF(한민전) 성명을 인용한 것임.

FBIS-EAS-90-069, 1990. 4. 10, p.31에서 인용

15) 「東亞日報」, 1990. 4. 7, p.1, 로이터-연합통신을 인용한 것임. FBIS-EAS-90-068, 1990. 4. 9, p.39에서 인용

16) 「한겨레신문」, 1990. 4. 5, p.1 로이터-연합통신을 인용한 것임.

FBIS-EAS-90-068, 1990. 4. 9, p.39에서 인용

였다. 北京의 이와같은 오지부동한 자세는 아마도 臺灣問題를 다루는 그들 자신의 統一政策에 근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¹⁷⁾

올해 4월초 南韓이 모스크바에서 벌린 外交 쿠데타의 물결을 따라 홍콩의 新聞들은 다음과 같이 언명한 라오닝성의 最高官吏를 引用 보도했다: “남한과 북한의 統一에 대한 동의가 있는 후에 서울과 公式關係를 맺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적어도 남과 북의 統一展望이 확실한 후에 가능하다”.¹⁸⁾ 이 말은 平壤의 노선을 따른 것이다.

한편 北京의 자세에 유연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證據들이 있다. 아마도 중국의 한국은 하나다라는 政策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어 가는 듯 하다. 올해 3월 28일 中國 外交部長은 한국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南北韓의 통일은 반드시 중국 자신이 생각하는 中國統一 計劃과 동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와같은 중국 高位官吏가 공공연히 統一에 접근하는 한국과 중국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相異點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發言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統一政策이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채택된 이래, 이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4強이 두개 한국의 交叉承認을 하는 것을 반대시켜 왔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이런 변화는 韓國問題에 대한 柔軟性的의 조짐으로 받아들여진다.¹⁹⁾

17) 하지메 이즈미, “동구의 바람이 북한에도 불 것인가?”

「월간중앙」, 1990. 2. pp.374-381.

FBIS-EAS-90-035, 1990. 2. 21, p.20에서 인용

18) 「The Korea Herald」, 1990. 4. 3, p.2.

FBIS-EAS-90-064, 1990. 4. 3, p.24에서 인용

19) 박두복, “중국 한반도정책현실화 예고”

「한국일보」, 1990. 4. 1, p.20.

北京과 서울사이의 非政治的인 교류는 계속 증진될 것 같고, 이 지속성은 북경의 현재 強硬派政權下에서도 계속될 듯하다. 왜냐하면 경제, 문화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상호의 關心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의 韓國과 中國의 貿易去來額은 미국 환율로 \$3.14 billion인데, 이는 韓國과 蘇聯의 \$600million에 비해 상당히 큰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가을 9월에 북경은 아세안계임을 개최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國家間의 지역협조가 중요하다. 서울은 이미 無料로 1988년 서울 올림픽 경기에서 사용된 안전검사장치를 빌려줄 것을 약속했다.

이런 맥락하에서 최근 홍콩 이코노믹 데일리지의 기사는 外交官들이 제공한 情報를 인용하면서 “한국과 중국정부는 북경의 아세안계임이 열릴 가을경과 내년초사이에 중요한 동의에 이를 것을 기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록 이 報道는 그 관계가 반드시 領事級이상이라는데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고는 있다.²⁰⁾ 아마도 같은 出處에서 나온듯한 인상을 주면서 韓國記者 역시 자신의 “(중국)외무성 고위관리의 정보를 얻었다고”하면서, “아세안계임에 참가할 한국 선수들을 위해 비자제공, 안전보장, 서비스를 하는 목적에서 임시 영사 사무”가 開設될 것이며, “고위외교관들의 이런 교환과 영주는 임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 中國官吏는 보도에 의하면 그와 같은 領事關係는 “자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식 언명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²¹⁾ 올림픽경기가 한국의 外交關係

20) 「동아일보」, 1990. 4. 4, p.2.

FBIS-EAS-90-068, 1990. 4. 9, p.43에서 인용

21) 「부산일보」, 1990. 3. 20, p.1.

FBIS-EAS-90-066, 1990. 3. 22, p.22에서 인용

에 끼친 눈부신 성과를 되돌아 보면, 中國이 아세안게임을 통해 한국과 부드럽게 관계를 樹立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은 족히 상상이 된다.

서울 역시 外國投資가 필요한 중국에게 서울과 公式關係를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 투자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韓國企業家들이 느끼고 있음을 잘 설득함으로써, 經濟를 무기로 이용할 수도 있다. 서울은 또한 金泳三씨가 북경에 가는 것을 마련함으로써 外交的인 추진동기를 희망하고 있다.²²⁾ 물론 이것이 실시되면 平壤에게 줄도할 동기가 될 것이다. 허나 점점 共產世界로부터 孤立되어가는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듯, 어느정도는 북한의 精神的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주 가까운 장래에 북경과 서울관계가 극적인 轉換點을 이룰 것을 성급히 바라서는 안된다.

北韓의 반응

남한이 共產主義 國家들과 수립한 外交關係에 대한 남북한의 태도와 반응을 注目해 보면 대단히 흥미롭다.(모스크바에서 기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南韓의 김영삼씨는 말했다.“만일 소련과 한국이 가까워지면, 이것이 바로 북한의 문을 열게 할 힘이 될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또한 남북관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²³⁾ 北韓 報道들은 같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만일 소련이 남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면, 이것은 바로 한국에 두

22) 「중앙일보」, 1990. 3. 30, p.1.

FBIS-EAS-90-062, 1990. 3. 30, p.22에서 인용

23) 「중앙일보」, 1990. 3. 19, p.3.

FBIS-EAS-90-056, 1990. 3. 22, p.22에서 인용

국가가 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다... 이것은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며, 나아가 해결할 수 없는 경험의 국면으로 상황을 진전시킬 것이다.”²⁴⁾

저울에 놓아보면 南韓의 견해가 좀더 사실적으로 보인다. 소련은 북한에 壓力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계속 그리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論旨는 바로 단순하게 “한번 노력해 보시오. 당신도 좋아할 것이요.”이다. 북한의 위치는 만일 한 國家가(북한) 어떤 국면을 否定的으로 정의한다면(예컨대, 통일을 막는 교차승인) 계속 부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根據한다. 확실한 것은 東西獨의 交叉承認과 유엔加入이 통일에 대한 그들의 所望을 막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交叉承認과 유엔加入은 통일에 대한 전망보다는 國際社會에서 가지는 한 국가의 名聲과 더욱 관계가 깊다. 統一은 교차승인과는 별도로 일어날 수도 있다. 평양은 북한이 아직도 國際的 孤立 속에서 허둥대고 있는 동안 남한이 최초의 國際的 目的을 성취하는 것을 참고 바라만 볼 수가 없다.

한편 북한이 유엔에 加入함으로써 유엔에 의해 불려올 만인의 주목을 아마 평양의 指導者들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벽에 이미 손으로 쓴 글귀가 있다. 북한은 피할 수 없는 局面으로 치달고 있다. 金氏의 모스크바 방문을 批判하면서 북한의 뉴스들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썼다.: “정상적으로 소련이 남한을 승인함으로써 두개 한국을 창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²⁵⁾

24) 「평양 국내방송」 014, GMT, 1990. 4. 6

FBIS-EAS-90-067, 1990. 4. 6, pp.10ff에서 인용

25) 「한국일보」, 1990. 4. 29

유엔問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가장 최근의 言及은 유엔에서 남한신문과 가진 면담을 통해 北韓外務官吏인 강석주의 입을 통해 나왔다.²⁶⁾ 강은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은 둘이 서로 상의해서 어떤 동의에 이룬 후에 다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북한이 끈질기게 反對해 온 동시가입 태도를 생각할 때 이 柔軟性은 놀랄만한 것이다. 물론 이 變化가 좀더 유연성을 향해 계속될지 또는 이 시기에 있어 유엔加入을 추진시키려는 4強의 태도에 물을 끼얹기 위해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또한 가까운 將來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양이 좀더 구체적인 提案을 들과나올 것인지도 아리송하다.

만일 남한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承認을 받을 경우 그래서 유엔에 가입할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의 提議는 위치를 마련해 둘 필요를 느낄 것이다. 북한이 이 提議에 씨나리오를 작성할 동안, 그들은 또한 중국이 유엔에서 남한에 대해 拒否權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소망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새 씨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유엔問題와 관련해서 두 한국사이에 일련의 대답을 要求함으로써 신속하게 그 外交的 力動力을 활용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전략은 서울로 하여금 板門店에서 북한과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임시위원회나 代表團을 조직하며, 동시에 유엔대표단을 관찰자의 자격으로 판문점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4強에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그 다음 段階는 會議日誌를 날날이 공개해서 관심이 있는 제삼자들 특히 유엔代表團이 이 토론을 적절히 評價하도록 해야한다.

26) 「한국일보」, 1990. 4. 29

IV. 韓國의 平和와 自由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

南北韓의 同時加入이나 남한의 加入을 맹렬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平和와 統一을 성취함에 있어서 유엔加入資格이 가지는 역할이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이 유엔의 加入國으로서 가져올 지혜를 납득하도록 해야된다. 적어도 韓國統一에 있어서 왜 유엔이 중요한 役割을 하는가에 대한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歷史的인 이유로서 유엔은 韓半島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한국 독립후 유엔은 統一韓國을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며, 다시 韓國戰爭이 발발하자 유엔은 한국에 平和와 統一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통일과 재건회(UNCURK)와 한국재건회(UNKRA)를 설립하였다.²⁷⁾ 비록 유엔이 韓國統一을 성립시키는데 실패하고 또한 유엔總會에서 간혹 韓國問題가 상정될 때마다 통일을 성립시키는데 번번히 실패했지만, 平和를 증진시키기 위한 유엔의 歷史的 使命은 분명히 한국 통일을 돕는 正統性을 가진다.

둘째, 유엔은 오늘날 토론과 토의의 舞臺를 제공한다. 전세계를 망라한 그 거대한 會員國들과 더불어 總會에서 거론되는 문제들은 국제적고려의 대상이 된다. 또한 유엔내의 사무실에서 거행될 南北間의 토론은 판문점의 딱딱한 회의장에서 제공되는 토론보다 더 有益한 분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南北이 모두 다시한번 그들의 運命이 타국에 의해 결정될 것을 우려하고

27) 김종한,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oblem of Peace in Korea," 제 3 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회의에 제출된 논문, 1987. 7. 21-23, 서울, pp.3-6.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적절한 舞臺에서 토론을 시작한다면 平和의 舞臺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組織의 후광을 업고 남북간의 많은 差異點들이 解消될 수도 있을 것이다.

10. 韓美 安保關係와 美國 國會의 調整

羅 鍾 五(홀린즈大)

目 次

I. 第 1 期(1950—'65)	231
II. 第 2 期(1965—'75)	235
III. 第 3 期(1975—'85)	237
IV. 第 4 期(1985—현재)	243

本 論文의 目的은 韓國과 美國에 關聯된 安保問題에 關해서 지난 40年間 美國의 議會의 反應을 記述하는데 있다. 筆者는 韓美間의 安保問題에 關해서 美國國會下院과 上院이 採擇한 措置들을 概觀적으로 記述하고 同時에 立法措置의 起源과 性質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背景의 資料를 提示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論文에 包含된 資料들은 參考資料的인 性格을 띠었다고 附言하고 싶다.¹⁾

I. 第 1 期(1950—1965)²⁾

이 時期와 그 후의 1970年 중반까지의 10年은 冷戰時期에 作成된 美國의 外交政策 즉 共產圈에 대한 견제정책이 原型的으로 適用된 時期라고 할 수 있다. 이 外交政策에 影響을 미친 몇가지 國內政治的 要素를 列舉하면 軍事的援助와 經濟的 援助의 적절한 配合에 關한 합의의 결여라든지, 外交政策에 關한 行政府와 立法附의 役割에 關한 意見의 不一致와 共產主義의 威脅이 根本的으로 歐羅巴에 있는지 亞細亞에 있는지에 關한 論爭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意見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1950年까지 國家要件에 關해서

1) Most of the sources used here are in Congressional Records, Committee Hearings, and similar governmental publications, including some of the key summary publications b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text is mostly collection of verbatim passages found in these sources, pieced together in chronological order. The usual scholarly credits and references to the sources of these verbatim quotations are omitted. Selected abstracts and quoted excerpts are mostly from the publications listed under U.S.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e below under Related Reading.

2) The Period division is wholly artificial.

두가지 緊要한 措置를 취했다. 하나는 北大西洋防衛機構의 設立이고 다른 하나는 相互防衛援助法案을 美國會上·下院이 相當한 多數의 支持票로써 通過시킨 것이다. 이 防衛援助法은 北大西洋防衛機構을 會員國을 비롯해서 共產主義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간주된다는 나라들(즉 터키, 희랍, 이란, 비올빈, 대만과 한국등)에게 軍事援助를 提供할 수 있는 法的 權限을 부여했었다.

1949년에 制定된 相互防衛法은 1951년에 相互安保法으로 代置되었고, 1961년에 이 法은 다시 外國援助法으로 變更되었고 이 法은 아직도 軍事援助프로그램을 規制하는 立法手段이 되고 있다.

韓國戰爭은 美國內의 安保問題에 관한 外交政策論爭에 잠정적인 合意를 創出하였고 많은 美國軍事專門家들이 5年以內에 있을 것이라고 豫言한 소련의 全面攻擊 등 全面戰爭에 대한 美國의 廣範한 代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中國의 韓國戰參戰으로 인해 조속한 勝利없이 戰爭이 繼續되자 美國國會는 漸次的으로 韓國戰의 樣相과 費用에 대해서 환멸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美國會內의 討論에서도 상이한 見解들을 나타내기 始作했었다. 또한 外國에 대한 行政府의 軍事援助要請額을國會는 삭감해서 確定지었다. 한편, 軍事원조프로그램(MAP)은 中國과 接境하고 있는 國家들(例. 韓國, 대만, 인도지나)에 대해서 보다 많은 額數를 充當하게 됨으로써 反中國共產主義的 性格이 더욱 分明해졌다. 韓國戰爭의 結果는 共產主義의 팽창은 美國의 軍事援助를 통해서 成功的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見解를 많은 사람에게 強調하게 되었다. 軍事停戰協定이 締結된 직후 美國은 韓美相互防衛條約을 1953年 10月 1日에 締結함으로써 韓國과의 安保關係을 公式化하게 되었다.

이 條約은 條約締結當事國은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어느 한쪽 締結當事國에 대한 武力攻撃은 自國의 平和와 安全에 대해 危險하다”고 간주하며 條約當事國은 “他國의 憲法節次에 따라서 共同의 危險에 對處하기 위하여 行動할 것이다”³⁾라고 規定되어 있다. 따라서 北韓의 武力攻撃을 방지하는 것이 韓國에 있어서의 美國의 基本的인 目的이 되었다.

相互防衛條約과 軍事防衛援助法에 의거해서 美國은 1955년부터 韓國에 대한 광범위한 軍事 및 經濟援助를 始作하였고 이러한 援助는 1970年代 初期까지 대체로 계속되었다. 1955년에 美國은 臺灣과의 相互防衛條約이라든지 SEATO를 창설한 마닐라 條約을 締結함으로써 亞細亞에 대한 美國의 公約을 擴張하였다.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韓國에서는 두가지 政治的 혼란이 야기되었다. 첫째는 1960년에 있는 全國적으로 전개된 大의인 示威 및 항의에 의해서 李承晚 大統領이 強制的으로 下野 당했고, 둘째는 民間政府를 韓國軍部가 전복한 것이다. 軍事政權의 수립과 더불어 韓國에 대한 美國의 軍事援助는 수년간 감축되었으며 外國援助 전반에 대한 美國의 接近方法에 變化가 일어났다. 10年間지속되어온 相互安保프로그램에서 軍事援助를 經濟援助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케네디 大統領의 要請에 呼應해서 美國國會는 많은 표차로 外國援助法을 1961년에 제정하였다. 그러나 케네디 大統領이 요청한 外國援助額은 美國國會에서 2年間 계속해서 삭감되었다. 1963년에 軍政을 4年間 延長시키려고 한

3)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UST 2368; TIAS 3097; 238 UNTS 199. Article III.

韓國軍事政權의 試圖에 대해서 美國은 反對의 壓力을 加했을 뿐만 아니라 韓國이 要請한 2,500萬弗의 追加 經濟援助要請도 拒絶했다.

궁극적으로 韓國軍事政權은 美國의 壓力에 屈服했고 선거를 實施함으로써 朴正熙 將軍을 大統領으로 選출했다.

II. 第 2 期(1965—1975)

이 10年間に 韓美關係에 몇가지 變化가 일어났다. 많은 아시아國家에서 증가하는 內戰과 不安은 아시아에 대한 美國의 態度를 變化하게 하였다. 越南戰爭은 從來에 共產主義·膨脹主義는 美國의 軍事援助에 의하여 견제할 수 있고 또 견제하여야 한다는 美國의 政策에 대한 의문을 낳게하였고 美國의 一般國民이나 國會의 意見도 그러한 政策을 繼續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 異論과 分裂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美國人들의 態도의 變化는 中國과 美國의 和解로 因해 더욱 增大되었다. 美國의 견제정책 支持者들은 韓國에 있는 美軍의 계속 駐屯을 包含해서 아시아에 있어서 強力한 美國의 입김을 계속 유지할 것을 主張하는 反面 점점 強力해지는 反對勢力은 美國軍隊와 이 지역에 대한 美國의 援助로 삭감할 것을 主張했다.

1969年에 美上院外交委員會는 폴브라이트議員에 의한 美國의 外國에 대한 安保協定도 公約(韓國에 대한 것을 包含해서)⁴⁾에 關한 一連의 公청회(청문회)를 가졌다. 이 공청회는 새로운 立法措置를 創出하지는 않았지만 美國의 아시아에 대한 安保援助에 초점을 맞추며 또한 駐韓國美軍의 계속 駐在와 必要性에 關한 論爭을 벌임으로써 後日 이 問題에 대한 立法措置를 취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4)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U.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Hearings, 91st Cong., 1st sess., Part 7, Feb. 24—26, 1969. Washington, U.S. Govt. Print. Off., 1970. p.240.

1969년에 宣稱된 “닉슨독트린”은 美國의 同盟國들이 自身들의 防衛를 위해 서 보다 큰 責任을 부담해야 한다고 強調하였고, 1971년에 尼克森政府는 韓國으로부터 美陸軍 2個師團중에 1個師를 撤收하기로 決定한 것 등은 向後 韓國에 대한 美國의 援助 및 軍事力의 상당한 감축을 豫告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韓國政府는 美國同盟國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 越南에 派兵하는데 同意함으로써 韓國에 대한 美國의 援助를 삭감하는 것을 困難하게 하였다. 韓國에 대한 원조를 감축하여야 할지 계속 해야할지를 決定짓지 못한 채 美國國會는 韓國에 대한 일단의 妥協點을 모색하였다. 즉 駐韓美軍감축, 經濟援助額 감축과 韓國이 要請한 軍事援助의 증가에 同意한 것 등을 列擧할 수 있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美國은 그 前이나 그 後의 5年間보다 많은 軍事援助를 韓國에 지원하였다.

Ⅲ. 第 3 期(1975年—1985年)

이 時期에 美國과 韓國과의 關係는 北韓의 攻擊을 防止하고 소련과 공산주의 팽창을 견제해야 한다는 美國外交政策의 關心이 남아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經濟 및 식량원조는 삭감되었으며 1980年代初에는 完全히 中斷되었다. 왜냐하면 1965年 以後의 韓國의 괄목할만한 經濟成長때문이었다. 따라서 지금은 美國의 對韓援助는 軍事援助 뿐이다. 美國議會는 이러한 援助에 대한 것을 決定하는 외에 1975年 以後 韓美兩國關係에 관한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問題는 카터 大統領의 駐韓美軍 撤收였다. 이 提案은 1976年の 大統領선거전에서 重要한 잇슈로 提議되었고 또한 韓國에 대해서 安保援助를 삭감 혹은 維持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政策問題를 正面으로 다룬 提案이었다.⁵⁾

이 提案을 한 理由로서 軍事的으로 韓國의 獨立性, 中國이 同盟國인 北韓에 대해 점차적 억제, 남북한간의 새로운 세력 균형, 그리고 韓國에 대한 미국의 防衛公約 등을 카터 行政府는 들었다. 비록 明示되지 않았지만 이 제안을 한 前後에는 越南戰에서 배운 教訓을 한국에 적용하므로써 人氣가 없고 國論을 分裂시키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戰爭에 美國이 介入하게되는 可能性을 감소시키려고 하였다.

美行政府의 官吏들은 越南戰 以後의 美國 國會의 분위기로 보아 카터의 駐

5) The Presidential Press Conference on March 9, 1977. New York Times, March 10, 1977.

韓美軍撤收案은 早速한 支持를 받아 낼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見解는 1974年 8月의 美下院軍事豫算委員會의 報告書와 1976년부터 駐韓美 第2 師團의 점차적 철수를 권고한 점에 미루어 무리가 아니었던 것 같았다.⁶⁾ 그러나 美國議會는 卡特 行政府의 철수계획에 대해서 否定的 反應을 보였고 美行 政府의 철군계획을 中斷 乃至는 修正하도록 壓力을 加했다. 美國國會는 일단의 公청회와 보고서 및 立法조치를 통해서 卡特 提案에 대한 관심과 反對를 表示하였다. 예를 들면 1978年 下院豫算委員會는 撤收계획의 意味에 관한 研究를 要請하였고, 下院軍事委員會는 撤軍政策을 제검토하기 위한 公청회(청문회)를 가졌으며 또한 下院軍事委·調査小委員會도 청문회를 가졌고 同 軍事委 人力 및 人員小委員會도 1979年 軍事豫算案과 관련해서 撤軍問題를 다루었다. 美國會의 調査行爲중에 가장 重要한 것은 上院外交委員會의 Glenn 議員과 Humphrey 議員의 報告書였다. 이 報告書는 1977年 8월에 韓國과 日本에 파견된 두개의 國會시찰단의 產物이었다. 上院外交委員會의 철군문제 公청회에 對備해서 發行된 이 報告書는 南北韓 軍事균형을 分析하였고 美軍철수의 영향을 調査했으며 韓國에 대한 美國의 經濟 및 軍事援助등을 검토하였다.⁷⁾

또 다른 하나의 研究調査書는 南北韓·軍事 балан스에 관한 美情報機關들의 推

6)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Fiscal Year 1975. Report to accompany H.R. 16243. House Report No. 93-1255, 93d Cong., 2d sess. Washington, U.S. Govt. Print. Off., 1974, p.38.

7)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Foreign Assistance and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U.S. Troop withdraw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 report of two separate study missions, August 1977. Committee Print, 95th Cong., 2d sess. Washington, U.S. govt. Print. Off., 1978, p.85.

定을 修正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修正에⁸⁾ 의해서 美軍撤收에 관한 意味를 분석했다.

이들 美國會 報告書들은 行政府로 하여금 撤軍의 正當性을 제시하게 하였다. 1978年 7月 26日 上院은 73:13으로 上院法案 3075-國際關係 援助法案을 通過시켰다. 이 法案은 퍼시修正案(81:7로 채택)을 內包하고 있었는데 이 修正案은 1982년까지 26,000名의 軍隊를 撤收하는 것은 “韓半島 地域의 軍事군형을 심각하게 깨트릴 危險性이 있으므로” 大統領은 向後 駐韓美軍撤收計劃에 관해서 國會와 協議할 것을 明文化하고 있다.⁹⁾ 上院에 따라서 下院도 8月 1日에 同一한 內容의 덜윈스키 修正案을 채택했다. 그러나 下院案은 보다 具體的이고 義務的인 條項을 內包하고 있었다. 즉 大統領은 向後 韓國에서 撤軍을 하기 120日前에 撤收효과에 관해서 報告할 것을 指示하였기 때문이다.

이 時期에 다른 두개의 問題에 대한 美國會의 調査가 同時에 進行되었다. 즉 박동선 사건과 韓國의 人權問題였다. 前者는 주로 下院에 公的行爲基準委員會와 上院의 倫理委員會에서 취급되었고 새로 임명된 레온, 자월스키 特別檢事に 의하여 調査되었다. 이 調査의 結果는 가장 미미한 처벌의 형태를 끝냈다. 즉 下院의 경우 25명의 關聯指目된 議員中에서 3名만이 公式的인 견책을 받았고, 上院에서는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下院의 구속

8)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Impact of intelligence reassessment on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Committee Serial No. 96-16, 96th Cong., 1st Sess. Washington, U.S. Govt. Print. Off., 1979, p.101.

9) Foreign military aid bill [Debate and vote in the Senate] Congressional Record [daily ed.] July 12, 1978, Record Vote #252. See also Congressional Quarterly, 1978 edition, CQ Vote #248, p.39s.

력없는 決議案이 김동조 前駐美大使를 공청회에 출석시키기 위하여 미국으로 강제소환하는데 失敗하자 이 調査에 非協調的이라는 이유로 韓國에 대해서 5천 6백만弗의 經濟援助를 삭감할 것을 農事豫算法에 修正案의 형태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上院은 이 下院의 修正案을 제지하였고 그 후 上下院合同委員會에서도 제거하게 됨으로써 박동선 사건에 관계없이 美國의 對韓援助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韓國의 人權問題에 관해서 美國會는 人權유린의 事例에 대해서 이 時期에 보다 많은 관심을 表示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韓美關係의 主要部分은 아니었지만 1974년에 이미 下院分科委員會들이 韓國의 人權問題에 관한 聽聞會를 가진 바 있다.¹⁰⁾

第94次 國會에서 下院은 外國軍事援助法案(H.R. 13680)에 대한 修正案을 채택하였고 그에 의하면 美國大統領은 韓國에 대해서 1972년에 朴大統領이 권위주의적 유신헌법을 채택한 후 韓國國民의 自由가 유실되고 있는데 대해서 美國國會가 크게 “낙담”하고 있다는 事實을 전할 것을 要請했다. 1982年 下院 外交委 아시아·太平洋小委員會는 美國의 아시아政策에 있어서 人權問題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취급했고 軍事統治下의 韓國의 現象을 評價한 바 있다. 南

10)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 and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ovements. Human rights in South Korea : implications for U.S. policy. Hearings, 93d Cong., 2d Sess., July 30, August 5, Dec. 20, 1974. Washington, U.S. Govt. print. Off., 1974, p.283. Also,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ovements.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 implications for U.S. policy. Hearings, 94th Cong., 1st Sess., May 20, 22; June 3, 5, 10, 17, 24, 1975. Washington, U. S. Govt Print. Off., 1975. p.501ff.

韓의 人權問題에 관한 美國會의 다른 調査와 마찬가지로 이 청문회에서의 초점은 人權問題에 관한 美國의 관심과 韓國에 대한 美國의 安保의 고려를 어떻게 절충시키느냐의 딜레마에 있었다.¹¹⁾ 이러한 두가지 問題에도 不拘하고(박동선 사건과 인권문제) 美國國會는 韓國에 대한 支援과 東아시아와 美國의 安保에 重要하다는 종래의 見解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꺼렸다. 1976년부터 1986년까지 美軍事援助는 다소 기복이 있었으나 대체로 一貫性이 있었다. 즉 감소되는 경향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1984년부터 1986년의 美國會文書에 의하면 韓國에 대한 美軍援助는 一貫性있게 從前과 같은 正當性이 提示되어 있었다.

이러한 원조에 대한 正當性에는 ①韓美相互防衛條約이 韓半島에 있어서 相互安保의 핵심적 요소이며, ②美軍의 주둔과 軍事支援의 보장이 한국의 안정에 공헌하며, ③北韓이 남침하는 경우에는 美國은 韓國을 돕기위해 追加的 軍隊를 파견할 수 있고, ④이러한 安保目的 외에도 美軍의 주둔은 美國의 外交政策의 다른 目的을 達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즉 韓美관계의 발전과 한국의 보다 民主的인 政治體制를 장려하고 向上된 人權분위기 조성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미군의 계속 주둔을 支持하면서 美國國會는 이 시기에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삭감에 관해 重要한 예외를 만들 의향을 갖고 있었다. 1979年-1980年의 國會決議案에 韓國에 대한 軍事援助資金을 明示的으로 배당하였다. 第97次國會에서 美國의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

11)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Reconciling human rights and U. S. security interests in Asia·Hearings, 97th Cong., 2d Sess., Aug. 10; Sept. 21, 22, 28, 29; Dec. 3, 9, 15, 1982. Washington, U. S. Gov.t. Print. Off., 1982.

에 대해서 美國軍事顧問官이 배정되는 수는 6名으로 制限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例外를 허용했다. 또한 1982년에 上院은 韓國에 저장할 수 있는 탄약의 액수를 1億弗에서 1億6千萬弗로 증가하였다. 그 후 韓國經濟의 強化로 인해 미국의 對韓軍事援助는 外國軍事販賣 용자의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고 韓國戰爭 직후 처럼 무상군사원조는 없어졌다.

IV. 第4期(1985年—현재)

韓美關係는 1980年代 중반부터 美國會의 政策決定者들이 서로 聯關된 經濟的, 安保的, 政治的 政策問題에 直面하게 됨에 따라 보다 複雜한 樣相을 갖게 되었다. 國際經濟 및 商業에 있어서 上昇하는 韓國의 經濟的能力(특히 美國과의 貿易과 關聯해서)은 韓國에 있어서 美國이 軍事支援經費를 單獨으로 인수해야 하는데 대한 妥當性에 關한 重要한 의문을 穰게 하고 있다. 漸次的으로 긴장이 完화된 國際政治的 環境과 關聯해서 認識되는 北韓으로부터의 威脅感의 감소는 駐韓美軍의 軍事力에 關해서 일련의 說明을 必要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0年代의 全政權을 에워싼 소란한 國內政治는 美國國會內에서 韓國의 安保問題를 從前과 같이 옹호하는 열정을 감소시켰다. 끝으로 學生데모에서 表示된 증가하는 反美감정은 對韓 원조문제에 關해서(軍事援助와 非軍事援助 포함) 美議會內의 韓國의 親舊들의 不安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全政權이 1988년의 平和的 권력이양과 서울올림픽의 成功을 強調하면서 行한 改憲問題論議 中斷決定은 여러차례의 廣範하고 激烈한 市民의 示威와 暴動을 야기했다. 1986年 6月 24日 學生들이 主導한 大規模데모가 일어났던날 美下院은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에 關한 결의문(H. Con. Res. 345)을 채택한 바 있다. 이 問題에 關한 決議文은 第100次 美國會에서 上下兩院에 上程되었으며 그 中 H. Con. Res. 141 決議案은 1987年 6月 30日에 下院에서 通過되었고 같은 내용의 決議案 S. Res. 241은 1987年 6月 27日에 上院에서 通過되었다.

最近에 접어들어 1987년에 盧大統領의 國民直選制에 의한 當選과 1988年 4월에 있는 國會議員選舉後 韓國에 있어서의 言論과 個人의 自由에 대한 制約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1989年 韓國의 野黨지도자들은 人權침해사례가 다시 되풀이되게 되었다고 非難하였고 그 結果 40餘名の 美國國會議員들은 1989年 9월에 부시 大統領에게 韓國의 人權問題에 關해서 그 다음달(10月)에 워싱턴을 訪問할 盧大統領에게 提起할 것을 要請했다.

貿易問題에 關해서도 第99次 美國會에서 下院에서 通過된 옴니부스 貿易法의 여러 條項은 韓國이 자행하고 있다는 소위 不公正貿易行爲에 대한 美國國會의 漸高된 關心을 表明하고 있다.

그러나 이 論文과 直接聯關된 것으로는 3個의 重要한 安保問題에 關한 美國議會의 움직임이 있었다. 1989年 6월에 밤퍼스 上院議員과 다른 5名の 議員이 1992年까지 韓國에서 美地上軍 10,000名을 撤收시킬 것을 要求하는 法案(S. 1264)를 提案했다. 그는 韓國이 經濟적으로 強함으로 美軍의 撤收에 따른 어떠한 罅(空白)도 메울 수 있고 駐韓美軍의 經費(26億弗)는 韓國이 美國에 대해 큰 무역黑字를 내고 國防에 關한 美國보다 적은 비율을 쓰고 있는 限 美國으로서 甘受할 수 없는 것이라고 言及했다. 레빈 上院議員도 1989年 6월에 駐韓美軍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要求하였고 新聞보도에 의하면 부시 行政府도 駐韓美軍 규모의 調整을 考慮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1989年 11月 6일에 발표된 1990年-1991年과 國防豫算承認法案은 美軍撤收와 韓半島에 있어서 同盟國의 防衛부담을 韓國이 보다 크게 인수하는 문제에 關해 韓美間에 協議할 것을 要請했다. 그러나 美軍減縮에 關해서는 言及이 없었다. 1989年 9月 26日

國防費支出法案(H.R. 3072)의 심의와 관련해서 美上院은 65對 34로 韓國에서 부터 3,000名의 美軍撤收法案을 부결시켰으며, 그 대신 韓國에 배치되어 있는 美軍을 再評價하는 作業을 할 것을 行政府에 要請했다.

美國會와 當面한 問題에는 이러한 提案들이 韓半島의 섬세한 세력균형과 韓美關係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包含되어 있다. 一部 美國官吏들은 北韓은 그들의 前方戰線 配置 態勢를 완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으며 北韓軍은 數, 位置, 火力 그리고 準備태세에 있어서 強力한 美軍의 駐屯에 의하여서만 견제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韓國을 美國과 비슷하게 GNP의 큰 몫을 防衛費로 使用하고 있고(GNP 6%로서 630,000名 군대 보유) 또한 韓國은 駐韓美軍의 維持를 위해서 많은 액수(1988년에 約 22億 弗)를 공여하고 있다고 附言한다. 끝으로 이러한 見解를 가진 관리들은 美國의 意圖에 관해 평양에 대하여 “그릇된 信號”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나 韓美關係를 惡化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성있는 韓美協議와 어떠한 美軍撤收 고려에 앞서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安保와 관련된 둘째번 問題로는 駐韓美軍의 너무나 눈에 띄이는 모습이 一部 韓國人의 비판의 源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批判은 兩國間의 마찰을 낳게하고 있다. 解決策으로는 韓國에 있어서 美軍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提案이 나오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최근에 韓美간에 合意를 본 18호골프장을 지닌 美軍 용산위치를 서울 번화가로부터 한가한 곳으로 移轉하는 것과 美軍이 現在 지휘하고 있는 韓美統合軍 司令部에서 韓國軍將校들에게 보다 큰 役割을 맞게 하는 것이다. 그외에 韓國人들의 不平을 解消시켜

주기 위해서 韓美行政協定下에서 美國人과 韓國人 取扱에 있어서의 不平等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과 美軍 TV放送中에 韓國人들에게 文化的으로 불쾌감을 이끄는 部分을 제거해야 한다는 調整案들이 提示되고 있다. 1989年 10月 27日에 下院을 통과한 후 1990年度 軍事시설 建設費支出法案(H.R. 3012)은 韓國에서의 建設費要求額 8,400萬弗 중 1,400萬弗 외에는 모두 삭감하였다. 1989年 11月 6日에 통과된 1990年度 國防費支出承認法案(H.R.2461)은 美國國防省이 向後駐韓美軍基地 移轉문제와 韓美軍事關係 조정에 관한 5個年계획을 마련할 것을 指示하고 있다.

끝으로 하인즈 上院議員과 덕손 上院議員은 1989年 7月에 “FX”(혹은 한국 전투기 프로그램)이라고 불리워지는 韓國의 새로운 제트 戰鬥機生産을 美國이 도울 計劃에 反對하는 法案(S. Res 154)을 提案했다. 그들은 이러한 協定에 立脚하여 行해지는 美國의 기술이전이 美國과 경쟁적인 韓國의 航空産業을 發展시킬 것을 우려하였고 또한 同協定에 포함된 條項이라고 보도된 것 중에 美國의 계약업자들이 韓國이 구매할 액수를 “상쇄”하기 위하여 비슷한 額數의 韓國産品을 구해야 한다는 條項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고 있다.

1989年 7月 19日 上院은 國務省 豫算承認法案(S. 1160)에 대한 修正案으로서 한 決議案(S. Res. 154)을 채택했다. 8月에는 國務省이 美國生産業者와 韓國政府에 대해서 지나치게 “相殺”하는 行爲를 戰鬥機 生産計劃과 관련해서 하지 않도록 警告했다고 報道되었다. 1989年 12月 20日 한국은 맥도넬 더그라스(McDonnell Douglas) 會社의 F/A-18 戰鬥機를 새로운 한국전투기종으로 선택했다고 表明했다. 1990年 2月에 있는 美國防長官 체니의 訪韓을 계기로

韓國國防長官 이상훈과의 共同聲明에서 한국은 向後 3年間に 걸쳐서 7,000名의 駐韓美軍非戰鬥要員의 감축을 받아들인다는데 原則적으로 合意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計劃에도 不拘하고 세가지 部門에 있어서의 美軍現狀維持에는 아무런 變化가 앞으로 가까운 將來에는 없다. 卽 情報수집, 空輸능력과 北韓의 攻擊時에는 도화선의 役割을 담당하는 美軍의 前方配置 등이다. 그 외에 美國은 韓國政府가 美軍의 駐屯經費를 보다 많이 부담할 것을 要求했지만(중전보다 2倍程度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調整案으로서 美國은 韓美兩國統合軍 作戰·지휘권을 포기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판문점에서 열리는 軍事停戰委員會에 南쪽 代表團을 이끌 韓國軍將星을 任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¹²⁾

12) See among others, New York Times, Feb. 16, 1990, p.7; Baltimore Sun, Feb. 16, 1990, p.1; Los Angeles Times, Feb. 16, 1990, p.1; Washington Post, Feb. 16, 1990, p.25; and Washington Times, Feb. 16, 1990, p. 11.

11. 蘇聯의 變化와 韓半島

金 應 澤(드릭셀大)

目 次

I. 變化의 根源	251
II. 1987년에 제작된 蘇聯 映畫	252
III. 고르바초프의 딜레마	252
IV. 經濟改革	253
V. 蘇聯 變化의 展望	258
VI. 結 論	260

소련은 '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라 歷史的인 변화를 하고 있다. 이 변화의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들이 어느정도 지속성이 있는지? 이 변화의 장래와 전망은 어떠한지? 이러한 변화과정이 韓半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때 소련의 變化 過程은 5년 남짓하고 그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자체는 시작에 지나지 못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I. 變化의 根源

소련의 저명인사들은 異口同聲으로 스탈린의 軍事獨裁가 그 변화 근원이라고 한다. 그 누구보다 더 장기적으로 국가에 봉사한 그로미코는 최근 출판된 그의 회고록에서 스탈린의 장기독재(1924~1953)로 인하여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완전히 공포로 사로잡힌 사회로 변질시켰다고 언급하였다. 스탈린 自身은 그누구도 믿지 않았고 신뢰할만한 친구는 한사람도 없었다. 스탈린은 그의 外相을 지낸 몰로토프와의 관계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몰로토프의 부인은 유태인이었는데 영문없이 1952년에 체포되어 스탈린이 죽은위에야 귀가 하였다고 한다.

스탈린의 1953년 사망은 소련을 그의 長期獨裁로부터 해방시켰다. 스탈린의 수없는 최악은 후루시초프가 1956년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 대대적으로 폭로하였다. 그 후에도 스탈린의 최악상은 계속해서 노출되었으나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라 개방-개혁과정에서 스탈린에 대한 공격은 가일층 치열하게 되었다.

Ⅱ. 1987년에 제작된 蘇聯 映畫

「속죄」-「빠가야니에」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다. 이 영화는 스탈린의 고향 조지아에서 조지아인 自身들이 조지아인이 구르젠스키로 스탈린의 잔악한 獨裁體制를 象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영화는 蘇聯 전역에 전례없는 인기를 차지하였는데 극장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의 바다를 초래하였다. 이 영화의 최종장면에는 스탈린 獨裁體制가 사라지기는 커녕 밤마다 꿈에 나타나 계속해서 괴롭힌다.

고르바초프의 開放-改革政策은 스탈린獨裁가 초래한 총괄적인 최악상, 全體社會의 모순과 갈등을 제거하고 「人間社會主義」로 지향하는 것이 그 目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Ⅲ. 고르바초프의 딜레마

그런데 이러한 過程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어느 지도자보다 제일 심각한 애로와 문제들에 봉착한다. 이중에서 첫째로 가장 어려운 딜레마는 고르바초프는 자신이 마치 로마의 교황과 改革者 마틴루터의 役割을 동시에 강행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內外的으로 현존하는 문제들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교황과 루터의 위치중 선택의 自由가 없다. 장기간 축적된 제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로마교황의 강세가 必要하나 새로운 解決策들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루터 이상

의 끈기, 대담, 집념이 必要하다. 1985년 4월에 공산당 서기장직만 담당하였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과감히 憲法을 개정하고 美國의 행정부와 흡사한 대통령직을 만들고 自記自信이 초대대통령이 된것도 上記된 딜레마를 타결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루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의 다른 하나의 딜레마는 「部分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개방-개혁과정에서 총괄적-전체적인 改革이 解決策이지 일부-부분적인 개혁은 주어진 문제들을 감당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실현된 소련의 變化는 주로 內외적으로 정치에 국한한듯 싶다. 고르바초프가 시초한 「新思考」는 政治的 측면에만 주력하고 있다. 內部的으로는 공산당의 勢力獨占을 철회하고 多數黨을 허용하고 나아가서는 제안된 범위내에서나마 언론·집회·종교의 自由도 허용하고 있다. 對外的으로도 정상외교 과정을 통하여 蘇·美관계는 물론 소·중, 소·동서 구라파등 주변국가들과 사회제도 체제를 불문하고 대대적으로 관계를 改善하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선언(1986년 7월)과 크라스노야르크선언(1988년 9월)으로 말미암아 소련의 亞細亞太平洋地域의 국가들과의 과감한 과제개선이 크게 주목된다.

IV. 經濟 改革

그러나 기본은 內的인 經濟問題 해결이다. 고르바초프의 집권 이래 소련내의

경제사정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기본적인 衣食住 문제는 衣食住의 문제로 대두되고 일상필수품의 需要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소련 남부지방의 한 시골청년 아드레이 움리윈은 근 2년 아무리 애를써도 새양말을 살 수 없자 고르바초프 大統領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달 남짓후에야 그의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새양말을 살 수 있었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인적-물적자원이 어느 나라보다 더 풍부한 소련의 經濟가 왜 이모양 이꼴일까? 70여년 社會主義 體制下에서 이렇게 극도로 심각해진 경제위기를 妥結하기위한 政策들은 무엇인지?

첫째로, 統制經濟 體制하에서 소련의 계획경제는 개개인으로부터 自記自信의 근본의욕을 상상 이상으로 감축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을 열심히 할 의욕도 필요성도 극도로 감축되었다.

둘째로, 計劃經濟를 운영하는 過程에서 관료체제-특히 중앙집권하의-는 필요이상으로 확장되었고 동시에 지방 자치체제는 완전마비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不正腐敗가 가장 팽창하였다.

셋째로,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배당된 수량을 충족 내지 超過達成하는 것이 主目的이기 때문에 질적향상은 완전히 등한시되었다.

네째로, 이러한 生産過程에서의 차질은 分配(운반)체제가 매우 악화되어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안되고 있다. 소련 경제학자에 의하면 소련식 생활에서 중요한 감자는 생산액의 1/2이 제대로 운반되지 않아 썩고 있다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인정할 정도다.

소련 計劃經濟下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상황들을 초래하였는지?

첫째로, 소련경제는 더 이상지탱 할 수 없는 適者豫算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화폐를 계속 인쇄함으로써 지탱되고 있다. '85년 적자예산은 GNP의 2.5%였으나 89년은 13%로 증가하였다.

둘째로, 소련화폐 루블은 완전히 근본적인 貨幣의 機能을 상실하였다. 루블은 세계시장경제의 다른화폐들과 交換되지않는 것은 물론, 국내에도 商品을 매매할 수 없는 무용의 화폐다.

셋째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서 소련의 경제는 현재 완전한 中央集權下에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地方自治가 관리하는 것도 아닌 완전히 불법천지의 混沌狀態에 있는 듯하다.

이렇게 위기에 도달한 蘇聯經濟難을 해결할 방도는 있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가 만성이 되어 그 어떠한 處方도 환자의 生命을 구하지 못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7월에 있을 당대회와 결하여 과감한 경제개혁이 실시된다고 발표되었다. '91년부터 시행되는 經濟改革의 일부로 國營企業의 70%까지를 民營化할 計劃이라고 한다. 동시에 合作기업에도 보다 유리한 제 措置들을 고려중이라고 보도되었다.

과연 이렇게 과감한 경제개혁들은 어떤 結果를 초래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經濟改革의 상세한 내용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改革들의 실천가능성과 展望을 論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時機尙무다.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과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경제개혁의 경험을 위주로 몇개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로, 만약 소련의 기업이 70% 민營化되는 경우 蘇聯국고세입이 減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같은 전망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란 맥킨은 교수의 의견인데 蘇聯經濟學者들도 대동소이한 염려를 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민營化된 기업체들이 세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할 수가 있는지 의심된다.

둘째로, 소련의 경제학자들은 國營에서 민營으로 교체하는 過程에서 현존하는 管理體制 이상으로 확대된 管理體制가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러면 아이보다 배꼽이 더 커질 可能性을 전망한다.

세째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민營化가 되었다한들 개인 기업인들이 민營化된 企業運營을 거절할 경우다. 예로서 소련의 農地를 고려해보자. 기름진 농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부족이 극심한 나머지 고르바초프는 國營下에 있는 농지를 50년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賃貸하여 주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농민들은 하등의 반응도 없었다.

네째로, 무엇보다더 무용의 화폐루블의 과감한 改革이 필요하다. 그런데 貨幣改革의 필요성은 1920년대부터 논의되어왔다. 소련 對外經協의 현황은 어떤지? 소련당국은 현재까지 등록된 合作기업의 수는 1천 5백개에 달하며 그 소유자본 총액은 5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한편 한국도 지난 3月 제2차 經協合同會議를 계기로 40개 기업들이 投資相談을 활발히 진행하였다고 보도됐다. 代表的인 것들은 現代가 求償무역 2백만불을 합의 했고, 雙龍은 공장 設立을 4月中 具體化한다고 했고, 그리고 金星은 금년수출 2億弗 達成을 예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이상으로 급진전하는 韓蘇經協을 관찰할때 1917년 혁명 이후 레닌의 예언이 상기된다. 그는 그 당시 범람하는 外國

資本의 치열한 투자 경쟁을 보고 「자본가들은 그 自身들의 목을 메어 죽일 새 끼줄까지 팔기위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경쟁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급변하는 소련의 변화로 인해 쫓기듯 하는 한소 經協行動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장기적인 국익손실의 사고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러한 급변하는 한소경제관계의 기본 目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급진하는 經協관계 진전은 한국 北方外交의 일부분으로 소련과 修交를 빠른 時日內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면 韓蘇修交 自體는 北方外交의 目的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까? 7·7선언에서 명시된대로 北方外交의 南北관계 改善이라면 韓蘇修交는 北韓을 소련으로부터마저 고립내재 버림받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시 표현하면 韓蘇의 蜜月이 더욱더 무르익어 감에따라 北韓은 주변 국가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고립되어 南韓과 바람직한 대화의 자세를 갖추수 없게 된다.

둘째로, 경제관계는 어디까지나 경제이익이 그 기본 目的이 되어야 한다. 물론 政經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韓蘇의 경우에는 韓蘇 修交로 인해 소련이 北韓에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내에서의 體制改革을 구상하는 비현실적인 희망에 의거한 듯하다. 그 명백한 이유로서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은 현재 매우 쇠약되어있고 조·소관계는 불신과 갈등으로 악화의 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여하튼 이러한 망상의 기대로 한국이 추구해야할 경제이익은 극소로 감소되고 경제관계의 보람이 희박해질 우려가 농후하다.

세째로, 한국이 소련에 투자하는 그 거액의 자본의 근거지가 의심된다. 현재 까지 진행된 제1, 2차 韓蘇 경제인회회가 民間기준이라고 해도 한소 경제창구

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재벌들의 소련투자자본은 국가의 보증을 요하게 됨은 물론 국가자금 자체-국민의 피와 땀으로 수입된 세금-가 사용된다면 이것은 좀더 신중히 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무질서하고 무법천지인 소련에 거액의 國家資金이 투자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으로 생각된다.

네째로, 대소관계는 全體民族의 운명과 長期的인 측면에서 고려되고 결정되어야지 소련에 거주하는 몇몇 반조선인사들에게 좌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닌 듯 싶다. 동시에 한소관계 개선과정도 몇몇 정치인들의 장남감이나 파벌투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V. 蘇聯 變化의 展望

上記한 소련의 변화들은 어느정도 지속될 수 있을까?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歷史에 전례없는 世界的인 변화과정이다. 아무리 歷史的인 변화과정일지언정 후퇴 취소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종전의 社會主義를 背信하고 일당독재를 종말시켰다 할지언정, 소련 인민들의 근본적인 衣食住문제를 해결못하는이상 페레스트로이카의 展望은 절단코 낙관할 수는 없다. 고르바초프 改革의 부정적, 긍정적 요소들을 고려 해보자. 우선 否定的 요소들은 첫째, 經濟改革은 예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소련의 저명한 경제학자 아간 베이건은 고르바초프를 비롯해서 현집권자들이 소련 경제위기의 深刻性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果敢한 해결책을 아직도 구상치 못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더욱더 심각해졌다고 솔직히 인정

하고 있다.

둘째로, 공산당체제자체가 심각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르바초프는 보수-진보파의 대립을 自己自身에 유용하도록 교묘하게 조정했으나 그 대립자체는 더욱더 심각해가고 있다. 7월에 있을 黨大會時에는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발트 3國 등 9個 共和國 독립의 民族 內部問題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비롯해서 非러시아계의 9個 共和國들에서도 반러시아 감정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실은 매스컴에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네째로, KGB와 軍部の 불투명한 지도체제로 인해 매우 분산된 상황이다. 어떤면에서는 약화된 軍과 KGB의 조직이 고르바초프한테 유리할 수도 있으나 유사시 분산된 軍-KGB는 쓸모없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4個의 부정적 요소에 대조로 긍정적인 요소들은, 첫째, 페레스트로이카에 무시못할 반대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고르바초프 自身の 지도력을 대치할만한 반대세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하는 듯하다. 현재까지는 보수측에 리가초프나 진보진의 엘젠도 고르바초프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지도 불투명하다.

다섯째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현재까지 크게 成功치 못한 관계로 지식인층을 비롯해서 일반서민들도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이외는 다른 선택의 自由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듯하다. 선택이 있다면 지긋 지긋한 스탈린의 장기독재나 혹은 짜리스트의 체제외에는 존재치 않는다.

IV. 結 論

고르바초프 改革－開放의 성공과 실패는 주로 소련내의 要素들이 결정할 듯하다. 外部의 요소들은 별로 크게 작용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軍事－外交 政策이 현재까지 成功的이었기 때문에 內的인 개혁－ 개방 과정이 크게 도움을 받은 것도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西方의 일부인사들은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은 성공－실패의 전망 외에도 성공도 실패도 아닌 狀況에서 계속 유지될 可能性도 없지 않을 것이다.

12. 東歐의 變化와 韓半島

任 鏞 淳(成均館大 教授)

I

우리는 파라독스(paradoxes)로 가득찬 세계에 살고 있다. 現世界는 불안과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또한 보다 의의있는 세계로 만들 수 있는 機會가 充分히 있다. 人間은 共同의 運命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편협한 민족주의로 만연되어 있다. 인간의 과학 및 기술문명은 엄청난 부를 축척하게 만들었으나, 빈곤 또한 도처에 만연되어 있다. 인간은 영원한 평화를 갈망하고 있으나 술한 갈등으로 피해를 보고있다.

아마도 今世紀에 가장 큰 정치적 파라독스는 共產世界의 興망성쇠일 것이다. 공산주의는 오랫동안 확립되어온 자본주의 세계에 도전했고, 급기야는 제국을 건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짧은 기간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공산국이, 또한 급속도로 멸망해 가고 있다. 너무나 급속히 망해가는 共產帝國이기에 전문가들에게도 이 과정이 수수께끼가 되기 일 수다. 특히 동구라파에서 일고 있는 정치적 변화는 전세계의 인류에게 극적인 변화이다.

이같은 공산국가들의 변화를 음미하면서 본 논문은 東歐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즉 東歐事態와 더불어 한반도의 변화는 무엇인가? 한국은 동구의 변화를 어찌 받아 들이는가? 한국은 이 사태를 긍정적으로 소화시키는가? 북한의 指導者들은 이 사태에 적응을 잘 하는가? 이같은 사태가 南北對話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한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주는가? 이에 해답을 얻기 위해 共產世界의 政治를 조명해 보자

II

1986년 2월에 행해진 第27次 蘇聯共產黨 大會에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당의 公式政策으로 採擇하는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은 宣言을 하였다. “各 國家는 自國의 運命을 決定짓는 領土 및 自然資源의 開發을 自國의 發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選擇할 權利가 있다. 만일 이같은 原則이 理解되지 않으면 國際關係를 正常化할 수가 없다. 各 政治體制內의 理念 및 社會的 차이는 各 國民의 選擇에 의한 結果이다. 일국이 취한 행위가 國際關係속에서 鬭爭과 軍事的 對立을 야기해서는 안된다.”¹⁾ 이 페레스트로이카는 동구 뿐만 아니라 소련내에서도 폭발적인 정치발전을 초래했다. 이제까지 정태적이던 共產主義 政治가 화산과 같은 변화를 맞게 됐다. 지난 몇년동안 東歐에서 일고 있는 變化는 대부분의 國家들로 하여금 몹시 自體를 포기하게 했다. 이같은 급격한 變化는 世界輿論의 對象이 되어 各國의 言論媒介體가 東歐事態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표면화된 共產世界의 問題는 사실상 오랫동안 內的으로 끓어 있었던 것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1917년 볼셰비키 蘇聯에서 극적으로 성공한 것에 반하여, 다른 地域에서는 共產主義運動이 世界 第2次大戰까지는 별로 성공을 못했다. <表 I>에서 보듯이 戰爭前에는 蘇聯외에 共產主義를 성공시킨 나라는 몽골人民共和國 뿐이다. 하지만 戰爭後 共產黨이 지배하는 國家가 신속히 늘었다. 1970년도 후반에는 28개의 國家가 共產主義國이 되었다. 또한 全世界의

1)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New York : Harper & Row, 1968), p. 163.

共産主義를 信奉하는 黨員이 무려 5억에 달했다.

(表 I) 共産黨支配 國家

國 家	共産政權樹立日	國 家	共産政權樹立日
1.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1917. 10. 25	18. Republic of Dahomey(Benin)	1974. 11. 30
2. Mongolian People's Republic	1924. 11. 26	19. People's Republic of Mozambique	1975. 6. 24
3.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1945. 11. 29	20. Republic of Cape Verde	1975. 7. 5
4. People's Republic of Albanis	1946. 1. 11	21. People's Republic of Angola	1975. 11. 11
5. Bulgarian People's Republic	1947. 12. 4	22. Laos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975. 12. 2
6. Romanian People's Republic	1947. 12. 30	23. Malagasy Republic(Madagascar)	1975. 12. 30
7. Czechoslovak People's Republic	1948. 2. 25	24. Socialist Ethiopia	1976. 4. 20
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48. 9. 9	25.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Earlier :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1976. 7. 2
9. Polish People's Republic	1948. 12. 14	26. Democratic Republic of Afghanistan	1978. 4. 27
10. Hungarian People's Republic	1949. 8. 18	27. People's Republic of Kampuchea(Earlier : Royal Government of National Union of Kampuchea)	1979. 1. 7
11.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 10. 1	28. People's Revolutionary Government of Grenada	1979. 3. 13
12. German Democratic Republic	1949. 10. 7		(until its overthrow in October 1983)
13. Republic of Cuba	1959. 1. 2		
14. The Republic of the Congo	1963. 8. 15		
15. People's Republic of South Yemen	1967. 11. 30		
16. Somali Democratic Republic	1970. 10. 20		
17. Republic of Guinea-Bissau			

동구라파에서 1947년 이후 共產主義에 挑戰하는 勢力은 소멸되다 시피 되었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및 불가리아가 전부 共產國이 되었다. 1948년 이후 社會主義者들은 共產黨에 흡수되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던 勢力은 해체되거나, 수감되었거나 아니면 처형되었다.²⁾ 東歐圈에서 共產黨員의 수는 팔복할 정도로 증가되었다. 특히 1948년을 정점으로 당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表Ⅱ>에서 보듯이 增加는 놀라운 정도이다. 폴란드 공산당원의 수가 1945년에는 23만이 조금 넘었다. 이 수치가 1954년에는 거의 130만에 육박했고, 1965년에는 170만 이상이 되었다. 체코의 共產黨員 수가 1945년에는 712,776명이 1954년에는 1,489,234명이 되었다. 헝가리의 黨員數가 1945년에는 약 15만명이던 것이, 1954년에는 86만 이상이 되었다. 이 숫자가 1965년에는 54만으로 줄었다. 유고는 1945년에는 141,066가 되었고, 1964년에는 백만이 넘는 黨員을 가졌다. 불가리아는 1944년에 2만 5천의 당원으로 시작하여, 1954년에는 45만 이상이 되었고, 1963년에는 55만 이상이 되었다. 루마니아는 1945년에 217,000명의 당원이 1956년에는 58만이 되었고, 1965년에는 145만에 이르렀다. 東部獨逸은 1946년에 511,000이란 黨員의 수가 1954년에는 1,272,987되었고, 1963년에는 1,610,679명이 되었다.

이같이 급성장한 東歐圈의 共產黨員 수는 世界를 놀라게 했다. 마치 共產圈은 絶속되어 있는 불변의 政治體制 같이 보였다. 이를 立證하듯이 東歐圈은 蘇聯과 各種의 同盟關係를 수립했다. 東歐는 蘇聯과 軍事同盟을 수립하였다.

2) Zbigniew K. Brzezinski, *The Soviet Bloc : Unity and Conflict*(Cambridge :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p. 85.

〈表 II〉 Growth of Communist Party membership from the seizure of power to the New Course

Poland 1956 pop. 27.5 million	Czechoslovakia 1955 pop. 13 million	Hungary 1955 pop. 9.8 million	Yugoslavia 1953 pop. 16.9 million	Bulgaria 1955 pop. 7.5 million	Rumania 1956 pop. 17.5 million	GDR 1950 pop. 18.4 million
Dec. 1945 235,296	Aug. 1945 712,776	May 1945 150,000	Dec. 1945 141,066	Sept. 1944 25,000	Sept. 1945 217,000	Feb. 1946 511,000
Dec. 1946 555,888	Mar. 1946 1,081,554	Sept. 1946 653,000	July 1948 468,175	Mar. 1945 254,000	June 1947 710,000	Apr. 1946 1,298,415
Dec. 1947 820,786	Nov. 1947 1,281,138	May 1947 700,000	Dec. 1949 470,379	Mar. 1946 500,000	Sept. 1948 937,846	June 1948 2,000,000
Dec. 1948 1,368,873	May 1948 2,000,048	May 1948 884,000	Nov. 1952 779,382	(approx) July 1946 495,658	July 1950 720,000	Jan. (approx) 1949 1,773,689
Dec. 1949 1,200,000 (approx)	May 1949 2,311,066	Mar. 1949 1,200,000	Dec. 1953 716,985	1948 495,658	June 1956 580,000	Apr. 1950 1,750,000
Dec. 1953 1,226,716	Feb. 1951 1,677,443	1952 May 880,000	June 1955 624,806	1949 460,000	June 1950 367,000	Sept. 1953 1,230,000
Mar. 1954 1,297,000	Aug. 1954 1,489,234	1954 864,607	June 1956 635,984	June 1954 455,251	June 1954 455,251	Apr. 1954 1,272,987

* Following absorption of the Social Democrats.

* Figure excludes 140,326 candidates.

Source : Zbigniew K. Brzezinski, op. cit., p. 86.

이 軍事同盟의 특징은 同盟國이 다른 同盟國의 이해에 위배되는 경우 절대 제 3국가와 聯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表 III〉에서 열거하듯이 蘇聯은 東歐의 각개 국가와 따로이 相互條約關係를 樹立했다. 相互條約은 經濟援助, 友好關係, 文化協力, 相互協調등 다양한 關係이다. 실로 共產體系는 일체감이 있는 한개의 세력으로 보였다.

蘇聯과 東歐圈은 條約에서 뿐만 아니라 國際的 行動에도 공동보조를 해왔다. 예로서 UN總會에서 동구라파 國家들과 蘇聯은 항시 같은 편에 섰다. 알

〈表 III〉

Bilateral political treaties and cultural treaties

	USSR	Poland	Czecho- slovakia	Hungary	Rumaina	Bulgaria	East Germany
USSR		FMA 4/21/45	FMA 12/12/43	FMA 2/18/48	FMA 2/4/48	FMA 3/18/48	
Poland	FMA 4/21/45		FMA 3/10/47	FMA 6/18/48	FMA 1/26/49	FMA 5/29/48	F 6/6/50
			CC 7/4/47	CC 1/31/48	CC 2/27/48	CC 6/28/47	CC 1/8/52
Czecho- slovakia	FMA 12/12/43	FMA 3/10/47		FMA 4/16/49	FMA 4/23/48	FMA 4/23/48	F 6/23/50
		CC 7/4/47			CC 10/14/47	CC 6/20/47	
Hungary	FMA 2/18/48	FMA 6/18/48	FMA 4/16/49		FMA 1/24/48	FMA 7/16/48	F 6/26/50
		CC 1/31/48			CC 11/25/47	CC 10/29/47	
Rumania	FMA 2/4/48	FMA 1/26/49	FMA 7/21/48	FMA 1/24/48		FMA 1/16/48	F 8/22/50
		CC 2/27/48	CC 10/14/47	CC 11/25/47		CC 6/20/47	CC 9/20/50
Bulgaria	FMA 3/18/48	FMA 5/29/48	FMA 4/23/48	FMA 7/16/48	FMA 1/16/48		F 8/25/50
		CC 6/28/47	CC 6/20/47	CC 10/29/47	CC 6/20/47		CC 5/5/52
East Germany		F 6/6/50	F 6/23/50	F 6/26/50	F 8/22/50	F 8/25/50	
		CC 1/8/52			CC 9/20/50	CC 5/5/52	

Key : Friendship and Mutual Aid ; CC : Cultural Cooperation ; f : Friendship Treaty.

Source : Brzezinski, op. cit., p. 110.

바니아 때로는 유고슬라비아가 蘇聯과 다른 행동을 취했으나 一般的으로 항시
결속되어 있었다. 이같은 東歐圈에서도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 이미 1948년에
소련이 티토의 유고슬라비아를 코민포름(Cominform)에서 추출해야만 했다.
第20次 蘇聯共産黨大會에서 후루시초프가 스탈린의 격하운동을 벌렸다. 동시
에 社會主義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對共産圈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西方側에는 平和的 공존을 천명하였다. 또한 1956년, 1957년에 폴란드, 헝가
리등에서 傳統的 共産主義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改革을 시도했던 후루
시초프는 실각을 하였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듀브첵(Alexander
Dubcek)이 共産黨의 指導者가 되면서 改革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결국 蘇
聯의 억압으로 이는 실패했다. 1972년 브레지네프하에서 蘇聯은 美國과 戰略
武器制約의 條約(SALT)을 맺음으로써 후루시초프가 열망하던 東西共存의 데
탕뜨를 가져왔다. 1981년부터 시작된 폴란드의 Solidarity運動은 東歐圈 변화
의 징후를 극적으로 표현한 단면이다. 이와 동시에 中國에서도 變化의 물결은
서서히 일고 있었다. 1976년 毛澤東의 서거와 1977년 鄧小平의 재등장은
1975년 周恩래가 第4次 全國人民代議員會에서 주장한 經濟政策의 개혁을 서
서히 시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9년부터 鄧小平의 지도하에서 소위 市場經
濟를 중심으로 한 社會主義의 近代化를 시도했다. 中國은 產業, 農業등의 개혁
을 위해 개인의 能力과 시장의 需要와 供給의 원칙에 의한 經濟建設을 시도하
였다. 이같은 經濟의 開放化가 中國엔 政治的 民主化를 요구하게 되었다. 불행
히도 1989년 6월 3일 천안문사건은 中國의 가속되던 民主化 運動에 제동을
걸었다. 共産世界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고르바초프가 蘇聯의 지도자가 된 이

후부터다. 메드베데프(Medvedev)가 지적하듯이 고르바초프는 집권한지 2년내 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 지도자로 등장했다.³⁾ 뿐만 아니라 고르바초프는 레닌이후 政權繼承을 가장 수월하게 한 지도자이다. 1985년 3월 10일 체르넨코(Chernenko)가 서거하자, 3월 12일에 이미 고르바초프가 指導者로 등장했다. 고르바초프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고르바초프의 수기를 執筆한 메드베데프 자신도 “고르바초프는 進歩主義者도 아니요 改革家도 아니다.”⁴⁾라는 斷言을 했다. 한데 그는 자기의 執權을 크게 도와준 그로미코(Gromyko)를 제거하고 또한 保守的 國防長官 유스티노프(D. Ustinov)가 서거후 그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하고 이의 실천에 앞장섰다.

1986년 2월에 거행된 27차 共産黨大會에서 蘇聯은 페레스트로이카를 制度化하는 決斷을 내렸다. 고르바초프의 改革은 革命的이 되어, 오늘의 蘇聯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이에 대해 브레진스키 教授는 다음과 같은 評을 하였다. “蘇聯이 제거한 것은 스탈린주의 뿐만 아니라 레닌主義까지 포함되었다.”⁵⁾ 이 같은 蘇聯의 政策에 대해 눈치만 보던 동구라파도 改革을 시작하였다. 改革의 물결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에 共産主義를 폐기하는 운동으로 發展하였다. 심지어는 保守的이던 루마니아도 초우세스쿠(N. Ceausescu)를 처형하고 革命을 가져왔다. 이제 베르린 장벽은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가져 오는 것도 時間問題이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의 東歐 國家들이 종전에 사용하던 人民共和國이라는 국호를 없애고 단순히 共和國이란 이름

3) Zhores A. Medvedev, Gorbachev(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86), p. 283.

4) Ibid. p. 285.

5) Zbigniew Brzezinski, Newsweek(Feb. 19, 1990)

으로 國號를 대치했다. 東部獨逸에서는 保守派의 聯合體인 基督教 民主黨議長인 마지에르(Lothar doe Maiziere)가 內閣을 구성하였다. 헝가리에선 지난 4월 9일 選舉에서 民主廣場(Democratic Forum)의 의장인 안탈(Jozsef Antall)씨가 승리하여 內閣을 형성했다.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등 불과 2년전만해도 國家를 統治하던 共產黨이 전부 國民投票에서 失敗하고 政權을 잃었다. 이제 동구라파에서는 共產主義者가 설 땅이 없어졌다. 蘇聯에서는 스탈린主義를 제거하고, 동구라파에서는 맑스주의 自體를 제거하려든다. 또한 빠르게 西方과의 交역관계를 樹立하고 있다. 과연 이같은 東歐圈의 變化가 韓半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III

東歐의 變化가 韓國政府나 韓國人에 미친 영향을 열거하면 몇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로, 東歐圈의 變化는 韓國政府가 부단히 추구해온 北方政策에 크게 기여했다. 韓國政府는 1973년 6월 23일 北韓과의 협정 아래 모든 국가와 相互平等下에 門호를 개방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별진전이 없다. 1983년 6월 29일 당시 外務部 長官이던 이범석이 國防大學院에서의 연설에서 “北方政策”의 實現을 강조했다.⁶⁾

北方政策이 政府政策으로 具體化된 것은 第6共和國때부터다. 盧泰愚大統領

6) 柳錫烈 “北方外交의 現況과 推進方向”, 民族共同體와 國家發展(韓國政治學會, 1989), p, 555.

은 就任辭에서 北方外交를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7일 6개의 政策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宣稱하였다. 6개項目은 南北門戶開放, 離散家族의 거처확인, 南北韓의 直接交易, 北韓에 經濟支援, 北韓의 國際參與에 도움을 줄 것과 아울러 北韓이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를 改善하고 韓國이 蘇聯, 中共 및 他社會主義 國家와의 關係改善 등이다.⁷⁾

이같은 宣稱과 아울러 韓國政府는 蘇聯, 中國 및 동구라과의 여러나라와 外交關係를 樹立하기 위하여 부단한 努力을 해왔다. 이같이 北方政策을 펴하는 이유는 北韓의 門戶를 開放하여 統一에의 깊은 모색하려는데 있다. 1988년 하계 올림픽에 蘇聯이 參席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各種 예술인들도 韓國에서 주최한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韓國 政府가 추구하는 북방정책은 엄청난 經濟的 댓가를 지불해야 된다. 蘇聯은 韓國政府에 시베리아를 開發하기 위하여 엄청난 차관을 요청하였다. 1989년 4월 23일 서울에서 蘇聯의 商工會議所인 서울상주 貿易事務所를 개관하였다. 대우그룹, 현대, 삼성그룹등은 蘇聯과 投資協定을 締結하고, 常駐事務所를 設置하였다. 蘇聯이 북한을 의식하여 처음에는 公式機關과의 關係를 制限해 왔으나 이도 점차 변하여 이제는 政府次元에서 相互關係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초 모스크바를 방문한 民自黨 最高委員인 金泳三씨는 고르바초프와 직접 面談을 했다. 레트로브스키 蘇聯 外務次官은 世界日報 特派員과의 對話에서 蘇聯은 韓國의 유엔加入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⁸⁾ 또한 世界

7) 7. 7 特別宣言 1周年 統一政策報告, (國土統一院, 1989.) pp. 15-16.

8) 世界日報(1990. 4. 12)

日報 회장인 문선명 목사와 單獨會見에서 고르바초프는 韓蘇의 수교는 時間問題이며, 年내의 성사가 가능성을 示唆했다. 또한 南北統一 問題와 極東에서의 平和를 위한 國際的 協調를 위해 蘇聯이 努力하겠다고 다짐했다.⁹⁾

이같은 蘇聯政策의 變化와 아울러 東歐圈도 韓國과의 交流에 積極性을 보였다. 1988년 11월 25일 부다페스트에서 韓國·헝가리 兩國間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協定署名에 이어 10월 25일 常駐代表部를 兩國 首都에 開設하였다. 1989년 2월 1일에 한국과 헝가리 政府는 定式外交關係를 수립하고 常駐代表部를 常駐大使館으로 승격시켰다. 이같은 헝가리에 뒤를 이어 東歐圈의 國家들이 속속 韓國과 外交關係를 수립했다. 헝가리에 뒤를이어 폴란드가 1989년 11월 1일 한국과 修交關係를 樹立했다. 유고슬라비아는 1989년 12월 27일 韓國과 修交協定을 맺고, 체코슬로바키아는 1990년 3월 22일에 公式修交를 맺었다. 불가리아는 다음날인 23일에 韓國과 修交協定을 이루었고, 루마니아는 동년 3월 20일 韓國과 修交協定을 맺었다. 東獨과의 關係도 상당히 진전이 되어 公式修交協定을 맺는 것도 時間問題이다.

이같은 政治關係의 正常化는 通商關係에도 도움을 주었다. 1988년 11월 21일 대우그룹과 헝가리信用銀行은 貿易金融 및 호텔業 등의 분야에 총 1억 9천만 달러를 投資, 2개의 合作企業을 設立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대우는 1988년 1월에 동백림 事務所를 設置하고, 삼성이 1988년 5월에 부다페스트에 支社를 設置하였다. 韓國의 對蘇企業體가 東歐圈에 진출함은 물론이요, 東歐의 國家들이 앞을 다투어 韓國에 貿易事務所를 열고 있다. 이에 따르는 韓國과 東

9) 世界日報(1990. 4. 13)

歐圈과의 人的交流도 엄청나게 높아졌다. 동시에 貿易量도 急速度로 성장했다.

물론 이같은 東歐圈과의 政治的 타결은 韓國에 엄청난 經濟的 댓가를 要求하고 있다. 예로서 1988년이후 韓國이 헝가리에 提供하게될 借款은 9억불에 달한다. 유고슬라비아는 韓國政府에 10억불에 달하는 借款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韓國이 폴란드에 4억 5천만달러의 借款의 제의했다고 한다.¹⁰⁾ 이같은 東歐圈에 대한 韓國의 經濟援助는 한국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동시에 많은 企業들은 輸出不振의 활로를 東歐에서 찾아보려고 애쓴다. 여하간 이같이 韓國이 東歐圈과 修交를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東歐圈내의 構造的 變化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서 韓國이 원했던 北方政策의 樹立에 도움을 줬다. 어 나아가 政治的 北方政策이 經濟的인 北方政策으로 發展하였다.¹¹⁾

둘째로, 蘇聯 및 東歐圈의 變化는 駐韓美軍의 감축을 재촉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美國政府의 豫算赤字는 美國經濟에 이르러서는 2천억불에 달했다. 특히 레이건(Regan)行政府의 國防豫算의 增加는 政府의 豫算赤字를 격화 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政府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다. 한가지는 政府가 화폐를 팽창하는 政策이다. 다른 方法은 政府가 金融市場으로부터 資金을 벌리는 方策이다. 美國政府는 金融市場에서 資金을 빌렸다. 問題는 이것이 시장의 資金難을 가져와 景氣의 후퇴를 초래한다. 景氣의 후퇴가 오면 政府의 세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맞는다.

당황한 美國國會는 그라함-레드만-하링스라는 法案을 통과하여 행정부로

10) Korea Herald(April 5, 1990)

11) 朝鮮日報(1990. 4. 22)

하여금 강제로 豫算을 줄이게 만들었다. 레이건 行政府는 豫算을 줄이기 위하여 福祉政策에 關여한 많은 프로그램을 줄이고 聯邦의 지출을 줄였다. 하지만 아직도 1천 6백억이라는 엄청난 赤字가 美國을 괴롭히고 있다. 국방예산 삭감을 거부한 레이건 行政府와는 달리, 부시 行政府는 國防豫算도 삭감해야되는 처지에 달했다. 이런 時期에 蘇聯과 동구라파의 事態가 일어났다. 이같은 事態는 美國國民들로 하여금 政府의 國防豫算을 삭감하도록 壓力을 일층 가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비하여 체이니 國防長官은 國防豫算을 合理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議會에 제출했다. 결국 레이건과 같은 保守的 大統領도 INF條約을 체결하고 전략무기의 全般的 縮小를 제창했다. 부시 行政府에 오면서 SDI 프로그램도 有名無實하게 되고, 심지어는 B-2폭격기마저 없애자는 목소리가 의회내에서 커가고 있다. 부시 大統領은 재래식 군도 줄이고 구라파의 주둔군 삭감을 제안했다. 레빈이나 범퍼같은 上院議員은 韓半島에서 美軍을 감축시키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해외주둔군의 감축이다.

이미 報道된 바에 의하면, 韓美간에 3단계로 주한미군의 감군을 합의하였다. 또한 前方에서 韓美統合司令部를 1993년에는 解體하기로 합의했다. 제1단계 감군계획으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천명의 空軍과 5천명의 陸軍을 韓半島에서 撤去한다. 제2단계는 1994-95년이며, 3단계는 1996년이후다.¹²⁾ 이같이 美軍의 감군문제가 속히 決定될 수 있었던 이유도 蘇聯과 東歐圈이 급속한 변화에 연유한 것이다. 즉 美國政府 豫算赤字와 東歐圈의 變化가 동시에

12) The Korea Herald(April 5, 1990) 참조.

감군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蘇聯과 東歐圈의 변화는 韓國民들의 共產圈에 대한 적개심을 감소시켰다. 1988년 하계올림픽에 韓國人이 蘇聯팀 및 東歐팀에 대한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빈번한 東歐人의 韓國訪問과 韓國人의 東歐 및 蘇聯의 방문은 韓國人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했다. 심지어는 反共團體인 統一敎主도 고르바초프와 요담을 할 정도로 韓國은 변했다. 이에 병행해서 北韓에 대한 기대감 또한 增大했다. 때로는 변화하지 않는 北韓에 대하여 조금한 마음까지 생겼다. 술한 國內新聞의 論說이나 報告書, 또한 많은 학자들의 논란에서 北韓도 별수 없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新聞, 放送 또는 학술지가 北韓의 조명에 여념이 없다. 北韓에 대한 추측기사도 엄청나게 늘었다. 또한 변화하지 않는 北韓에 대한 짜증스런 論說로 흔히 볼 수 있다.

넷째, 東歐의 變化 특히, 베르린障壁의 제거와 東西獨 통합과정은 韓國人에게로 統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술한 통일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또한 술한 新聞이나 잡지들이 統一問題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政府도 民族共同體 樹立方案을 위시로 北韓과의 對話 및 交易을 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하고, 또한 研究한다. 北韓의 門戶를 개방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합작까지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韓國人의 行爲는 본래가 統一을 열망하는 민족의 欲求로 있겠지만 변화하는 共產圈 특히, 東部獨逸의 政治的 변화에 자극을 받음이다.

다섯째, 蘇聯 및 東歐圈의 變化는 韓半島내에서 南北軍縮에 관한 論議를 활발하게 했다. 주지하듯이 韓國과 北韓은 엄청난 國家의 財源을 軍備強化에 소

모하고 있다. 韓國은 G. N. P의 5퍼센트 내지 6퍼센트를 軍備強化에 사용한다. 北韓은 더욱 심하여 때로는 G. N. P의 20퍼센트 이상을 軍備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실로 국민에게 엄청난 財政的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韓國은 항시 國家 安保에 신경을 쓰고 있다. 6. 25 때도 북한이 남침을 했으며 美軍의 보조없이 한국을 방어할 수가 없었다. 전쟁기억이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역력히 남아있다. 더욱이나 랑군事態, KAL기의 폭파, 간첩의 南韓浸透 등은 國防力에 항상 신경을 쓰게 했다. 이같은 와중에 軍縮問題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現在에도 南北韓의 軍事力을 비교할 때 北韓이 우수함을 간과할 수 없다. 英國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1989년 현재 北韓의 총병력수는 1,040,000이며 韓國의 총병력수는 65만이다. 北韓의 전투기는 750대이며 한국은 480대를 보유하고 있다. 北韓의 탱크수는 3천 5백대이며 한국은 1천 5백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공격정, 어뢰정, 대공포등 각종무기 및 장비면에서 北韓이 숫적으로 우세하다. 이같은 처지에서 韓國政府나 대부분의 국민은 군비축소에 대한 논의를 하기가 어려웠다. 현대 바르샤바條約機構가 거의 해체되며, 蘇聯軍이 동구라파에서 철거하게되며, 東歐圈의 각 정부는 군비축소를 시작하였다. 蘇聯 또한 軍備縮小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蘇聯이나 東歐圈에서 軍備縮小를 하는 것은 각 國家의 經濟的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이같이 共產國家들의 급격한 軍備縮小의 움직임은 韓國國民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示唆하고 있다. 즉 북한도 군비는 우세하나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軍備縮小를 해야된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軍備縮小에 관한 세미나가 韓國에서 자주열리고, 각종 言論界에서도 南北韓 軍備縮小問題

를 特輯으로 다루고 있다.

여섯째로 蘇聯 및 東歐圈의 변화는 한국급진운동에 제동을 가했다. 第5共和國과 第6共和國 초기에 각大學에서 일던 데모는 학원의 정상수업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했다. 학생운동의 핵심은 많은 경우가 左傾化 운동이었다. 맑스-레닌의 研究 뿐만 아니라 金日成主體思想의 찬양론이 교내신문이나 잡지에 공공연히 실렸다. 한때는 학교마다 學生委員長職은 급전파의 독점물이 되었다. 이같이 기승을 올리던 좌경운동이 최근에는 점차 수그러지고 있다. 물론 정치적 民主化 過程이 기여하겠지만 이 같은 현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東歐事態이다. 급작스런 맑시즘의 붕괴와 중국에서의 천안문사건, 蘇聯에서 내적인 改革등은 左傾運動의 합리적이유를 제거했다.

IV

東歐圈 특히 東獨과 루마니아 事態는 北韓에 상당한 影響을 주었으리라 관측된다. 問題는 材料의 부족이 상상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 몇개의 가능성을 추측해 본다면, 첫째로, 蘇聯 및 東歐圈의 變化는 北韓을 國際적으로 고립시켰다. 北韓은 1988년 9월 13일 한국과 헝가리의 常駐代表部設置發表에 대하여 무척 화가난 것 같다. 北韓은 헝가리에 대하여 여러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였다. 최근까지도 헝가리의 變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하고 있다. “社會主義 나라들이 우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 社會主義 나라가 制度를 계속 고수하는가 아니면 資本主義를 복구하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에만 關係되는 問題인 것이 아니라 全般的 社會主義 力量의 運命과 世界革命의 전도와 關係되는 문제이다.¹³⁾” 심지어는 蘇聯에까지 불만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蘇聯의 남한인정은 조선을 영원히 분단하려는 의도이라고 비난했다.¹⁴⁾ 이같은 北韓의 態度로 대부분의 東歐圈 國家들은 大使館을 平壤으로부터 철거하였다. 즉 北韓의 태도는 北韓을 더욱 고립시켰다. 北韓의 집권층도 北韓이 고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88년부터 북한은 외국과의 關係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表面으로는 서방을 비난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는 西方과의 關係改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韓國의 北方政策이 성공하면 할수록 北韓의 韓國과 關係를 樹立하는 共產國家들이 韓國과 더욱 밀착되지 못하기만 빌 뿐이다.¹⁵⁾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다시 蘇聯에 융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지난 22일 레닌의 탄신일에 蘇聯을 찬양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고 外信은 전한다.¹⁶⁾

둘째, 東歐圈의 變化는 北韓指導層에 불안감을 초래하였다.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의 처형, 東部獨逸에서 市民의 항의 등은 北韓의 指導體制에 불안을 주었다. 이와 아울러 북한에서는 中央黨中心의 단결과 주민들의 사상교육을 강화시켰다.¹⁷⁾ 또한 北韓에서는 주체사상 및 주체행동을 재강조하고 있다. 金日成은 1990년 신년사에서 옛 政策인 “청산리”정신을 재강조하며 다음같은

13) “헝그리아에서 조성된 엄청난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생활(1989. 7), p. 16

14) 노동신문(1990. 4. 6)

15)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7, 1989)

16) 조선일보(1990. 4. 23)

17) 유석열, “북방외교의 현황과 추진방향”, (한국정치 학회보, 1989), p. 565.

聲明을 했다. “우리는 社會主義 建設에서 우리黨의 총노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모든 부문 모든단위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事業體系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을 더욱 強化하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分野에서 主體를 철저히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¹⁸⁾ 이같은 성명은 내적인 결속을 재다짐하려는 증거이다.

이같은 東歐圈의 變革과 특히 東西和解 분위기는 北韓에 긴장감을 고조하였다. 드디어는 다급한 金日成이 1989년 11월 5일에서 7일까지 中國을 비밀방문하여 中國指導者와 회담을 갖기도 했다. 이같은 불안한 事態는 金正日에의 政權移讓을 지연시켰다. 항간에서는 5월 24일에 있었던 第9期 第1次 最高人民會議에서 金正日에의 政權移讓을 공식화하리라는 추측도 많았다. 혹자는 북한에서 이미 대부분의 정권이 金正日에게 이양되었다고 주장한다.¹⁹⁾ 東歐事態로 불안한 金日成은 政權移讓을 당분간 보류하리라고 본다.

셋째, 北韓은 經濟發展의 절실함을 더욱 절감하리라 본다. 韓國의 經濟的 發展과 國際行爲의 팽창이 북한에게는 짐스러운 것이다. 특히 韓國에서 주최한 하계 올림픽은 北韓 지도층에게 精神的 壓力을 야기했다. 이에 대처 1989년 6월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를 무리하게 개최하였다. 이大會에 150개 국가로부터 1만 5천명이 참석하였다. 엄청난 經費와 민생고를 감안하면서까지 치른 이 대회는 서울올림픽의 후광을 除去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혹자는 평하고 있다.²⁰⁾

18) 노동신문(1990. 1. 1)

19) 이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 학자가 미국에 있는 서대숙교수이다.

20) Far Eastern Economic Review(April 13, 1989)

이같은 급작스런 東歐事態는 경제적이유가 가장 큰 것이라는 점을 北韓도 짐작하리라 본다. 특히 相對的으로 우월한 韓國經濟는 北韓에게는 절실한 問題이다. 北韓이 아무리 “主體”를 부르짖어도 國民生活을 감안 해야된다. 北韓은 최근 北韓에서 生産되는 소모품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북한의 거주이전이 비교적 용이해짐과 아울러 平壤거리에는 消耗品이 전시되기도 한다. 北韓經濟開發의 努力은 자연히 軍備縮小를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 北韓은 內部에서 軍비재정리를 하면서 韓國에 軍備縮小를 제안하리라 본다.

넷째, 北韓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蘇聯과 東歐圈의 변화는 北韓으로 하여금 對美接觸을 가속화하리라고 본다. 北韓의 주체적인 경제자활은 限界點에 도달했다. 北韓의 第3次 5個年計劃에도 불구하고, 自給自足에 의존하는 經濟는 몇가지의 문제를 내포한다. 즉 技術 및 機械의 발전에 제한이 있다. 또한 資本金 蓄積에도 한계성이 있다. 고로 北韓은 외국으로부터 援助나 外資導入이 필요하다. 北韓은 주로 中國과 蘇聯으로부터 보조를 받았다. 하지만 이 보조가 줄어들었다. 북한의 外資導入은 問題가 있다. 주로 日本과 구라파로부터 도입된 외자는 상환이 어려워서 國際金融市場에서 신용을 상실했다. 결국 北韓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은 海外僑胞를 통한 經濟投資이다. 北韓은 일본에 있는 朝總聯系統을 이용하여 막대한 외자를 유입했다. 이제 美國僑胞를 통해 美國의 資本을 유입하려고 노력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北韓은 美國과 政府次元의 회담을 중공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가졌다. 또한 韓國語도 모르는 미국인들의 관광유치는 北韓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서 外貨獲得하는 방법일 수 있다. 北韓産業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좋은 제품을 美國市場에

팔 수 없으나, 보세가공품, 보석류, 장난감, 가재류, 약재 등은 美國市場에 北韓이 팔 수 있는 品目들이다. 결국 한국의 經濟發展과 東歐의 급작스런 문호 개방과 또한 韓國과의 교역관계는 北韓으로 하여금 西方側과의 關係改善을 모색하게 하였다.

V

東歐 및 蘇聯의 變化가 南北韓 統一問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인가? 東歐圈의 變化는 물론 東西獨 統一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韓半島 統一에는 상이한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 長期的으로 볼 때 蘇聯 및 東歐圈의 變化는 韓半島의 통일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短期的으로 볼 때 統一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몇가지만 설명하자.

첫째, 南北統一에 가장 심한 걸림돌은 韓國戰爭에 대한 기억과 이에 따르는 南北韓 불신이다. 共產圈의 변화가 고르바초프나 東歐圈에 대한 肯定的인상을 韓國人에게 심어주긴 했으나 이것이 北韓에 대한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최근 주간조선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輿論調査에 의하면 56.4퍼센트의 韓國人이 향후 2년안에 北韓에서 改革運動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21.9퍼센트가 무엇이래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오직 21.7퍼센트가 變化가 가능하다고 봤다.²¹⁾

설혹 共產圈에 대한 態度가 변했다 해도 이것은 制限된 것이며, 오히려 東

21) 週刊朝鮮(1990. 4. 22)

歐圈이 資本主義社會로 변하는 것에 대한 갈채이지 共產主義를 아량을 갖고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北韓에도 물론 改革의 기미는 보이지만 韓國에 대한 태도가 급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東歐圈의 變化가 韓國의 지도층이나 北韓指導層의 相互不信度를 감축했다는 증거는 없다. 南北韓의 協商이 방법론상의 상이한 점도 있겠지만 根本的으로 相互不信感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 지난 1년간 南北協商 과정을 살펴보면 큰 變化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남북한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식이 東歐의 변화로 크게 변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셋째, 韓半島 平和統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국인의 政治文化이다. 한국 정치는 歷史的으로 派閥政治, 족벌政治로 점철되었다. 問題는 파벌정치가 아니라 파벌간에 타협을 할 줄 모르고 大義名分에 집착되어 있다. 비타협의 政治文化는 항상 투쟁의 政治를 이룬다. 승리한파는 모든 직책을 자기파로 메꾼다. 그렇기에 鬭爭關係는 항상 치열하다. 특히 政治關係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투쟁은 극한투쟁으로 발전한다. 특히 理念의 차이가 있고 6. 25의 戰爭을 치른 南北關係는 한국 특유의 政治文化가 악화시키기 일수다. 蘇聯이나 東歐圈의 變化가 이같은 政治文化를 얼마나 회색시켰는가는 물론 측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南北韓에 기존해 있는 언론매개체를 조사해 볼 때 이같은 政治文化가 변화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

물론 이같은 논지는 단기적으로 본 견해이다. 하지만 長期的으로 볼 때 蘇聯 및 東歐圈의 변화는 南北統一의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본다. 중요한 것은 東歐圈의 變化가 北韓에도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努力해야 한다는 점이다.

第 6 回 美洲地域統一問題學術會議論文集

1990年 10月 20日 印刷

1990年 10月 30日 發行

發行處 國 土 統 一 院

(第 2 研究官室)

印刷所 輝 文 印 刷 (株)
